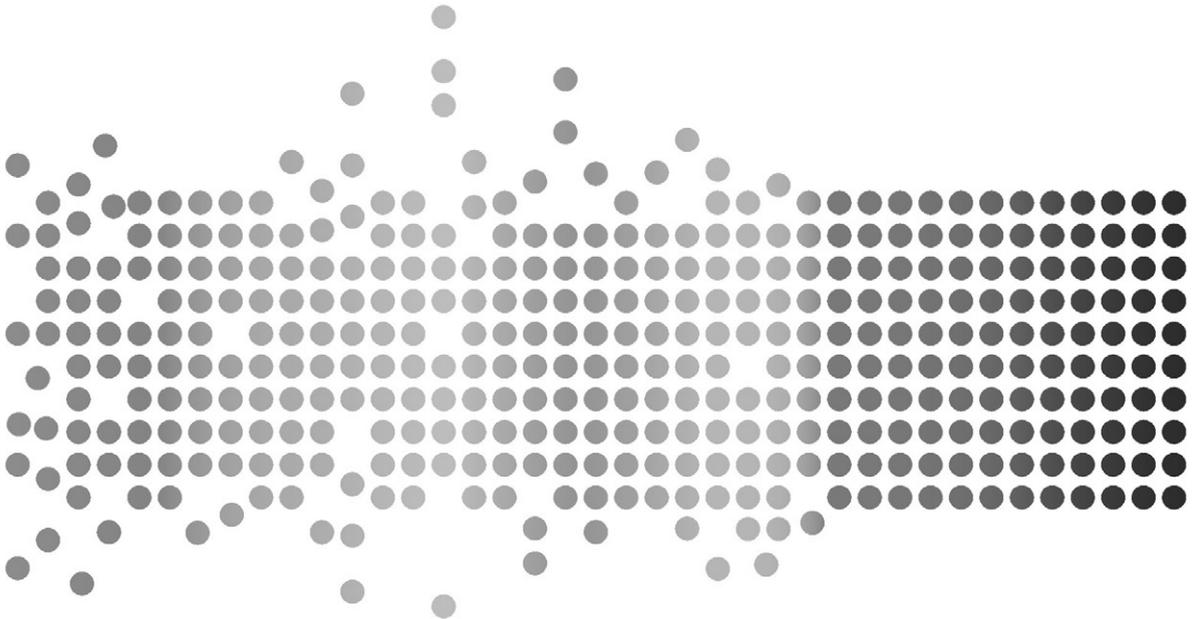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Multi-cultural Family on Quantity
and Quality of Population in Korea

이삼식 · 최효진 · 박성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9-34-1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 2009년 12월
저자 이삼식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ISBN 978-89-8187-620-3 93330

머리말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출현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과거 수 십년동안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 여파로 약 3세 차이가 나는 결혼적령 남녀 사이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marriage squeeze), 여성의 고학력화와 활발한 사회진출로 만혼화 및 비혼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남성들은 배우자를 만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측면에서 신자유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인하여 아시아 지역의 많은 여성들은 빈곤 탈출 등을 위해 한국사회에서의 생활을 동경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은 보편화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인 신랑-외국인 신부라는 국제결혼행태가 향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내릴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국제이동이 활발해지고 있는데다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해외 노동력의 유입이 불가피해져 국제결혼 이주자들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즉, 향후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이행될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 전반에 걸쳐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사회통합을 공고하게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본격적인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준비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우리나라 인구의 질적 및 양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질적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을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계하여, 총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대한 영향력을 측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질

적 및 양적 접근을 통합하여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하여 급격하게 변동할 것인데다가, 또 다른 요소로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여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사회정책은 물론 경제정책에 있어서 인구변동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고서는 정책을 일관성 있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성이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연구진은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사회정책 관련 정부관계자나 학자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있다.

본 연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많은 지원과 조언을 아끼시지 않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 본 보고서를 읽고 조언을 해준 본 원의 김혜련 연구위원과 김유경 연구위원, 서울시립대 이윤석 교수에게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 입장을 대변함을 밝혀둔다.

2009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 장 김 용 하

목차

Abstract	1
요약	3
I. 서론	11
1. 연구배경 및 목적	11
2. 연구 내용	13
3. 연구 방법	14
4. 본 연구의 한계점	15
II. 다문화가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9
1. 다문화가족 개념 및 범주	19
2.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	22
3. 다문화가족의 영향력 측정 방법	25
4. 본 연구에의 함의 및 분석틀	27
III.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31
1. 결혼이민자의 법적 특성	31
2.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35
3.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40
4. 다문화가족의 자녀보육교육 수준	46
5. 본 연구에의 함의 및 분석틀	49

IV.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55
1. 추계 방법	55
2. 추계 결과	71
V.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 및 질적 영향	97
1.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인 영향	97
2. 다문화가족의 인구 질적인 영향	101
3.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 영향과 질적 영향의 교차	103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11
참고문헌	117

표 목차

〈표 3- 1〉 국내체류 외국인주민 현황(2009. 8. 현재)32

〈표 3- 2〉 국제결혼이민자의 국적(성별, 법적 지위별),
2009. 8 현재.34

〈표 3- 3〉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자 비중, 2009. 8. 현재35

〈표 3- 4〉 결혼이민자의 성비(2009. 8. 5 기준)36

〈표 3- 5〉 국제결혼 부부의 혼인연령(혼인신고시 연령) 분포
2004~200837

〈표 3- 6〉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구성비(2009. 5. 1 기준)38

〈표 3- 7〉 국제결혼 부부의 혼인유형, 2004~200839

〈표 3- 8〉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차이, 2004~200840

〈표 3- 9〉 한국인남녀와 국제결혼 외국남녀(2004~2008)의
교육수준 20~30대41

〈표 3-10〉 한국남녀(20~30대)와 국제결혼 외국남녀(2004~2008)
경제활동상태44

〈표 3-11〉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45

〈표 4- 1〉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2009.5.1일 기준)61

〈표 4- 2〉 행정안전부 조사결과(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기준시점보정62

〈표 4- 3〉 행정안전부 조사결과
(외국인부모 자녀+외국인·한국인부모 자녀) 보정62

〈표 4- 4〉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부인의 유배우출산율	65
〈표 4- 5〉 2008년 여성출산율과 남성출산율	66
〈표 4- 6〉 출생성비 변동 전망	67
〈표 4- 7〉 평균수명 변동 전망	68
〈표 4- 8〉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의 잔존률 가정	70
〈표 4- 9〉 결혼이민1세(결혼이민자) 변동 전망	72
〈표 4-10〉 결혼이민2세(결혼이민자의 자녀) 변동 전망	74
〈표 4-11〉 결혼이민3세(결혼이민자 손자녀) 변동 전망	75
〈표 4-12〉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세대별 구성 전망	76
〈표 4-13〉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출신지역별 구성 전망	77
〈표 4-14〉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부모성별 및 출신지역별 구성 전망	79
〈표 4-15〉 총인구대비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비율 (총인구 규모 기여도) 전망	81
〈표 4-16〉 총인구 성비에 대한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성비의 기여도	83
〈표 4-17〉 결혼이민자 및 후손의 연령구조 전망	86
〈표 4-18〉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 및 후손)의 연령구조 전망	87
〈표 4-19〉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인구 및 결혼이민자의 비율 전망	90
〈표 4-20〉 아동 성장과정별 결혼이민가정 자녀의 규모 및 총인구 대비 비율 전망	92
〈표 5- 1〉 다문화가족 증가가 전체 생산가능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	99
〈표 5- 2〉 다문화가족 증가가 총인구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100

〈표 5- 3〉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증가가 총인구 학력수준에 미치는
영향(20~30대 기준)105

〈표 5- 4〉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증가가 총인구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20~30대 기준)106

그림목차

[그림 2-1]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영향에 대한 분석틀28

[그림 4-1] 조성법 도시도59

[그림 4-2] 2000~2005 평균 국제순이동률70

[그림 4-3]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세대별 구성 전망76

[그림 4-4]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출신지역별 구성 전망 ..77

[그림 4-5]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부모성별 및
출신지역별 구성 전망79

[그림 4-6] 총인구대비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비율 전망 ..82

[그림 4-7]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와 총인구의
연령구조 비교88

[그림 4-8]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인구 및 결혼이민자의 비율 전망 ...90

[그림 5-1] 인구구조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영향 도식도,
2009년과 2050년101

A decorative graphic consisting of a central dark grey circle with several smaller, lighter grey circles of varying sizes scattered around it, resembling a splash or a cluster of bubbles.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typical demographical and social features are low fertility, population ageing and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Especially, immigration policy, together with pro-natal policy, has been often discussed as a major option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In this context, this report aimed to measure the repercussion of increase in multi-cultural families on both quantum and quality of total population, and thereby to suggest future policy options. The main method was population projection for marriage 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during the period from 2009 to 2050.

As a result, the increase of multi-cultural families will make a positive contribution on the side of population quantum. The size of migrant immigrants and their descendants will account for more than 5 percent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50. The size of workable population aged 15~64 will approach to 6 percent of that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50. Their age structure will contribute to attenuating the population ageing level by 4 percent.

The multi-cultural families are characterized by illegal status, high proportion of remarriage and big difference in ages between couples, low educational attainment and economical experience, vulnerability of child-care and education with discrimination, and low income. The

increase in such family will lower the educational level and vocational ability of the total population, even though it is not significant. However, such low quality may be concentrated on multi-cultural families, which may be handed down to their posterity. Especially, the proportion of marriage immigrants' descendents to the total children will increase due to low fertility; as of 2050, they will account for 24.7 percent for pre-schooling population, 15.3 percent for primary schooling population, 12.0 percent for middle schooling population, and 10.1 percent for high schooling population. It implies that the quality of total population will be dependent on that of the marriage immigrants' descendents to some extents.

In conclusion, the long-term policy efforts for marriag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should be made to maximize the positive effects on the side of population quantum and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side of population quality.

요약

최근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특징으로 초저출산현상과 인구고령화 이외에 다문화가족 증가를 들 수 있다. 세계화 내지 지구촌화로 국가 간 인적교류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인종적 및 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이래 취업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및 노동생산성 저하, 내수시장 위축 및 자본스톡 감소, 사회보장지출 증가, 재정수지 적자, 경제성장 둔화 등이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정책은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후손 즉, 다문화가족이 향후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그리고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의 인구 질적 및 양적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방법으로는 선행연구 고찰, 조사결과 분석, 사례조사, 다문화가족 추계 등을 적용하였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한 추계방법으로는 조성법을 적용하였다. 조성법에 따라 기준인구를 설정하고, 인구변동요인으로서 출산력, 사망력 및 국제이동의 향후 변동을 가정하였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영향을 진단하기 위해 2009~2050년간 결혼이민자(결혼이민1세)뿐만 아니라 그 후손(결혼이민2세와 3세)을 추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인 측면과 인구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은 특히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인구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총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0년 5%를 상회하며,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6%에 육박할 것이다. 이는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을 9% 정도 그리고 총인구의 감소폭을 13% 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고령화는 2050년 기준으로 1.54%포인트 혹은 4% 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우선 인구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다문화가족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가 취약하게 나타난다. 둘째, 결혼이민자들 상당 부분이 재혼인 한국인배우자와 결혼하고 부부 간 연령 차이가 크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학력과 직업력이 한국인 평균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가족의 보육·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제약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학력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가족 증가가 남성 학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작아다가 이들의 학력수준이 한국인 평균치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문화가족 증가는 여성 학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증가는 총인구의 중졸 이하와 고졸 학력의 비율을 높이며, 대학 이상의 고학력 비율은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적일 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2050년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학력 비

율은 다문화가족 증가로 1.5%포인트와 0.5%포인트 증가하는데 반해, 대학 이상 고학력의 비율은 오히려 2.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여성인데다가 이들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자 규모가 작은 관계로 학력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우선 남성결혼이민자의 증가가 전체 남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직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와 2030년 및 2050년 간의 비교에서 경제활동상태와 직업분포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상대적인 기여도도 0.1% 내외로 추정된다. 이는 남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아주 작는데다가 이들의 취업률은 비결혼이민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전체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상태와 직업분포에 다소나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전체 여성의 비취업 비율은 현재에 비해 2030년에는 1.2%포인트, 2050년에는 2.0%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수준에 비해 2030년에 2.2% 그리고 2050년에 3.7% 정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체 여성의 관리전문직, 사무직, 기타 등 모든 직종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비교적 큰데다가 이들의 비취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85.8%)이기 때문이다. 직종 간 비교에서는 고위관리직·전문직과 기타 직종의 비율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무직의 경우에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향후 경제사회 변화나 정책적 노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과 마찬가지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이나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와 볼 수 있듯이, 전체 인구의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

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문제는 저학력, 무직 혹은 질 낮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직업, 저소득 등의 특성이 다문화가족에 집중되는 계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학력, 저위신직업 혹은 실업,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부적절한 가정보육·교육, 낮은 공공보육·교육서비스 접근성, 학교생활에서의 소외 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저출산현상으로 유소년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아동 중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2050년 보육유아교육기 아동 중 24.7%, 초등학교 아동 중 15.3%, 중학교 아동 중 12.0%, 고등학교 아동 중 10.1%가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될 것이다. 요컨대, 전체 인구의 자질은 결혼이민자보다 이들의 자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다문화가족 증가의 긍정적 영향(인구 양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인구 질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특히 자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사회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저학력·저직업력의 특성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 시스템의 적용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의 자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단기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개선하며, 동시에 한국국적 취득 이전에도 자녀양육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제약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높은 재혼률, 큰 부부간 연령차이 등 다문화가족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대신 한국

인배우자와 그 가족, 자녀까지를 포괄하는 접근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초기과정으로 ‘국제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동화 내지 통합이 아주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방과후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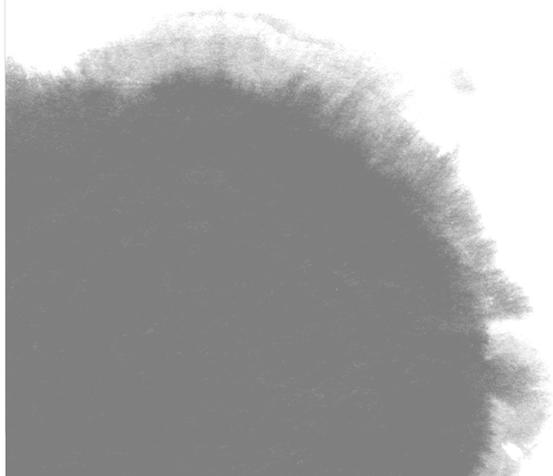
다섯째, 다양한 국가 출신의 그리고 여성 중심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문화적 및 성 인지적 접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 더 나아가서 전체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정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민자의 사회적 수용성은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공공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곤란,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미흡 등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어떠한 유형의 차별이라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세대의 인구 자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비용은 우리사회에 환원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의 이민정책을 도입하더라도 보육, 교육, 노동(고용), 복지 등 사회 제 분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주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방법 상 일정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다문화가족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보다 기존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질적 측면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조성법을 적용한 다문화가족 추계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관한 가정 중 일부를 결혼이민자 자신의 수준이 아닌 한국인 평균수준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가장 기초적인 특성들로서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력 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01

서론



I.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특징으로 초저출산현상과 인구고령화 이외에 다문화가족의 증가를 들 수 있다. 세계화 내지 지구촌화로 국가 간 인적교류가 확대되면서 우리나라도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1990년대 초반 이래 취업이나 결혼을 목적으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한국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 중 국제결혼의 증가는 수요-공급 간의 메커니즘에서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다(이삼식, 2007). 수요 측면에서는 여성의 만혼화 및 비혼화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한 남성(농촌 거주, 저학력, 저소득 등)들이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여 외국여성과의 결혼을 선호하게 되었다. 공급 측면에서는 아시아 저개발국가의 여성들이 빈곤 탈출과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남성과의 결혼을 선호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서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이다.

국제결혼 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는 한편으로는 전통적으로 백의민족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한국인 사상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한편으로는 인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후자의 사례들은 다문화국가(multi-cultural country)인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민자 유입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들로부터 많은 신생아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민의 인구학적 영향은 양적인 측면과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된다. 이민자 및 그 후손의 수와 연령분포는 목적지국가(destination)의 인구규모와 인구구조를 변경할 것이다. 이들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및 보건의료적인 특징들이 토착민의 그것들과 다를 경우 목적지국가 인구의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은 이민자들의 국제결혼 과정, 한국인배우자 및 가족과의 관계, 한국어 학습 및 한국문화 적응, 자녀 교육, 사회통합문제 등에 많은 관심을 두어왔던 반면, 장래인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두는 경향이 있다. 다만, 일부 연구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이 열악하여 전체인구의 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이삼식 외, 2007).

현재 정부는 저출산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회복의 기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상승세로 반전되는 경우에도 인구대치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¹⁾ 결국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 및 노동생산성 저하, 내수시장 위축 및 자본스톡 감소, 사회보장지출 증가, 재정수지 적자, 경제성장 둔화 등이 야기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민정책은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거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후손 즉, 다문화가족이²⁾ 향후 인구 규모와 인구구조 그리고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중장기 이민정책 수립, 이민자와 그 가족의 인구자질 제고, 사회통합정책 수립 등을 위하여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반세기 이상 동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강력히 추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서야 합계출산율이 2명 수준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하에서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정착한 이민자는 ‘결혼이민자’로,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은 “다문화가족”으로 칭하며, 명확한 개념과 범주에 대해서는 제2장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2. 연구 내용

본 연구는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문화가족에 관한 이론적 고찰, 다문화가족의 인구 질적 영향 분석,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 영향 분석,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인구 질적 및 양적 영향 통합분석이다.

우선 4가지 관점에서 다문화가족에 관한 이론적인 고찰을 실시한다. 세부적으로 이민자와 가족에 관한 이론들을 고찰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주를 명료화한다.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이론 및 외국사례들을 고찰하여 연구의 기본방향을 모색한다. 이민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방법에 관한 고찰을 실시하여 본 연구에의 적용 가능성과 한계성을 검토한다.

다문화가족이 인구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법적 특성,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을 분석한다. 결혼이민자의 법적 특성으로는 출신국가와 국적 취득여부가 포함된다.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에는 성, 입국당시 연령, 한국인배우자와의 연령 차이, 혼인상태(초혼, 재혼) 등이 포함된다.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으로는 교육수준, 직업경력, 소득수준, 자녀양육·교육실태 등이 포함된다. 이들 특성을 분석하여 인구의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다문화가족이 인구 양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하여 다문화가족을 성별 및 연령별로 추계(projection)한다. 다문화가족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추계기간을 2050년까지 설정한다. 추계결과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족의 향후 변동을 전망하고,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규모와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다문화가족의 인구규모적 및 구조적인 영향력은 유소년기, 생산가능기, 노년기 등의 연령집단별로 분석한다.

다문화가족의 변동이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양적 및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인구자질과 관련

한 특성들을 장래 다문화가족의 양적 변동에 적용하고, 그 경우 우리나라 장래인구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안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4가지 연구방법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고찰, 조사결과 분석, 다문화가족 사례조사(case study), 다문화가족 추계가 해당된다.

우선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주,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영향,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영향, 다문화가족의 영향력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문헌조사를 통해 선행연구를 고찰한다. 선행연구로는 국내 문헌뿐만 아니라 국외 문헌까지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과 관련한 원자료(raw data)와 이차자료(secondary data)를 입수하여 분석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 통계청의 인구동태조사 중 전국 혼인·이혼 원자료(2004~2008)를 이용하여, 연도별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국제결혼부부의 이혼)의 발생수준 및 기본특성(국적, 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등)을 분석한다. 다문화가족 관련 기 조사결과(이차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다문화가족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조사(case study)를 실시한다. 사례조사 대상은 전국다문화가족사업지원단을 경유하여 부산진구건강가정지원센터, 경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천안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추천한 여성결혼이민자 14명이다.³⁾ 사례조사는 연구진이 집단면접 또는 개별면접을 통해 미리 준비한 질문항목(checklist)에 따라 결혼이민자의 특성, 출산 및 양육, 자녀교육 실태 및 애로사항, 자녀

3) 사례조사 대상은 모두 여성결혼이민자로 필리핀 5인, 중국(한족) 2인, 베트남 3인, 태국 1인, 몽골 1인, 일본 1인, 러시아 1인이다.

진로 및 기대감 등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끝으로 향후 다문화가족의 변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을 추계한다. 추계방법으로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적용한다. 조성법에 따라 기준인구를 설정하고, 인구변동요인으로서 출산력, 사망력 및 국제이동의 향후 변동을 가정한다. 추계대상으로는 결혼이민자(결혼이민1세)뿐만 아니라 그 자녀(결혼이민2세)와 손자녀(결혼이민3세)를 포함한다. 다문화가족의 특징을 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에 따라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및 비아시아로 구분하여 다문화가족을 추계한다.⁴⁾ 다문화가족 추계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을 참조하도록 한다.

4. 본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시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하여 연구방법 상 일정한 한계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다문화가족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직접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보다 기존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사례조사를 실시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조사 자료는 다문화가족의 특성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인구자질 측면에서 체계적이거나 정밀하지 못한 실정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질적 측면을 체계적이고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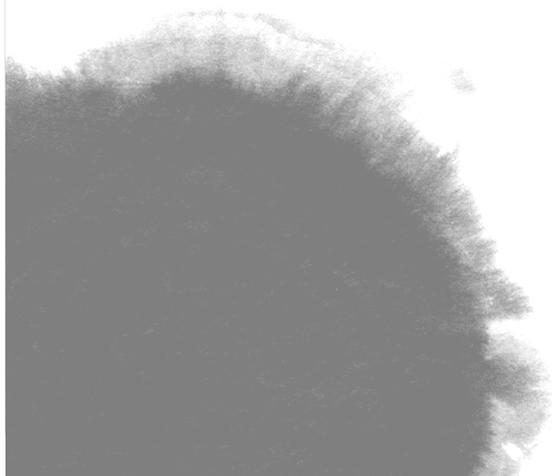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조성법을 적용한 다문화가족 추계시 인구변동요인(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관한 가정 중 일부를 결혼이민자 자신의 수준이 아닌 한국인 평균수준을 이용하여 설정하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구체적으로 출산력의 경우 다

4) 동북아시아에는 우리나라와 문화나 피부색이 유사한 일본, 중국(한족, 조선족 등), 몽골, 마카오, 홍콩, 북한 등이 포함된다. 기타 아시아에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다. 비아시아에는 유럽, 미주,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등의 국가들이 포함된다.

문화가족의 최근 출산수준을 분석하여 인구추계에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 출산력 변동에 대해서는 현 수준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가정(일반적으로 인구추계시 중위가정으로 적용)을 도입하고 있다. 결혼이민자의 사망력 수준은 생태학적 및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국가에서 오랫동안 살아 온 관계로 한국인 평균치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전체의 사망력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가족은 결혼에 의해 형성되고 이혼에 의해 해체되는 등 특수성을 가지나, 자료 부재 등으로 인하여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의 국제이동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일정한 가정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가장 기초적인 특성들로서 출산력, 사망력, 국제이동력 등을 파악하는 연구들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02

다문화가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II. 다문화가족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

1. 다문화가족 개념 및 범주

다문화가족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민과 이민자에 대한 개념 정립이 요구된다. 외국 사례들을 살펴볼 때, 이민자에 대한 일관된 정의는 없다. 국가마다 이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벨기에,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이민자를 개인뿐만 아니라 (조)부모의 출생지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다. (조)부모가 국외에서 출생하였거나 조상 또는 부모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이민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독일, 스위스, 포르투갈 등 많은 국가들에서는 출생지와 상관없이 외국시민증으로만 이민자를 구분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시민증이나 출생지와 상관없이 주로 인종적 배경(백인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유엔은 적어도 “1년 이상 의도적 체류를 동반한 국제적 이주”를 이민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영구적인 이동뿐만 아니라 일시적 취업을 위한 ‘이주노동’까지 포함한다(유길상 외, 2005). 우리나라에서는 이민자를 대한민국의 일시적 또는 영구적 사회구성원 자격을 부여받고 대한민국으로 이주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로서 대한민국으로 이주하기 위한 일정한 절차가 진행 중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법무부, 2008).

일반적으로 국제이동은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 발생한다. Howe and Jackson(2006)은 국제이동 발생에 대한 이론을 흡입요인과 배출요인, 양적 및 질적 모델, 세계적인 국제이동의 증감 추이 등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여

셋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우선 신고전적 이론(Neoclassical framework)으로 젊은 인구들이 자본이나 토지 등이 가난한 국가에서 부유한 국가로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두 국가 간 임금격차가 이동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둘째, 세계체계이론(World Systems Framework)에 따르면 세계화(globalization) 과정에서 가난하고 전근대적인 사회에서 부자인 근대적인 사회로 대규모 인구가 이동하고, 송금은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 셋째, 신경제이론(New Economics Theory)에 따르면 가족의 일부가 수입의 극대화보다는 수입의 다양화와 위험(직업 상실 등)에 대응한 보험용으로 먼저 이동하고, 이어서 나머지 가족들이 이동한다는 것이다. 즉, 임금격차는 많은 결정요인들 중 하나에 불과하며 상대적인 소득불평등, 삶의 질 개선 등을 위해 이동을 선택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망이론(Social Network Framework)에 따르면, 기 국제이동 경험자와 유대관계(친인척 또는 다른 사회 네트워크)에 따라 이동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비용이나 위험, 불확실성이 적기 때문이다. 친인척이나 친구들은 새로운 이민자에게 직업을 찾아주고, 익숙한 언어, 음식, 종교, 관습 등의 사회문화적인 지원을 해준다. 이 이론에서는 사회망이 국제이동 모멘트를 창조하여 계속적인 이동을 발생시킬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다섯째, 이중노동시장이론(Dual Labor Market Framework)에서는 토착민의 노동시장과는 독립적이고 비경쟁적인 노동시장의 존재로 국제이동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도착국가에서 윤리적인 혹은 문화적인 직업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이론(Policy Framework)에 따르면 공익에 따라 정책이 국제이동을 결정한다는 것으로, 본 이론은 불법이동과 이민제한조치에 대한 논쟁이 발생함에 따라 중요시되었다.

최근 우리나라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유입하고 있으며, 이들 중 노동이주자(migrant worker)와 결혼이민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로의 노동이주자 유입은 주로 신고전적 이론과 이중노동시장이론에 입각하여 발생한다면, 결혼이민자는 세계체계이론과 사회망이론에 입각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신자유주의에 따라 아시아 국가의

여성들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 결혼이라는 수단으로 통해 보다 삶의 질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한국사회로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이삼식 외, 2007).

이와 같이 최근 국내로의 이민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족”으로 불리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에서 고유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그 개념이나 범위는 학자나 기관마다 상이하다. 예로, 교육과학기술부(2006)는 다문화가족을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서혁(2007)은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가정, 외국인근로자가정, 새터민가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설동훈(2006)은 다문화가족을 국제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들을 종합하면, 다문화가족은 광의로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포함된 가족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제결혼가정(한국인과 외국인간 결혼가족), 외국인근로자가정(외국인만으로 구성), 유학생, 외국국적동포, 화교, 새터민가족 등 다양한 유형이 포함된다. 협의의 다문화가족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형성한 가족만을 의미한다.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용어로서 “다문화국가(multi-cultural country)”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인구가 사회 성원들로 구성된 국가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문화가족의 개념을 다문화국가에서 추론해 볼 수 있다. 즉, 다문화가족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개인들이 혼인을 통해 함께 구성한 가족으로 개념화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후손으로 구성된 가족 즉, 협의의 다문화가족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한다. 외국인근로자가정이나 유학생은 단기적으로 체류하는 성향을 가짐으로써 장기적으로 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미세하다고 할 수 있다. 새터민가족의 경우 아직은 규모가 작아 그 영향력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외국국적동포(특히 조선족)의 경우에는 대부분 국제결혼형태를 통해 국내로 유입하기 때문에, 순수하게 외

국적동포만으로 구성된 가족은 그 규모가 아주 작을 것으로 추측된다. 화교의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인구 추이에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별도로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협의의 다문화가족은 본 연구의 주제인 다문화가족의 영향을 파악하는 데에도 적절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

본 연구에서 채택한 다문화가족에 한정하여 인구학적 영향을 측정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이민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이민자 유입은 인구규모를 증가시키며, 국제이동의 선택성(selectivity)으로 인하여 인구구조를 변경시키기도 한다. 주요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이민자 유입이 인구규모나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일관성 있게 나타나지 않는다. 많은 연구들은 국제이동이 저출산 지속으로 인한 인구감소와 인구성장률에 대한 영향을 상쇄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Espenshade, 1986; Ulrich, 1998). 이민유입이 인구구조 특히,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견해와 부정적인 견해로 나누어진다(UN, 2000). 긍정적인 주장으로는 이민유입이 전체적으로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인구고령화를 늦추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주장으로는 이민유입이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과, 장기적으로 이민자도 인구고령화의 한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하다는 것이다(Lesthaeghe et al., 1998).

OECD(1998)에서 발간한 인구고령화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인구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과 이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UN(2000)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겪어오면서도 어느 정도 인구가 안정되어 온데에는 외국으로부터 이민자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96년 유럽 인구의 증가율은 2.8%에서 유지되고 있었

는데, 이중 자연증가율은 0.8%(조출생율 10.8, 조사망률 10.0)에 그치고 대부분은 이민에 의한 사회적 증가율에 기인하고 있다. 당시 독일과 이태리는 자연증가율이 부적(-1.1%, -0.3%)으로 나타난 유일한 국가들이었으나, 이민에 의한 인구증가율은 독일의 경우 0.37%(순이동자로 300천명), 그리고 이태리의 경우 0.26%로 나타났다. 반면, 프랑스의 경우에 이민의 역할은 다소 덜 중요하다. 예로, 1996년 자연증가율이 0.34%(조출생율 1.26%, 조사망률 0.89%)인 반면, 이동에 의한 증가율은 0.07%에 불과하였다 (Toulemon, 1998). 이민은 유럽국가 뿐만 아니라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의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ies)에서도 인구감소나 고령화를 어느 정도 방지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반면, 일본과 같이 역사성과 정체성이 강한 국가에서는 이민에 대해 강한 사회적인 저항으로 이민이 적극적으로 수용되지 못하여 인구고령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Lesthaeghe et al., 1988).

McDonald and Kippen(1999)은 호주 사례를 통해 젊은층 이민자의 유입이나 이민자의 높은 출산율이 인구고령화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작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Johnson(1999)도 인구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인구고령화를 변화시키기 위해 이민자를 높은 수준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은 비효율적이며 비능률적이라는 것이다. Loh and George(2001)도 캐나다 사례 연구에서 이민은 인구고령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민자가 없는 경우 2051년 노인인구비율은 29.8%인 반면, 이민자가 있는 경우에는 25.4%로 추정되어 이민자 유입에도 불구하고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이다. Li and Wu(2001)은 국제이민이 인구학적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으나, 인구고령화 속도는 약간 지연시킬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McDonald and Kippen(1999)은 인구성장률 제로를 가져올 수 있는 출산율과 이민율의 조합만이 실질적으로 인구고령화를 늦추어 인구구조를 관형(coffin)에서 벌집형(beehive)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이 인구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사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외국인정책위원회(2008)는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국내 체류외국인이 2009년 3월 1,162천명에서 2012년에는 15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은 이주여성농업인이 평균 1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2020년에 19세미만 농가인구의 24.5% 그리고 평균 2명의 자녀를 출산할 경우 절반 정도(49.0%)가 다문화자녀로 구성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민자 유입이 인구 자질에 미치는 영향은 이민자의 특성과 연계된다. 그러한 특성들로는 연령, 교육수준, 노동력, 건강, 인종 등을 들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문화적 및 인구학적 특징들 중 하나로서 이민자의 자녀들의 교육정도가 출발지국가와 차이가 벌어지는데, 주된 이유로 목적지국가에서 살면서 자녀수가 감소하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Haug, Compoton and Courbage, 2003).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이다. 미래 연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은 국제이민에 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UN(2000)은 인구변동에 따른 연금, 의료보험, 경제력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제이민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Haug, Compoton and Courbage(2003)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대처 방안으로서 인구 대체이민(replacement international migration)은 결과적으로 이민자들 역시 고령화기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민이 실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및 사회적인 경향으로 경기가 좋지 않을 경우 이민에 덜 유리하지는 주장이 있다(Palmer, 1999).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서 노동력 부족이 발생하였을 때, 이들 국가에서는 노동유입을 단기적으로 필요한 현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이들 국가들은 노동력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에는 이민자를 환영하나 그 전제조건으로는 이들이 필요 없을시 되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이민은 노동력과 세금원으로서 장

점을 가진 데에 비해 사회·정치적 비용이 과다하여 거절되고 있다 (McIntosh, 1986).

McDonald and Kippen(2001)은 16개국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산력과 이민 및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한다. 캐나다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의 현 출산율과 이민 및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된다면 노동력 감소를 피할 수 있다고 한다. 캐나다와 호주의 경우에는 적당한 출산율과 높은 이민률 및 낮은 노동력 참가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 세 요소 중 어느 한 요소라도 증가하면 향후 노동력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이다(Beaujot, 2002).

이민이 경제성장에 유리하다는 주장과 결코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Beaujot, 2002). Borjas(1999)는 이민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비교적 작은 것으로 분석하였다. Smith and Edmonston(1997)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이민자의 영향은 도착시 연령에 크게 좌우되며, 10~25세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스페인 사례에 대한 연구 결과, 장래 많은 이민자들의 유입은 미래세대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밝혔다(Collado, Iturbe-Ormaetxe & Vera, 2004). Storesletten(2000)은 중간 연령 및 중간 및 고숙련 이민자들의 유입이 정책적으로 중요하며, 이민자들이 이미 이민해온 사람들과 유사한 연령이나 숙련정도를 가질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예산을 균형화 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3. 다문화가족의 영향력 측정 방법

고전적인 인구학적 지표들은 고출산, 고사망, 저이동 상황에서 발전되었으며, 이에 따라 출생과 사망이 증시되고 이동은 자연재생산과정의 첨가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고전적인 형식인구학이 번창하였던 19세기와 20세기 초에 인구학적 현상으로 사망률과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지면서, 점차 국제이동이 인구재생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증가하였

다.(Coleman, Ediev and Scherbov, 2008)

일반적으로 국제이동이 인구 규모 및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인구추계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초기인구에 성별 연령별로 출산력과 사망률(생잔률)을 이민 없는 경우와 있는 경우로 적용하여, 그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Le Bras, 1991: Haug, Compton and Courbage, 2003). 그러나 실증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국제이동의 향후 추이를 추정하는 일은 아주 어렵다. 사망률의 경우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사망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출산력의 생리적(biological)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추정이 용이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동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에 따라 국제이동이 미치는 인구학적인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국제이동을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Coleman, Ediev and Scherbov, 2008). Hyrenius(1951)는 생잔율과 순대치율(net replacement rate)과 마찬가지로의 개념으로 성 및 연령별 이동률을 적용하여 인구학적 변화를 측정하는 접근법을 고안하였다. 예컨대, 여성의 생애과정에서의 출생아수를 생잔율과 이동률을 적용하여 측정하였다, 이를 사회적 대치율(social replacement rate)로 부르고 있는데, 이 방법은 이동의 규칙성과 차별출산력을 무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Keyfitz(1977)은 특정 연령에서 일정한 비율의 이민율(emigration rate)의 적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Espenshade(1987)은 일정 비율의 이동을 사망률에 적용하였다. Sivamurthy(1982)는 조이동률을 고정된 연령별 구조에 적용하였다.

Beaujot(2002)에 의하면, 국제이동이 증가하면 언젠가는 다시 감소할 것이며, 국제이동이 감소하면 언젠가는 다시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 추이에 근거를 두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10년간의 평균치가 지속하는 것으로 가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4. 본 연구에의 함의 및 분석틀

이상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범위, 국제이동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 국제이동의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구분하여 선행연구들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로서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형성한 가족으로 그 후손까지 포함하도록 개념화 한다.

이민의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적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고찰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의 대상인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연구주제들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선행연구 고찰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이들의 재생산(reproduction)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규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규모 특히, 노동력(생산가능인구)의 규모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가 저출산으로 인하여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문화가족의 인구규모적 영향은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의거하여 주로 인구추계를 통해 측정한다.

둘째, 선행연구 고찰결과에 따르면 결혼이민자의 유입과 이들의 재생산(reproduction)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연령구조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연령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실증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특히, 일부 연구들은 이민자들 역시 고령화됨으로써 사회보장 부담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결혼이민자의 인구구조적 영향을 진단한다. 다문화가족의 인구구조적 영향은 연구방법과 관련한 선행연구 고찰 결과에 의거하여 주로 인구추계를 통해 측정한다.

셋째, 선행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민자의 질적 수준은 고용, 사회보장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

와 자녀들의 특성들이 전체 인구의 자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논의하고자 한다. 인구자질에 미치는 영향은 다문화가족과 내국인 간의 특성 비교를 통해 분석한다. 인구자질을 측정하기 위한 특성들로는 법적인 것(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 한구국적 취득 여부), 인구학적인 것(결혼이민자의 성, 연령, 혼인형태), 사회경제적인 것(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 직업경력, 소득수준 등), 그리고 자녀보육교육과 관련된 것(가정보육교육 실태, 서비스 접근도, 정서적 소외 정도) 등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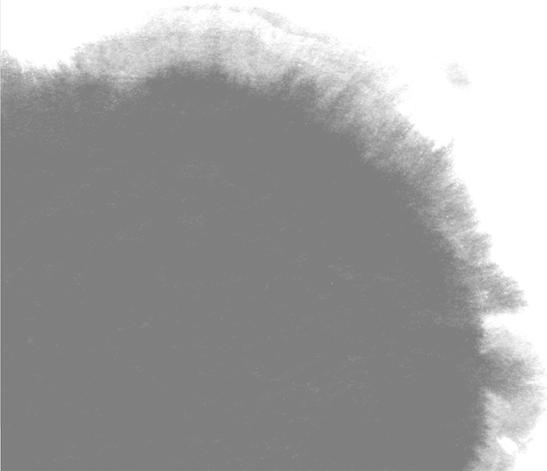
한편, 국제이동의 사회경제적 영향은 노동, 사회보장, 경제성장 등 보다 거시적이면서도 다른 요소들(예를 들어, 노동생산성, 국제관계 등)을 충분히 감안할 때 측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복잡성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단순히 유추하거나 별도연구에 미루도록 한다.

[그림 2-1]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 영향에 대한 분석틀



03

다문화가족의 인공학적·사회경제적 특성



Ⅲ. 다문화가족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특성

1. 결혼이민자의 법적 특성

가. 결혼이민자의 국적

결혼이민자들 사이에는 출신국가에 따라 문화와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결혼이민인구의 교육수준, 건강수준 등 인구자질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결혼이민자의 법적 특성은 국내에서의 취업 활동, 결혼생활, 한국인 가족과의 관계, 교육 등 관련 서비스에의 접근성, 자녀양육 등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쳐, 궁극적으로 이들의 자질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997년 387천명에 불과하였던 국내 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국적취득자)은 2009년 8월 말 현재 1,107천명으로 증가하여 총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표 3-1). 이들 국내 체류 외국인주민 중 한국국적 미취득자가 83.6%로 압도적으로 많고, 취득자는 6.7% 그리고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9.7%로 각각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한국국적 미취득 외국인근로자가 576천명으로 52.0%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국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는 126천명(11.4%), 외국인-한국인부모의 자녀 88천명(8.0%), 유학생 77천명(7.0%), 재외동포 44천명(3.9%), 혼인귀화자 42천명(3.8%)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의 자녀는 외국인부모의 자녀, 한국인-외국인부모의 자녀, 한국인부모의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외국인부모의 자녀는 외국인부부의 자녀

와 한국인과 결혼한 결혼이민자의 전 배우자와 사이에 태어난 자녀 등을 포함한다. 반대로 한국인부모의 자녀는 한국인이 국제결혼 이전에 만난 한국인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의미한다. 한국인-외국인부모의 자녀는 전형적으로 국제결혼을 통해 출생한 자녀를 의미한다. 외국인부모의 자녀는 4천명으로 국내체류 외국인 중 0.4%에 불과하나, 한국인-외국인 부모의 자녀는 88천명으로 8.0%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부모의 자녀도 15천명(1.4%)로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국내체류 외국인주민 현황(2009. 8. 현재)

(단위: 명, %)

	총계	동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중국 (조선족외)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계	1,106,884	181,158	443,836	23,447	26,524	22,892	107,969	53,965	136,704	110,389
국적미취득(계)	925,470	124,819	382,700	21,817	18,994	20,929	83,215	39,245	128,232	105,519
외국인근로자	575,657	25,234	321,847	96	1,317	13,276	50,244	30,674	105,901	27,068
결혼이민자	125,673	33,457	35,386	351	5,050	2,309	28,817	6,117	9,116	5,070
유학생	77,322	56,433	3,849	348	1,819	3,128	2,850	373	4,759	3,763
재외동포	43,703	-	2,845	31	396	-	-	5	141	40,285
기타	103,115	9,695	18,773	20,991	10,412	2,216	1,304	2,076	8,315	29,333
국적취득(계)	73,725	20,407	42,467	860	692	282	2,263	4,033	1,269	1,452
혼인귀화자	41,417	15,241	18,368	166	314	194	1,962	3,682	933	557
기타사유취득	32,308	5,166	24,099	694	378	88	301	351	336	895
외국인자녀	107,689	35,932	18,669	770	6,838	1,681	22,491	10,687	7,203	3,418
외국인부모	4,205	2,300	1,257	40	87	29	141	111	96	144
외국인+한국인부모	88,485	28,500	13,945	686	6,582	1,346	19,178	9,714	5,713	2,821
한국인부모	14,999	5,132	3,467	44	169	306	3,172	862	1,394	453

자료: 행정안전부, 2009. 8.

이들 국내 체류 외국인주민 중 다문화가족으로 부르고 있는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는 총 167천명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남자결혼이민자가 17천명(10.2%), 여자결혼이민자가 150천명(89.8%)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전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중국 61.3%(조선족 32.2%, 한족 29.1%), 베트남 18.4%, 필리핀 3.2%, 일본 3.2%, 몽골 1.5% 등의 순으로 출신국가 대부분이 아시아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등 비아시아

국가 출신의 비율은 3.4%에 불과하다. 한국민족과 피부색이 거의 유사한 국적 출신자(중국 조선족, 한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출신의 이민자 비율은 84.7%로 압도적으로 높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국적으로는 중국(조선족 41.3%, 한족 22.8%)이 총 64.1%를 차지하고 다른 아시아국가의 비중은 극히 낮았으며, 대신 비아시아 국가들의 비중이 1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중국(조선족 31.1%, 한족 29.9%)이 61.0%를 차지하였으며, 이외 베트남 20.4%, 필리핀 6.4%, 일본 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이외 국적을 가진 여성결혼이민자의 비율은 1.6%에 불과하였다.

나.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

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미취득자 126천명과 취득자(혼인귀화자) 41천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한국국적 미취득자가 3/4(75.2%)를 차지하고 있고 취득자 비율은 24.6%에 불과하다. 남녀별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국적 취득비율이 26.3%로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11.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국적취득 여부별로 결혼이민자의 국적을 살펴보면, 혼인귀화자의 경우 조선족중국(44.3%)과 조선족이외 중국(36.8%)이 총 81.1%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외 필리핀(8.9%)과 베트남(4.7%)을 제외하면 각 국가의 비중은 1% 미만으로 극소수로 나타났다. 국적미취득자의 경우에는 조선족중국(28.2%)과 조선족이외중국(26.6%)이 54.8%, 다음으로 베트남 22.9%, 필리핀 4.9%, 일본 4.0% 등으로 나타났다.

〈표 3-2〉 국제결혼이민자의 국적(성별, 법적 지위별), 2009. 8 현재.

(단위: 명, %)

	총계	동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중국 (조선족외)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전체	167,090	48,698	53,754	517	5,364	2,503	30,779	9,799	10,049	5,627
(구성비)	(100.0)	(29.1)	(32.2)	(0.3)	(3.2)	(1.5)	(18.4)	(5.9)	(6.0)	(3.4)
남성	17,237	3,933	7,115	116	547	45	165	204	1,906	3,206
(구성비)	(100.0)	(22.8)	(41.3)	(0.7)	(3.2)	(0.3)	(1.0)	(1.2)	(11.1)	(18.6)
여성	149,853	44,765	46,639	401	4,817	2,458	30,614	9,595	8,143	2,421
(구성비)	(100.0)	(29.9)	(31.1)	(0.3)	(3.2)	(1.6)	(20.4)	(6.4)	(5.4)	(1.6)
국적미취득(전체)	125,673	33,457	35,386	351	5,050	2,309	28,817	6,117	9,116	5,070
(구성비)	(100.0)	(26.6)	(28.2)	(0.3)	(4.0)	(1.8)	(22.9)	(4.9)	(7.3)	(4.0)
남성	15,190	3,202	6,388	53	511	43	150	169	1,571	3,103
(구성비)	(100.0)	(21.1)	(42.1)	(0.3)	(3.4)	(0.3)	(1.0)	(1.1)	(10.3)	(20.4)
여성	110,483	30,255	28,998	298	4,539	2,266	28,667	5,948	7,545	1,967
(구성비)	(100.0)	(27.4)	(26.2)	(0.3)	(4.1)	(2.1)	(25.9)	(5.4)	(6.8)	(1.8)
혼인귀화자(전체)	41,417	15,241	18,368	166	314	194	1,962	3,682	933	557
(구성비)	(100.0)	(36.8)	(44.3)	(0.4)	(0.8)	(0.5)	(4.7)	(8.9)	(2.3)	(1.3)
남성	2,047	731	727	63	36	2	15	35	335	103
(구성비)	(100.0)	(35.7)	(35.5)	(3.1)	(1.8)	(0.1)	(0.7)	(1.7)	(16.4)	(5.0)
여성	39,370	14,510	17,641	103	278	192	1,947	3,647	598	454
(구성비)	(100.0)	(36.9)	(44.8)	(0.3)	(0.7)	(0.5)	(4.9)	(9.3)	(1.5)	(1.2)

자료: 행정안전부, 2009. 8.

출신국가별 전체 결혼이민자 중 한국국적 취득비율은 필리핀이 37.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조선족 34.2%, 중국한족 3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로 한국국적 취득비율은 대만이 5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한족 18.6%, 파키스탄 등 기타 아시아 국가가 17.6%, 필리핀 17.2%, 중국조선족 10.2%, 베트남 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성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별로 한국국적 취득비율은 필리핀이 38.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국조선족 37.8%, 중국한족 32.4% 등이며, 베트남, 일본, 몽골 등의 경우에는 1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3-3〉 결혼이민자 중 국적취득자 비중, 2009. 8. 현재

(단위: 명, %)

	총계	동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중국 (한족)	중국 (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전체	24.8	31.3	34.2	32.1	5.9	7.8	6.4	37.6	9.3	9.9
남성결혼이민자	11.9	18.6	10.2	54.3	6.6	4.4	9.1	17.2	17.6	3.2
여성결혼이민자	26.3	32.4	37.8	25.7	5.8	7.8	6.4	38.0	7.3	18.8

자료: 행정안전부, 2009. 8.

2. 결혼이민자의 인구학적 특성

가. 결혼이민자의 성별 구조

전체 결혼이민자의 성비는 12(여성 100명당 남성 12명)로 여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 비취득자의 성비는 14로 국적 취득자의 성비 5에 비해 더 높아, 현재 외국인남성 결혼이민의 경우 국적취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이민자의 성비는 국적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아시아국가들 중 동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적을 가진 결혼이민자의 성비는 예외 없이 아주 낮은 수준이며, 대만 국적자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남성 비율이 높으나 29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반면, 남부아시아나 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로의 결혼이민자는 주로 남성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아주 높은 성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남부아시아 국적 결혼이민자의 성비는 무려 349 그리고 미국 결혼이민자의 성비는 201에 이르고 있다. 요컨대, 동아시아나 중앙아시아 국적자의 결혼이민은 1990년대부터 붐이 형성되어 온 ‘외국인 신부 수입’과 연계된 반면, 다른 국적자의 결혼이민은 ‘사랑’을 매개로 이루어진 혼인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4〉 결혼이민자의 성비(2009. 8. 5 기준)

(단위: 여성 100명당 남성수)

	전체	국적 비취득	국적 취득(혼인귀화)
총계	12	14	5
중국한족	9	11	5
중국조선족	15	22	4
대만	29	18	61
일본	11	11	13
몽골	2	2	1
베트남	1	1	1
필리핀	2	3	1
태국	2	2	1
인도네시아	13	14	5
동남아시아 기타	4	2	30
남부아시아	349	320	632
중앙아시아	4	4	6
미국	201	210	50
러시아	5	6	3
기타	231	353	25

자료: 행정안전부(2009. 8).

나.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구조

결혼이민자의 입국시 연령은 경제활동능력, 가임력, 향후 고령화 속도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등을 파악함에 있어 경제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들의 입국시 연령을 혼인신고시 연령을 기준으로 측정해보면 <표 3-5>와 같다. 여기에서 제시한 자료는 통계청의 인구동태통계로서 2004~2008년의 5년 간에 신고한 혼인건수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남녀) 실제 입국시 연령과 혼인신고시 연령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한국인여성과 결혼한 외국인남성의 혼인연령은 40세 이상이 46.6%로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30대 32.9%, 20대 20.1% 등으로 나타났다(35세 이상 61.9%).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의 혼인연령은 10대 후반 17.2%, 20대 37.6%, 30대 25.4% 등으로 20대 초반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한국인남성과 결혼한 외국인여성의

상당 부분은 장기적으로 국내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가임력이 나 노동력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3-5〉 국제결혼 부부의 혼인연령(혼인신고시 연령) 분포, 2004-2008

(단위: 명, %)

혼인연령분포	외국인남성		외국인여성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전체	47,909	100.0	143,182	100.0
15~19세	263	0.5	24,587	17.2
20~24세	2,233	4.7	27,060	18.9
25~29세	7,355	15.4	26,740	18.7
30~34세	8,443	17.6	19,139	13.4
35~39세	7,308	15.3	17,064	11.9
40세 이상	22,307	46.6	28,592	20.0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이입하는 외국인들은 비교적 젊은층인데다가 결혼이민의 역사가 비교적 짧아,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의 연령구조는 비교적 젊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09년 8월 현재 국내체류 남성결혼이민자 중 가임기연령층(15~49세)의 비중은 75.9%이며, 생산가능인구연령층(15~64세)의 비중은 무려 94.0%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더 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임기연령층의 비중이 90.2%, 생산가능인구연령층의 비중은 99.1%로 나타났다. 환언하면, 이들의 고령화수준(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 6.0%,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별 가임기연령층의 비중을 살펴보면, 기타아시아 출신 남성결혼이민자의 97.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비아시아 남성결혼이민자 84.4%, 동북아시아 남성결혼이민자 69.4%로 나타났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도 가임기연령층의 비중이 기타아시아 99.4%, 비아시아 88.3%, 동북아시아 85.7%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출신지역에 따른 고령화 정도의 차이는 결혼입국시기가 이른 나이에 집중되어 있는 정도의 차이도 있겠지만, 한국으로의 결혼입국 역사에 의해서도 좌우된다. 환언하

면, 상대적으로 오래 전부터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하여왔던 동아시아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기타아시아나 비아시아권 출신의 결혼이민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고령화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6〉 결혼이민자의 연령별 구성비(2009. 5. 1 기준)

(단위: %, 세)

	남자				여자			
	전체	동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아시아	전체	동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아시아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19세	0.7	0.8	0.4	0.5	1.6	0.3	4.5	0.8
20-24세	2.2	2.3	3.2	1.1	16.9	4.2	43.7	3.6
25-29세	7.0	4.8	12.2	11.1	17.0	12.8	25.4	20.8
30-34세	14.2	9.2	25.5	24.5	15.9	17.1	12.9	29.9
35-39세	19.6	15.8	32.1	24.5	16.9	21.3	7.9	18.0
40-44세	17.7	18.1	19.0	15.2	12.2	16.5	3.7	9.3
45-49세	14.6	18.4	5.0	7.4	9.6	13.7	1.4	5.9
50-54세	9.7	12.4	1.7	5.1	5.6	8.1	0.4	4.6
55-59세	5.1	6.4	0.7	3.4	2.4	3.6	0.1	3.3
60-64세	3.3	4.0	0.1	3.2	0.9	1.3	0.0	1.6
65-69세	2.9	3.9	0.1	1.5	0.4	0.6	0.0	1.5
70-74세	1.9	2.4	0.0	1.3	0.2	0.4	0.0	0.2
75-79세	0.8	1.0	0.0	0.8	0.1	0.2	0.0	0.2
80세이상	0.4	0.4	0.0	0.3	0.1	0.1	0.0	0.2
15-49세	75.9	69.4	97.5	84.4	90.2	85.7	99.4	88.3
15-64세	94.0	92.3	99.9	96.2	99.1	98.7	100.0	97.9
65세이상	6.0	7.7	0.1	3.8	0.9	1.3	0.0	2.1

주: 행정안전부(2009. 8) 자료를 이용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의 연령별 구성으로 보정한 결과임.

다. 결혼이민자의 혼인유형 및 혼인연령

결혼이민자 및 그들 배우자의 혼인유형은 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다문화가족의 사회경제적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지난 5년간(2004~2008) 국제결혼을 한 부부 중 모두 초혼인 비율은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 부부의 경우 49.6%로 절반을 차지한 반면, 외국인남성-한국인여성의 경우에는 40.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다. 국제결혼 부부 모두 재혼인 비율은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경우 25.3%, 외국인남성-한국인여성의 경우 33.3%로 후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한국인배우자가 재혼이고 외국인배우자가 초혼인 비율은 한국인 남성의 경우 14.2%, 한국인여성의 경우 14.7%로 각각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국제결혼부부 중 적어도 한명이 재혼인 비율이 높다는 점(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 50.4%, 외국인남성-한국인여성 59.4%)은 그만큼 가족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고, 이는 이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인하여 추가 출산이 제한되고 자녀양육 부담도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겠다.

<표 3-7> 국제결혼 부부의 혼인유형, 2004~2008

혼인종류 (남·여)	전체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		외국남성-한국여성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전체	186,174	100.0	140,122	100.0	46,052	100.0
초혼-초혼	88,181	47.4	69,505	49.6	18,676	40.6
초혼-재혼	22,039	11.8	15,275	10.9	6,764	14.7
재혼-초혼	25,204	13.5	19,914	14.2	5,290	11.5
재혼-재혼	50,750	27.3	35,428	25.3	15,322	33.3

(단위: 명, %)

자료: 통계청, 혼인통계자료(원자료)

지난 5년간(2004~2008) 국제결혼 부부 간의 연령 차이는 <표 3-8>에 제시되어 있다.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 간의 연령차이(남성연령-여성연령)가 0~4세인 경우는 17.6%에 불과하며, 대신 5~9세 차이 22.2%, 10~14세 차이 23.2%, 15~19세 17.9%, 20세 이상 차이도 무려 12.6%나 된다. 반면, 외국인남성-한국인여성 국제결혼부부의 경우에는 여성이 남성보다 연상인 비율이 30.5%에 이르며, 5세 미만 차이 31.2%, 5~9세 차이 18.3%로 나타났다. 이들 부부의 연령차이가 10세 이상인 경우도 18.9%로 나타났다.

2008년 국제결혼 부부간의 연령차이 평균은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경우 평균 11.8세, 외국인남성-한국인여성 간 평균 4.1세로 각각 나타났다. 한국인 결혼부부간의 연령차이가 평균 2.3세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남성-한국인여성의 평균 연령차이는 다소 크며,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의 경우에

는 아주 크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 부부 간의 연령 차이가 크다는 점은 결국 한국인 남성의 연령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해준다. 하나는 이외국인여성이 한국인남편의 직장은 은퇴 후에 자녀 양육·교육을 위해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자녀들은 충분한 교육기회를 얻지 못함에 따라 빈곤을 대물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른 하나는 결국 노후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국제결혼부부 스스로 자녀출산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표 3-8〉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차이, 2004~2008

(단위: 명, %)

연령차이(남-여)	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		외국남성-한국여성	
	건수	구성비	건수	구성비
계	143,182	100.0	47,909	100.0
부인 많음	9,368	6.5	14,618	30.5
0~4세	25,149	17.6	14,936	31.2
5~9세	31,837	22.2	8,789	18.3
10~14세	33,265	23.2	4,724	9.9
15~19세	25,592	17.9	2,599	5.4
20~24세	12,844	9.0	1,364	2.8
25세 이상	5,127	3.6	879	1.8
2008년 평균연령차이(세)	11.8		4.1	

주: 2008년도 한국인남녀간의 혼인연령 차이는 2.3세로 나타남.

3.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가. 국제결혼 외국남녀의 교육수준

다문화가족의 교육수준은 전체 인구의 자질 측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교육수준은 이주민과 배우자 및 자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국제결혼이주민의 교육수준을 분석하며, 다문화

가족 자녀의 교육정도는 다음 절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앞서 2004~2008년 간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의 연령은 대체적으로 20~3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20~30대 국제결혼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학력수준을 비교하고자 한다. 우선 지난 5년간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 전체의 학력으로는 대학이상 29.1%, 고등학교 46.5%, 중학교이하 24.4%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준은 2005년도 인구및주택총조사 결과로서 한국인 평균학력에 비해 낮다. 구체적으로 20~30대 한국남녀 중 대학이상 학력소지자는 무려 60.8%이며, 고등학교도 36.5%로 높은 편이며 중학교 이하 학력의 비중은 2.7%에 불과하다. 특히 대학이상 고학력층의 비중은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에 비해 한국인 평균치가 3배 이상 높다.

국제결혼 외국인배우자의 학력수준은 성별로 그리고 출신국가(지역)별로 극명한 차이를 나타낸다. 국제결혼 외국인여성 중 대학이상 고학력층의 비중은 23.2%에 불과하여, 외국인남성의 62.6%와 한국여성 57.0%에 비해 아주 낮은 수준이다. 국제결혼 외국남성 중 대학이상 고학력층의 비중은 비아시아 출신의 경우 79.0%로 아주 높고, 다음으로 기타아시아 출신 51.4%, 동아시아 출신 45.1% 순이다. 국제결혼 외국여성의 경우 대학이상 고학력층의 비중은 비아시아 70.8%, 동아시아 24.7%, 기타아시아 14.1% 순이다. 요컨대, 국제결혼 외국인의 학력은 출신지역에 따라 아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3-9〉 한국인남녀와 국제결혼 외국남녀(2004~2008)의 교육수준, 20~30대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이상	계 (명)
국제결혼 전체	0.2	2.7	21.5	46.5	29.1	100.0 (73)
외국인 남성	0.1	0.8	5.2	31.3	62.6	100.0 (11)
동아시아	0.0	1.8	11.5	41.6	45.1	100.0 (4)
기타아시아	0.5	0.5	4.4	43.3	51.4	100.0 (1)
비아시아	0.0	0.1	0.3	20.6	79.0	100.0 (5)

(단위: %, 천명)

〈표 3-9〉 계속

(단위: %, 천명)

	무학	초졸	중졸	고졸	대학이상	계 (명)
외국인여성	0.3	3.0	24.4	49.1	23.2	100.0 (62)
동아시아	0.2	2.9	21.4	50.7	24.7	100.0 (33)
기타아시아	0.3	3.5	31.6	50.5	14.1	100.0 (26)
비아시아	0.1	0.4	1.7	27.1	70.8	100.0 (4)
한국인 전체	0.2	0.5	2.0	36.5	60.8	100.0 (15,543)
남성	0.2	0.4	2.0	32.8	64.6	100.0 (7,900)
여성	0.2	0.5	2.1	40.3	57.0	100.0 (7,643)

주: 한국인의 학력수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나. 국제결혼 외국남녀의 직업

결혼이민자는 한국으로 입국한 후 언어 등의 문제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제약되고 있어, 현재 경제활동상태로는 이들의 직업능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질 중 하나로서 직업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혼인신고 당시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을 분석하기로 한다.⁵⁾ 한편, 국제결혼자 중 일부는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체류 결혼이민자만의 경제활동상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자료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특히 국제결혼 외국여성의 대부분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우선 한국남녀(20~30대)의 경제활동상태를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

5) 일부 연구에서 실시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본국에서의 취업경험 및 종사 직업을 살펴보면, 설동훈 외(2006)에서는 75%, 정기선 외(2007)에서는 74.8%가 취업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편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연령이 이주 어리다는 점에서 실제 취업경험률이 아주 높다는 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대체적으로 이들 취업경험 이주여성의 직업 분포는 연구자마다 상이하게 나타났다. 정기선 외(2007)에 의하면, 판매·서비스직 40.4%, 사무직 26.4%, 생산직 16.5%, 전문관리직 13.5%, 농업 3.2% 등이다. 설동훈 외(2006)에 의하면, 서비스직 18~21%, 사무직 24~17%, 생산직 14~16%, 전문직 6~10%, 자영업 4~7% 등이다. 국적별로는 일본은 사무직과 전문직 종사경험 비율이 높고 필리핀, 조선족, 한족 등은 서비스판매직과 생산직, 그리고 베트남은 생산직과 농업에 종사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과를 통해 살펴보면, 남성 중 29.5%만이 무직(학생 포함)이며 관리·(준)전문직 18.3%, 사무직 14.2%, 서비스·판매직 26.9%, 농림·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5.3%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의 경우에는 46.5%가 무직이며, 관리·(준)전문직 15.2%, 사무직 13.7%, 서비스·판매직 11.8%, 농림·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6.0% 등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 당시 국제결혼 외국남성의 경제활동상태는 관리·(준)전문직 24.6%, 사무직 25.0%, 서비스·판매직 12.6%, 농림·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8.6% 등으로 총 85.7%가 취업 중이었으며, 나머지 14.3%는 무직(학생 포함)으로 나타났다. 외국남성의 출신국가(지역)별로 무직(학생)의 비율은 동아시아 출신 16.9%, 기타아시아 출신 15.3%로 유사한 반면, 비아시아 출신 11.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들 중 관리·(준)전문직 비율은 비아시아 출신의 경우 36.6%로 높은 반면, 동아시아 출신 13.3%, 기타아시아 출신 13.2%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국제결혼 외국여성의 경우에는 관리·(준)전문직 2.4%, 사무직 5.6%, 서비스·판매직 4.0%, 농림·기능·장치·단순노무직은 2.7% 등 전체 26.6%만이 취업 중이었으며, 나머지 73.4%는 무직(학생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여성결혼이민자(특히 저연령층)는 본국에서 전혀 취업경험이 없이 국내로 이주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외국여성의 출신국가(지역)별로 무직(학생)의 비율은 동아시아와 기타아시아 출신의 경우 72.4%와 76.4%로 유사한 반면, 비아시아 출신의 경우 61.0%로 상대적으로 낮아 직업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관리·(준)전문직과 사무직의 비율은 비아시아 출신의 경우 11.8%와 8.4%로 동아시아 출신(2.3%, 7.6%)과 기타아시아 출신(1.1%, 2.7%)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3-10〉 한국남녀(20~30대)와 국제결혼 외국남녀(2004~2008)의 경제활동상태

(단위: %, 천명)

	국제결혼 외국남성				국제결혼 외국여성				한국남녀(20~30대)		
	소계	동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소계	동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전체	남성	여성
의회고위관리자	1.1	1.1	1.2	1.1	0.1	0.1	0.1	0.4	1.0	1.7	0.3
전문가	23.5	12.2	12.0	35.5	2.3	2.2	1.0	11.4	15.7	16.6	14.9
사무직	25.0	32.7	30.4	17.4	5.6	7.6	2.7	8.4	14.0	14.2	13.7
서비스·판매직	12.6	15.9	14.2	9.4	4.0	4.8	2.9	4.9	11.7	11.5	11.8
농림	1.3	2.8	1.4	0.1	3.8	1.0	7.8	0.0	1.1	1.5	0.8
기능원	3.8	4.8	9.7	1.7	0.7	0.8	0.6	0.6	5.7	10.4	1.3
장차	1.2	1.5	3.9	0.5	0.2	0.2	0.2	0.1	6.6	10.8	2.7
단순노무	2.3	3.4	6.7	0.3	0.6	0.7	0.6	0.3	2.7	4.2	1.2
무직(학생포함)	14.3	16.9	15.3	11.9	73.4	72.4	76.4	61.0	41.8	29.5	53.5
군인미상	14.5	8.4	5.2	21.6	6.8	7.2	6.5	5.9	0.6	1.2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1,421)	(4,712)	(1,146)	(5,563)	(65,619)	(34,414)	(27,086)	(4,119)	(8,762)	(5,190)	(3,571)

주: 한국인의 경제활동상태는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임.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국제결혼 외국남성의 경우에는 한국남성(20~30대)에 비해 취업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전문직 경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에는 한국여성(20~30대)에 비해 취업경험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전문직 경력은 아주 낮고 대신 질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직 및 단순노무직 경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국 결혼이민남성의 직업능력은 한국남성 평균 수준과 유사한 반면, 결혼이민여성의 직업능력은 한국여성 평균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결혼이민여성의 경우 국내에 정착한 후에도 짧은 체류기간에 따른 한국어 소통곤란, 문화 차이,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내국인에 비해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에 의하면, 면접대상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대부분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원하고 있으나, 한국어 구사능력 미흡, 자녀양육 부담, 특별한 기술 부재 등으로 인하여 실제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취업의 경우에도 육체노동이나 서비스·판매직 같은 일자리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 이들이 갖은 직업능력은 더욱 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다.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지금까지 수행된 연구들 대부분은 다문화가족의 상당비중이 저소득층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바 있는 결혼이민자의 취업률이나 직업상 특징을 고려해보아도 다문화가족의 가구소득수준은 낮을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김유경 외, 2009)에 의하면, 2008년 현재 다문화가족 중 월평균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9.8%, 100~200만원 미만인 경우가 44.7%로 전체 가구의 54.5%가 200만원 미만의 소득계층에 속하고 있다. 조사시기인 2008년도에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이 311.3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비중의 다문화가족이 저소득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

〈표 3-11〉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구(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

(단위: %, 명)

구분	100만원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만원이상	계(명)
전체	9.8	44.7	31.2	14.3	100.0(892)
지역					
도시	7.0	41.1	35.6	16.3	100.0(559)
농어촌	14.4	50.8	23.7	11.1	100.0(333)
가구원수					
2명	7.3	40.0	36.4	16.4	100.0(110)
3명	9.4	44.7	34.9	11.0	100.0(255)
4명이상	10.4	45.1	28.7	15.7	100.0(567)

주: 전국가구(2인이상) 월평균소득은 2008년 3,369,673원임.

출처: 김유경 외(2008).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은 단순히 가구경제의 취약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저소득층 결혼이민자들은 가구경제에 도움이 되고자 경제활동을 강하게 원할 것이나, 언어소통 문제, 문화적 차이, 낮은 직업능력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참여가 곤란할 것이다. 이는 결혼이민자로 하여금 사회부적응을 느끼게 하여 사회비통합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낮은 경제수준은 자녀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

족은 수입 부족으로 인하여 자녀들에게 충분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에 의하면, 면접대상 국제결혼 이주여성들 대부분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원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로는 남편의 소득 부족 내지 불안정성(저임금 직종, 일용직 등 특성을 가짐), 자녀 양육비용 부담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측면에서는 수입을 위해 다문화본부 모두 힘들게 취업활동을 함으로써 자녀교육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어려울 것이다. 이는 결국 자녀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다문화가족의 자녀보육교육 수준

국제결혼이민자들이 증가하면서 한국인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즉, 다문화가족 자녀의 수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가정교육 및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은 이들의 자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의 자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를 성장단계별로 살펴보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교육 수준은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유아기에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출신 어머니와 생활하는 관계로 언어발달 지체를 보이거나 문화부적응이 나타나곤 한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에 의하면, 결혼이민여성에 따라 한국어 구사 능력에 큰 편차가 존재한다. 사례조사 대상 중국출신(조선족, 한족) 여성의 경우 한국어를 다소 자유스럽게 구사하고 있으나, 일부 어려운 단어에 대해서는 아직 의미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여성의 경우에 한국 내에서 거주기간이나 한국어 습득 노력의 정도에 따라 한국어 구사능력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일부 여성들의 경우에는 한국어 소통이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엄마가 되는 것보다 취업에 욕심을 부려 엄마됨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며, 그 결과 자녀교육 등에 무방비한 상태에 있는 경향이 있다.⁶⁾

사례조사에 응한 국제결혼 이주여성 대부분은 교육 등과 관련한 자녀 육

심은 한국인과 동일하며,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도 한국인과 동일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성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며, 양육방법에 차이가 존재하여 일종의 문화적 갈등을 경험하고 있다.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방법을 한국인보다 모르고 늦게 알기 때문에, 혜택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남편의 도움이 필요하나, 남편은 방임하거나 혹은 간섭이라고 해서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국제결혼 이주여성들은 한국인남편과 자녀교육방식 차이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 조사자료(2008)는 만6세 이하 아동 33,140명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가 2만명에 달해 이용률이 60.8%에 이르고 있다.⁷⁾ 이를 통해 결혼이주여성 자녀의 보육시설 이용률이 최근 들어 크게 증가해 일반 아동들과 비슷한 수준(2008년 59.4%)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에 의하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주로 읍면에 거주하여 교통비용 등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한다. 다문화가족들이 보육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가장 주된 이유로는 이용방법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비용문제 때문으로 나타난다.

취학령기에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외국인 어머니로부터 학습에 관한 도움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자 여성들이 취학 자녀의 학업지도를 직접 하지 못하는 이유로 교과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서(37.1%), 생업에 바빠서(30.3%) 한국어 수준이 낮아서(18.0%)를 주로 지적해 낮은 한국어 실력 때문에 자녀 학업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동훈 외, 2006).⁸⁾ 한편, 배우자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는 5.6%에

6) 최근에 실시된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인배우자 중 78.2%는 자녀양육자나 보육시설 부재, 경제적 곤란 등을, 그리고 결혼이민자 중 89.7%는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김유경, 2009).

7) 2008년 12월 다문화아동으로 보육시설 이용자는 20,920명임(보건복지가족부, 2008).

8)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에 위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어 교육에서 교재 발행 부수가 한정되어 있고 적기에 교재를 공급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프로그램이 1회로 끝나기 때문에 지속적인 프로그램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교재의 언어가 다양화되어 있지 못한 점도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불과하여, 대부분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가정학습에서 부모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반학생의 집단따돌림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부적응 문제를 발생하여 교육수준을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들 중 상당수가 엄마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집단따돌림을 경험하여 학교부적응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 자녀 중 17.6%가 집단 따돌림을 경험하였고, 주된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가 34.1%로 가장 높았다(설동훈 외, 2005). 다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자신의 외모로 인해 친구들로부터 놀림과 따돌림을 경험한 비율이 14.6%에 이르고 있다(정하성·우룡, 2007).⁹⁾

부모의 도움부족과 학교 친구들의 놀림과 따돌림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교생활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반 중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만족 48.4%, 보통 44.4%, 불만족 7.2%로 나타나 불만족 비율이 낮다(통계청, 2008). 그러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경우 만족 39.7%, 보통 42.2%, 불만족 18.1% 등으로 불만족 비율이 훨씬 높다(정하성·우룡, 2007). 학교생활 부적응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게 하여 학습효과가 낮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경우 엄마의 한국어 구사능력 부족,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환경, 친구들의 따돌림 등으로 기초학습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 또한 낮다. 어머니의 한국어실력이 낮을수록 자녀의 학업부진 정도가 높았고, 학습결손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조영달, 2006).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학습능력뿐만 아니라 성장과정에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일반아동에 비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언어학습능력이 떨어지고 이것은 정체성과 대인관계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9) 이는 우리나라 일반 초등학생의 집단 따돌림 경험 비율 13.4%(이재분 외, 2002)와 비교할 때 큰 차이는 없지만 따돌림을 당한 이유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일반학생들의 경우 따돌림의 가장 큰 이유는 잘난 척했기 때문임).

다(설동훈 외, 2005; 오성배, 2005). 이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태로 성장하여 성인이 되면 더욱 복잡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으며, 정상적으로 교육을 마치더라도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취업의 기회를 갖지 못할 경우 빈곤의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¹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교교육에 적응하지 못하고 탈락할 경우 다문화가족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5. 본 연구에의 함의 및 분석틀

이 장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인구자질과 관련하여 여러 측면에서 특성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인한 인구자질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의 기본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다문화가족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비율은 24.6%가 불과하며, 나머지 3/4는 국적 미취득자이다.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비중은 필리핀과 중국(조선족, 한적)을 제외한 국가들 출신에서 상대적으로 높다. 다문화가족의 법적 특성은 취업, 결혼생활, 가족관계, 교육 등과 관련하여 인구자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한국에서의 생활행태와 국적취득 조건 간의 조화를 정책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둘째, 다문화가족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는 주로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다. 여성 집중경향은 동아시아 출신의 결혼이민자에게서 보편적인 반면, 남아시아나 비아시아권 결혼이민자는 남성 집중 경향이 강하다. 여성 집중 경향은 1990년 중반 이래 “외국인 신부 수입”이라는 사회현상의 결과로

10) 인권위 자료(2003)에 따르면 주한미군 혼혈인 대부분은 출생시부터 전 생애 생활전반에 걸쳐 차별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최하층으로 전락한 것으로 나타남. 학교교육 단계에서 2/3 이상이 놀림과 따돌림,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하여 42.2%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혼혈인 가구의 월평균 수입은 101만원정도로 서울시민 월평균 가구소득(281만)의 36%수준에 불과했음(행정자치부(2007)에서 재인용).

볼 수 있다. 남성 집중경향은 근로자로 국내에 유입하여 “사랑”을 매개로 결혼한 사례로 간주할 수 있다. 여전히 가장장적인 관습이 강한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성별은 결혼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 특히, 출신국가별로 어느 특정한 성으로의 집중 경향은 언어, 자녀 양육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에서 출신국가뿐만 아니라 성 인지적인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연령 구조는 두 가지 관점에서 특이성을 보이고 있다. 하나는 젊은층 비중이 높다는 점이며, 또 다른 하나는 부부 간의 연령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는 점이다. 결혼이민자의 연령이 젊다는 점은 고령화 수준을 낮추는 데에 기여하며, 가임력이나 노동력 차원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젊은 연령층이 유입할 경우 노동의 비숙련도가 높고 한국생활에의 적응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은 건전한 가족관계 형성 및 2세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여 인구자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서 부부 간의 연령 차이가 크다는 점은 결혼생활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특히 한국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경우 자녀의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결혼이민자의 결혼형태로는 약 50%가 적어도 남녀 중 한명은 재혼(한국인남성-외국인여성 50.4%, 외국인남성-한국인여성 59.4%)으로 나타난다. 특정집단의 결혼형태로는 극단적인 것으로도 간주할 수 있으며, 그만큼 가족생활이 불안정할 수 있다. 특히, 이전 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 인하여 추가 출산이 제한되고 자녀양육 부담도 커질 수 있는 개연성도 높다. 결과적으로 이들 국제결혼부부 사이에 태어난 자녀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양육이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인구자질의 저하라는 문제까지도 연계될 수 있다.

다섯째, 결혼이민자의 학력수준은 한국인 평균수준에 비해 아주 낮다. 한국인의 학력수준이 세계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결혼이민자의 대학

이상 학력비율 20% 수준은 아주 낮으며, 중학교 이하 학력비율 30% 수준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결혼이민자(특히 여성)의 낮은 학력수준은 사회적응력을 낮출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 사회비통합성의 문제를 자녀에게까지 세습화할 가능성이 높다.

여섯째, 결혼이민여성의 직업력(취업경험, 전문직종 포함 고위신직업 등)은 한국인 평균에 비해 열악하다. 취업을 경험한 비율이 낮으며, 취업 유형협자인 경우에도 전문직 경력은 아주 낮고 대신 질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직 및 단순노무직 경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더욱이 결혼이민여성은 국내정착기간이 짧아 언어소통 곤란, 문화 차이,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참여가 극히 제약받고 있어, 직업력이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결혼이민자의 직업능력은 빈곤으로부터 탈피, 한국사회 일원으로서 역할 증가 및 성취감(자이실현 욕구 충족) 증대, 한국사회에의 적응 및 조기정착, 자녀 교육적인 측면 등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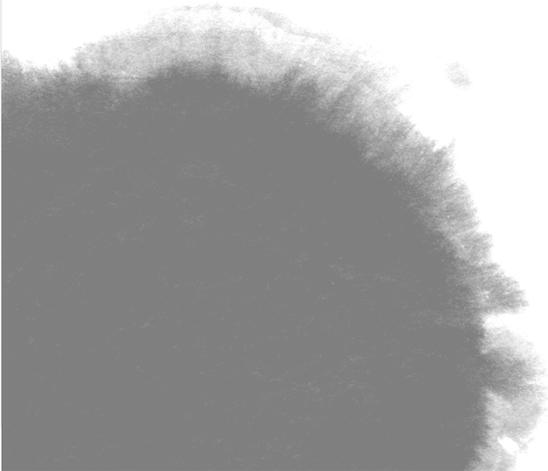
일곱째,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은 열악한 편이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사회부적응성을 증가시키며, 자녀양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문화가족의 빈곤은 결혼이민자의 낮은 학력수준과 직업능력과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대물림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인구자질 측면에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의 계층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사회불만족 집단으로 등장하여 사회통합성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실태와 관련한 주요 특징들은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가정보육교육 취약, 일반적인 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미흡, 학교교육에서의 소외 등을 들 수 있다.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주된 구성원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보육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인구자질은 물론 사회통합성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의 제 특성들은 인구자질과 사회통합성에 독립적이기 보다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및 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및 투자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 인구자질 측면에서 다룬 다문화가족의 제 특성들은 제5장에서 다문화가족의 양적 변동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04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IV. 다문화가족 향후 전망

1. 추계 방법

가. 추계대상

본 연구의 목적 및 범위에 따라 추계 대상은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서 국제결혼 이민자와 그 후손으로 한정한다. 국제결혼 이민자의 한국인배우자에 대해서도 추계를 실시하는데, 주된 목적은 출산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는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로 구성되는데, 본 추계에서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는 국가기관에 혼인신고를 통해 부부가 되는데,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국내에 체류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또는 그 구성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결혼이민자 2세대로 간주하며, 이들은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사이에 태어난 자녀와 재혼인 이민자가 입국 전 이전 배우자와 출산한 자녀를 포함한다. 그러나 재혼인 한국인배우자가 한국인 전처·남편과 출산한 자녀는 순수한 한국인 혈통으로서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문화가정 자녀가 성장하여 결혼을 통해 출산한 자녀는 결혼이민자 3세대로 간주하여, 본 추계의 대상이 된다.

한편, 결혼이민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과정에서 기 출산한 자녀 이외에도 부모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결혼이민을 통해 형성되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추계 대상에

서 제외한다.

추계 대상으로서 결혼이민자와 후손은 이혼·별거, 사별, 재혼 등 혼인상태 변화에 의해 제외되지 않는다. 다만, 결혼이민자와 후손들이 혼인상태 변화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추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요컨대, 결혼이민자나 후손들이 한 가족을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모두 추계 대상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의 출신국은 결혼이민자의 원(출신) 국적을 의미한다. 다문화가족 추계는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분류하여 실시하며, 한국인배우자와 후손들도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분류하여 추계한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출신국별로 추계하는 가장 주된 목적으로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출신국에 따라 인종, 문화적 배경, 인구자질 등에 차이가 존재하며, 이는 한국인배우자와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출신국을 동북아시아 지역, 기타아시아 지역, 비아시아 지역 등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하도록 한다. 동북아시아지역에는 일본, 중국(한족, 조선족), 몽골, 대만, 타이완, 홍콩, 북한, 마카오가 포함된다. 출신지역을 세 지역으로 구분한 주된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의 이유는 지나치게 출신지역(국가)을 세분화할 경우 추계의 정확도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결혼이민자의 인구자질 관련 특성으로서 교육수준, 건강수준(평균수명 등으로 측정가능), 경제적 수준(일인당 GDP 수준 등으로 측정 가능) 등이 이들 세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추계는 결혼이민자의 성별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주된 이유로는 결혼이민자의 성별로 연령 분포, 교육정도, 직업능력, 부부관계, 한국가족과의 관계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주로 혼인 자체를 목적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저연령, 저학력, 낮은 직업능력 등의 특성이 강한 반면,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먼저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후 한국인여성과 결혼하는 경향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령이 많고, 고학력이며, 높은 직업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부 및 가족 관계에 있어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지위가

열악한 반면,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에는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로서 양성평 등의식이나 한국인배우자 가족과의 관계가 보다 원만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결혼이민자의 성별 차이는 자녀를 포함한 후손들의 교육이나 태도(가치관)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실적으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경우 저학력, 저소득층, 낮은 직업경험 등의 특성을 보이고 있는데다가, 남편 및 시댁과의 관계도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추계기간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 추계의 기간은 2010~2050년의 40년이다. 일반적으로 추계기간이 길수록 추계결과의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낮다(Shryock and Siegel, 1976). 주된 이유로 결혼이민을 포함한 국제이동은 출발지국(origin country)과 목적지국(destination country)의 사회문화적 환경, 경제적 여건, 법률·정책적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들은 추계 기간이 길수록 더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1990년대부터 본격화된 국제결혼 경향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의 불확실성도 추계기간이 길수록 커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다문화가족을 2050년까지 추계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다문화 가족은 아직 소수자(minority)에 불과하여 단기간 내에 전체인구의 규모와 구조 및 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 대한 추계 결과를 2050년까지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을 2050년까지 추계하여, 전체인구추계결과와 비교분석하는 것이 더욱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 추계방법

일반적으로 인구추계방법으로는 수학적 방법(mathematic method), 경제적 방법(economic method) 및 조성법(cohort component method)이 있다. 수학적 방법이나 경제적 방법은 조성법이 개발되기 전에 사용하였던 전통적인 방식이다. 수학적 방법은 과거 일정기간 동안 인구증가율 또는 유사한 인구의 증가율을 이용하여 인구를 추계하는 방법¹¹⁾으로 인구와 제 환경요인 간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방법은 출산 및 사망 등이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어 정확도가 낮다고 할 수 있다. 경제적 방법은 인구성장이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변화하는 것을 전제한다.

조성법은 출산(fertility), 사망(mortality) 및 국제인구이동(international migration)의 인구변동요소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대표적인 인구추계방법으로, 우리나라 통계청뿐만 아니라 국제기구와 대부분 국가(정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수학적 방법이나 경제적 방법과 달리, 조성법은 출산, 사망, 국제이동의 인구변동요소별 지표들뿐만 아니라 성·연령별 인구 추계를 가능케 해준다. 이러한 장점으로 인하여 조성법을 적용한 추계 결과는 인구(추계대상) 규모와 구조의 변동을 정밀하게 전망하는데 이용된다.

조성법은 기본적으로 출생, 사망, 인구이동의 인구변동요인들의 조합형태인 인구방정식(population equation)에 의거한다. 인구균형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_{n+1} = P_n + B - D + I - E$$

(P 인구, B 출생수, D 사망자수, I 유입인구, E 유출인구, n 년도)

이러한 인구균형방정식을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출신지역(국가)별, 성별, 연령별로 세분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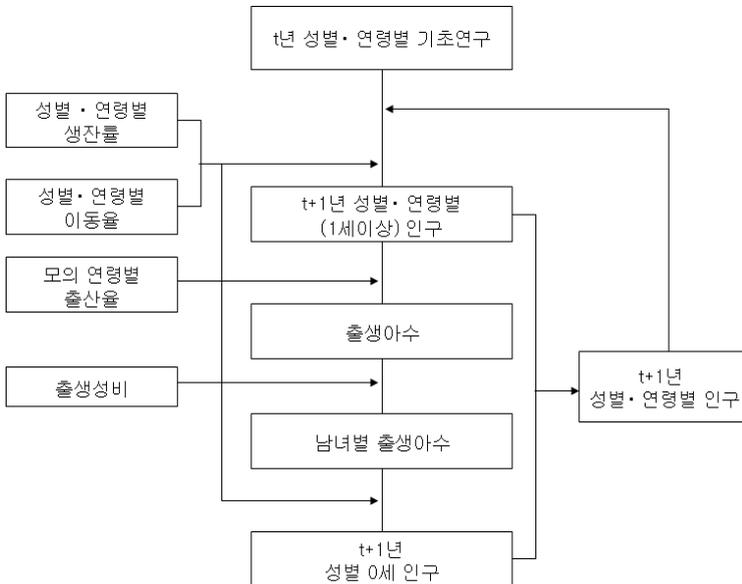
11) 수학적 방식은 연간증가율 이용방법, 지수곡선 이용방법, 로지스틱 이용방법 등이 있다.

$$P_{n+1}(i,j,k) = P_n(i,j,k) + B(i,j,k) + D(i,j,k) + I(i,j,k) - E(i,j,k)$$

(P 국제결혼이주자, B 출생아, D 사망자, I 이입자, E 이출자, n 연도, i 국적, j 성, k 연령)

조성법은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절차는 [그림 4-1]에 도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결혼이민자의 성별과 출신 지역별로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적용한다. 주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문화적 배경, 경제적 여건, 인구자질 등이 출신지역(국가)과 성별로 차이가 두드러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추계방법 상 필수적인 요건으로서 연령별 구조나 출산력에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인배우자가 남자나 여자인가에 따라 한국인 또는 결혼이민자의 출산력 적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조성법을 구성하고 있는 기준인구와 인구변동요소(출생, 사망, 국제이동)에 대한 개념과 가정(assumptions)은 다음 소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4-1] 조성법 도시도



라. 추계요소

1) 기준인구

기준인구(Base Population)는 특정년도의 실측 인구로 추계의 기반이 되는 인구이다. 본 추계에서 기준인구는 2009년 7월 1일 기준의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이다. 다문화가족 구성원(결혼이민자, 한국인배우자, 자녀) 각각에 대한 추계는 출신지역과 성별로 실시하므로, 기준인구는 총 12개로 설정된다. 즉, 세 지역(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별 남성결혼이민자와 한국여성배우자, 세 지역별 남성결혼이민자의 자녀(성별), 세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와 한국남성배우자, 세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성별)이다. 전체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후손의 규모와 구조는 이들 12개 세트의 기준인구에 대한 추계결과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인구들을 설정하기 위해 2009년 8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외국인주민조사실태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였다. 동 조사는 시·군·구별로 관련시스템(외국인등록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 의한 서면조사(현지조사 병행) 형태로 실시되었다(행정안전부,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 보도자료, 2009. 8). 조사 대상으로는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불법체류자 포함)으로서 90일 초과 장기체류자(출입국관리법상 등록대상외국인)¹²⁾와 한국국적을 취득한 외국인(혼인귀화자 및 국제결혼가정 자녀 포함)이 포함되었다. 조사는 2009.5.1~5.31(1개월) 간에 실시되었으며, 조사기준일은 2009. 5. 1. 00시이다.

조사결과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재외동포, 기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혼인귀화자, 기타사유 취득자), 외국인주민 자녀(외국인부모의 자녀, 외국인-한국인부모의 자녀, 한국인부모의 자녀)로 구분되어 발표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추계 대상

12)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는 제외

에는 국적미취득 결혼이민자와 혼인귀화자(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합하여 결혼이민자로 부르고 있음)를 그리고 이들의 자녀로는 외국인-한국인부모의 자녀와 결혼이민자의 전배우자 사이의 자녀를 포함한다.

행정안전부 자료는 결혼이민자의 성별로 동북아시아(중국, 중국조선족, 대만, 일본, 몽골),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기타),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미국, 러시아, 기타로 구분되어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추계에서 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은 동북아시아와 기타아시아(동남아시아, 남부아시아, 중앙아시아), 비아시아(미국, 러시아, 기타)로 구분하였다.

〈표 4-1〉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2009.5.1 기준)

(단위: 명)

	남성				여성			
	총계	동북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총계	동북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전체	584,697	326,316	197,652	60,729	522,187	371,541	100,986	49,660
한국국적 미취득	514,009	278,997	176,414	58,598	411,461	290,262	74,278	46,921
- 외국인근로자	386,204	205,918	163,820	16,466	189,453	155,852	22,999	10,602
- 결혼이민자	15,190	10,197	1,890	3,103	110,483	66,356	42,160	1,967
- 유학생	39,031	31,788	5,066	2,177	38,291	33,789	2,916	1,586
- 재외동포	20,841	1,544	69	19,228	22,862	1,728	77	21,057
- 기타	52,743	29,550	5,569	17,624	50,372	32,537	6,126	11,709
한국국적 취득자	15,798	14,640	693	465	57,927	50,068	6,872	987
- 혼인귀화자	2,047	1,559	385	103	39,370	32,724	6,192	454
- 기타사유 취득자	13,751	13,081	308	362	18,557	17,344	680	533
외국인주민자녀(소계)	54,890	32,679	20,545	1,666	52,799	31,211	19,836	1,752
- 외국인부모	2,048	1,792	187	69	2,157	1,921	161	75
- 외국인-한국인부모	45,081	26,078	17,619	1,384	43,404	24,981	16,986	1,437
- 한국인부모	7,761	4,809	2,739	213	7,238	4,309	2,689	240

자료: 행정안전부, 외국인주민조사실태조사, 2009. 5.1.

행정안전부는 결혼이민자를 연령별로 제공하지 않으며, 자녀는 18세까지 만 연령별로 제공하고 있다. 조성법에서 기준인구는 성별 및 연령별 인구를 필요로 하므로, 행정안전부 조사자료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구축한 DB의 생년월일 자료를 적용하였다.¹³⁾ 행정안전부 자료와 이에 근거한 보건복지

가족부 자료 모두 5월 1일자 기준시점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결혼이민자와 배우자 및 자녀들의 연령을 2009년 7월 1일자 기준으로 환산하였다. 다만, 조사기준시점(5월 1일자)과 연앙시점(7월 1일자) 간의 2개월 차이가 존재하므로,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의 경우 외삽법(extrapolation)을 적용하여 보정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자녀의 경우에는 0세 자녀에만 한정하여 2개월간 출생이수에 해당하는 1/6을 추가하였다(연앙시점으로 환산한 0세 인구에 7/6을 곱하여 보정).

〈표 4-2〉 행정안전부 조사결과(국적미취득결혼이민자+혼인귀화자) 기준시점보정

(단위: 명)

기준시점	성별	출신지역			전체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2008.5.1	남성	12,075	2,102	2,525	16,702
	여성	89,704	35,167	2,812	127,683
2009.5.1	남성	11,756	2,275	3,206	17,237
	여성	99,080	48,352	2,421	149,853
2009.7.1	남성	11,703	2,304	3,320	17,326
	여성	100,643	50,550	2,356	153,548

〈표 4-3〉 행정안전부 조사결과(외국인부모 자녀+외국인·한국인부모 자녀) 보정

(단위: 명)

구분		동북	기타	비	소계	총 자녀수
		아시아	아시아	아시아		
2009.5.1 (18세 이하)	남아	27,870	17,806	1,453	47,129	92,690
	여아	26,902	17,147	1,512	45,561	
보정 (자녀성별 기준)	남아	31,372	18,699	1,596	51,667	101,477
	여아	30,176	17,940	1,693	49,810	
보정 (결혼이민자 성별 기준)	남성이민자 자녀	3,194	1,169	1,631	5,994	101477
	여성이민자 자녀	58,354	35,471	1,658	95,482	

13)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는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생년월일을 조사하였다. 동 자료 중 연령구조는 “실동훈·서문희·이삼식의,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 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2009” 수록 자료를 이용하였다.

2) 출산력(fertility)

결혼이민자의 출산력은 한국인 평균 출산력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주된 이유로는 결혼이민자가 성장한 출신국가의 문화적 배경과 사회경제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문화는 개인의 출산행태(behavior)에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사회발전 속도가 더디거나 종교적 영향이 큰 사회일수록 국민의 다출산 성향이 강하다. 중국과 같이 출산억제정책이 오랫동안 지속된 사회에서 소출산 성향이 강하다. 현실적으로 국가마다 혹은 지역(region)마다 출산율의 차이가 존재한다. 동북아시아, 유럽, 북미, 오세아니아 등에 위치한 국가들의 출산력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에 위치한 국가들의 출산력은 상대적으로 높다. 유럽국가들 사이에서도 국가마다 출산력이 다르다. 남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들의 출산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¹⁴⁾

그렇다고 결혼이민자들이 출신국가의 출산행태를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 주된 이유로는 목적지국가의 문화나 사회경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한국인 남편이나 가족의 특성은 결혼이민자의 출산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¹⁵⁾ 또한, 결혼이민자의 이동선택성

14) 일반적으로 국제이동자의 출산행태는 목적지국가(destination country)나 출발지국가(origin country)의 인구가 다르다(UN, 1956).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의 출산율(합계 출산율)은 2003년 기준으로 2.0이나, 인종별로는 백인이 1.7로 히스패닉 3.0, 흑인 2.4, 멕시코인 3.51, 중국인 2.26, 한국인 1.57 등으로 한국인을 제외하면 가장 낮다. 미국 이민 주요 10개국 여성의 출산율은 평균 2.86명으로 출신국가의 출산율 평균(2.32명)보다 높게 나타난다. 영국의 경우, 1996년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은 인도인 2.21,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인 각각 4.90으로 영국인의 1.67에 비해 아주 높다. 스위스의 경우에는 1997년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이 옛 유고슬라비아인 2.41, 터키인 1.91 등으로 스위스인의 1.34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독일 거주 터키인의 1996년 합계출산율이 2.40으로 독일인의 1.3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이탈리아의 경우에도 1999년 이민자의 합계출산율이 모로코인 2.14, 알바니아인 2.60, 튀니지인 3.30, 이집트인 3.40 등으로 이탈리아인의 1.26보다 훨씬 높게 나타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OECD국가의 경우 이민자의 출산력이 비이민자의 출산력보다 높으며, 이는 이민자가 이민 이전에 속해 있었던 사회의 출산행태를 어느 정도 따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http://migrationinformation.org/Resources>, http://en.wikipedia.org/wiki/Main_Page)

(selectivity)도 결혼이민자의 출산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결국, 결혼이민자의 출산행태는 출신국가나 목적지국가 중 어느 한 국가의 것을 따르기보다 다소 특수성을 보일 수 있다. 결혼행태의 특수성은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부인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으며, 그 이유로는 외국인남성과 결혼하는 한국인배우자의 선택성(selectivity)이 존재하는데다가 한국인부인의 출산행태가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의 문화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여성결혼이민자나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배우자 본인의 출산력을 측정하여 추계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을 추계단위인 세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인구추계에서 출산력 변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기간출산력(period fertility), 코호트출산력(cohort fertility)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기간출산력방법은 최근의 연령별출산율 수준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거나 일정한 변화율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가정하는 방법이다. 본 추계에서는 다문화가족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간유배출산율(이하에서는 “유배출산율”로 칭함)을 적용하였다. 주된 이유로 출산율 산정(출생아수 ÷ 여성수)시 분모가 되는 여성결혼이민자 또는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부인 모두는 기혼여성으로서, 일반적인 출산율 산정시에서와 달리 분모에 미혼여성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 추계에서 다문화가족의 유배출산율은 모(母)인 여성결혼이민자 또는 한국인부인의 연령별 출생아수(2008. 5. 1~2009. 4. 30 기간 출생한 자녀수)를 해당연령의 여성인구(모두 기혼여성으로 0세 자녀수 산정시 적용된 기간의 중간시점인 2008. 11. 1일자를 기준으로 연령을 환산하여 적용)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15) 본 연구에서 실시한 사례조사에 의하면, 일부 국제결혼 이주여성(한족, 필리핀 등 출신)들은 현재 1자녀에 만족하며,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추가 출산을 원치 않고 있다. 다른 사례로 필리핀이나 베트남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기를 희망하나, 남편의 나이, 자녀양육비용 문제 등으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많은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재혼인 한국남성은 기존자녀의 나이가 어리면 빨리 출산하고자 하나 기존자녀의 나이가 많으면 보류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추정 결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합계유배우출산율은 3.52명이며, 지역별로는 동북아시아 2.55명, 기타아시아 4.07명, 비아시아 1.8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별 합계출산율이 유럽 등 비아시아,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순으로 나타는 것과 일치한다.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배우자의 합계유배우출산율은 전체적으로 1.96명이며, 지역별로는 동북아시아 1.78명, 기타아시아 2.01명, 비아시아 2.24명으로 각각 나타났다. 남성결혼이민자(한국인부인)의 출산율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율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비아시아 출신의 경우에는 남성결혼이민자(한국인여성)의 출산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으며, 동일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율보다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본 추계에서는 2008년 다문화가족의 출산율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4-4〉 여성결혼이민자 및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부인의 유배우출산율

(단위 : 명)

모의 연령	남성결혼이민자의 한국인부인				여성결혼이민자			
	전체	동북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전체	동북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15-19	0.0000	0.0000	0.0000	0.0000	0.1687	0.0519	0.1812	0.0588
20-24	0.0943	0.1140	0.0816	0.0612	0.2259	0.1738	0.2394	0.0889
25-29	0.1121	0.1063	0.1077	0.1203	0.1640	0.1483	0.1873	0.1015
30-34	0.1113	0.0886	0.0904	0.1498	0.0933	0.0882	0.1115	0.0731
35-39	0.0518	0.0343	0.0684	0.0790	0.0402	0.0377	0.0560	0.0339
40-44	0.0182	0.0119	0.0313	0.0297	0.0113	0.0095	0.0298	0.0123
45-49	0.0050	0.0009	0.0235	0.0072	0.0014	0.0011	0.0099	0.0000
TAMFR	1.96	1.78	2.01	2.24	3.52	2.55	4.07	1.84

주: 연령별유배우출산율(AMFR)=모 연령별 출생아수/해당 연령 유배우여성수
TAMFR(합계 유배우출산율)은 $\sum AMFR \times 5$ 로 산출함.

장기간 추계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후손들을 추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녀세대의 출산율도 추정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세대 대부분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다는 점에서 한국인 평균 출산율을 따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국인 평균 출산율로 2008년 연령별출산율이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

으로 가정한다. 결혼이민자나 한국인배우자와 달리 자녀세대의 출산력은 기간출산율로 측정하여야 하며, 그 이유로 자녀세대는 미혼인구와 기혼인구로 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녀세대 중 남성의 경우에는 미래 배우자의 연령구조를 쉽게 예측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남성연령별출산율을 측정하여 적용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원자료(raw data)를 이용하여 2008년 남성연령별출산율을 산정하였다.

〈표 4-5〉 2008년 여성출산율과 남성출산율

(단위 : 명)

	한국여성출산율	한국남성출산율
15-19	0.0017	0.0003
20-24	0.0182	0.0042
25-29	0.0856	0.0410
30-34	0.1015	0.1042
35-39	0.0265	0.0570
40-44	0.0032	0.0128
45-49	0.0002	0.0025
TAMFR	1.19	1.11

주: 자료는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결과이며, 이 중 여성출산율은 통계청 보도자료 그리고 남성출산율은 원자료를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출생이수에 사망확률을 적용하여 0세 인구를 산정하는데, 그 전에 출생성비를 적용하여 남녀로 구분한다. 출생성비는 문화, 의료적인 조치 정도(개인의 남아/여아 선호도와 법적 규제수준 등), 유전적인 요인 등에 의해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추계단위인 지역(국가군)에서 국가별 출생성비의 평균은 자연상태인 105~106 수준에 접근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와 한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계속 체류하면서 한국문화의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다문화가족의 출생성비는 한국인의 출생성비 추이를 따를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한국인의 출생성비 향후 추이로는 통계청에서 2006년 인구추계시 적용하였던 출생성비 가정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요컨대, 다문화가족의 출생성비는 2009년 107.5에서 2026년에 자연상태인 106.0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이후에는 동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표 4-6〉 출생성비 변동 전망

(단위: 여아 100명당 남아수)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연도	출생성비
2009	107.52	2015	106.80	2021	106.30
2010	108.16	2016	106.70	2022	106.39
2011	107.25	2017	106.62	2023	106.15
2012	107.71	2018	106.53	2024	106.19
2013	107.01	2019	106.44	2025	106.03
2014	107.66	2020	106.36	2026	105.9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결과』, 2006.

3) 사망력

결혼이민자의 사망력은 출신국가에서 노출되어 있는 환경, 이들의 이동 선택적인 특성, 결혼 후 한국사회에서 노출되어 있는 환경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결혼이민자들이 출신국가에서 노출되어 있는 환경으로는 생태적인 환경(기후, 수질 등), 보건의료적 환경(영양상태, 질병력 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포함한다. 결혼이민자의 이동선택성(selectivity)으로는 출신지역, 학력수준, 경제활동기간 등이 포함된다. 결혼이민자들이 결혼 후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도 이들의 사망력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민자의 후손들도 부모의 유전적 요인, 생활행태(습관), 경제사회적 수준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한국인 평균 사망력과 차이가 존재할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사망력을 별도로 측정하는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 결혼이민자와 가족의 사망력을 별도로 추정하는 데에도 자료나 시간 상 한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이민자와 한국인배우자 및 후손들의 사망력으로 한국인의 평균 사망력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한다. 결혼이민자와 후손들이 한국사회에서의 장기체류하는 과정을 통해 한국인 평균 사망력에 근접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인 사망력으로는 통계청이 2006년 인구추계 가정으로 적용한 성별·

연령별 사망확률(생잔률)을 이용하였다. 통계청에서는 Lee-Carter모형을 이용하여 2006~2050년 사망력을 추정한 후 보간법을 이용하여 연도별 사망확률을 추정하였다(통계청, 2006). Lee-Carter모형은 연령간 사망패턴 및 연령별 사망률 변화(속도 등)에 대한 분석을 함께 고려하고 있으므로, 미국,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사망률 예측에 원용하고 하고 있다. Lee-Carter 모형은 적은 모수를 이용한 간단한 모형이기 때문에 연령별 사망률의 변화가 일정하다는 가정을 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추정한 한국인의 평균수명은 <표 4-7>과 같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에 대한 추계에서는 평균수명 추이에 따라 성별·연령별 사망확률(생잔률)을 적용하였다.

<표 4-7> 평균수명 변동 전망

(단위: 세)

연도	남자	여자	연도	남자	여자
2010	76.0	82.7	2035	80.3	86.7
2015	76.9	83.6	2040	81.1	87.4
2020	77.8	84.5	2045	81.8	88.0
2025	78.7	85.3	2050	82.5	88.6
2030	79.5	86.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마. 국제이동력

본 추계에서 도입하고 있는 조성법의 한 구성요소로서 국제이동력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주 대상이 되는 결혼이민은 혼인관계에 의한 국제이동을 통해 발생한다. 즉, 다문화가족은 국제결혼을 통해 새로이 형성되거나 이혼을 통해 해체된다. 다문화가족은 한국 내에서의 체류를 전제로 하고 있다. 관할기관에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국제결혼일지라도 당사자들이 국내에 체류하지 않는다면 다문화가족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에서 체류하지 않은 부부가 이혼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다문화가족의 이혼으로 간주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족 추계에서 이입인구는 결혼 후에 국내에서 체류하는 결혼이민자이며, 이출인구는 국내

에서 결혼생활을 하다가 이혼 후에 출신국가로 돌아가는 결혼이민자가 해당된다.

현실적으로 국제결혼 및 이들의 이혼에 관한 추이는 통계청에서 지자체의 신고접수건수를 이용하여 작성한 인구동태조사 결과에 의해서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에 관한 통계에는 국제결혼 후에 국내에서 체류하지 않은 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통계청의 이혼 통계자료만으로 국내체류 결혼이민자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 어느 정도 출신국가로 돌아가는지를 측정할 수 없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계청의 국제결혼자와 국제이혼자가 결혼 혹은 이혼 후 국내에서 체류하는 정도(이하 “잔존률”이라고 칭함)를 가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잔존률은 여성결혼이민자나 한국여성배우자의 출산수준이 0세 인구규모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요컨대, 시뮬레이션(simulation)을 통해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 남녀인구에 잔존률을 적용하여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배우자)를 산정하고, 이들 이민자(또는 배우자)에 출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간 출생이수가 2009년도 0세 인구와 어느 정도 일치하면 그 잔존률을 가정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잔존률 추정작업에는 최근의 경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결과(원자료 활용)로서 2006~2008년의 3년간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의 평균건수(성별 및 연령 각 세별)를 이용하였다(부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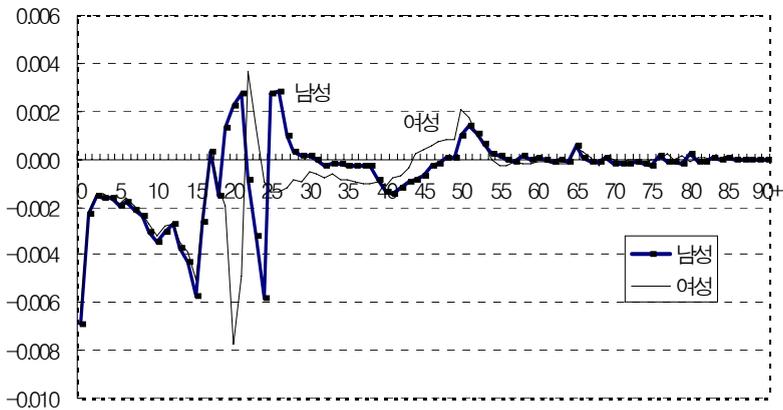
시뮬레이션 결과 최종적으로 추정된 잔존률은 <표 4-8>에 제시되었다. 아시아(동북, 기타) 출신 외국남성은 혼인 후에 50%수준이 국내에 체류하며, 아시아 이외 지역 출신의 외국남성의 경우에는 20%만이 체류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아시아(동북, 기타) 출신 외국여성은 결혼 후 90%가 잔존하며, 아시아 이외지역 출신 외국여성의 경우에는 50%만이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혼의 경우에는 출신지역과 상관없이 10%만이 국내에 체류하고 나머지 90%는 출신국가로 돌아갈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잔존률 가정은 2050년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¹⁶⁾

〈표 4-8〉 국제결혼 및 국제이혼의 잔존률 가정

구분	국제결혼남성			국제결혼여성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결혼후잔존률	0.50	0.50	0.20	0.90	0.90	0.50
이혼후잔존률	0.10	0.10	0.10	0.10	0.10	0.10

한편, 결혼이민자의 후손들은 국제결혼이나 국제이혼 이외의 목적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가질 것이다. 이들 후손의 국제이동패턴은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인의 일반적인 국제이동력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후손들의 국제이동력 가정으로는 통계청의 2006년 인구추계 시 설정하였던 가정인 2000~2005년간 성별 연령별 국제순이동률의 평균치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그림 4-2).

[그림 4-2] 2000~2005 평균 국제순이동률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 16) 일반적으로 국제이동은 추계대상 국가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의 경제상황, 관련법 및 행정절차 등의 변화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향후 변동을 예측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시기별 변동 가정을 달리 하였을 경우 오차범위가 아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며, Shryock and Siegel(1976)과 UN(1956)도 불확실한 방법에 의한 가정을 가능한 피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통계청뿐만 아니라 대부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국제이동 가정 방법은 지난 5년간 변화율이 향후에도 유지한다는 것이다.

2. 추계 결과

가. 다문화가족 규모

1) 결혼이민자와 후손의 규모 전망

결혼이민자(결혼이민1세)의 규모는 2009년(이하 7월 1일자 연앙기준) 171천명으로 추정되며, 이 규모는 2050년 983천명으로 5.7배 증가할 전망이다.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 2009년 17천명에서 2050년 51천명으로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154천명에서 932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동기간 남성결혼이민자가 2.9배 증가하는데 반해, 여성결혼이민자는 6.1배 증가하여 증가속도가 더 빠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증가속도의 차이로 인해 전체 결혼이민자 중 여성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89.9%에서 더욱 상승하여 2050년에는 94.8%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별로는 동북아시아, 비아시아, 기타아시아 순으로 규모가 크며, 이러한 구조는 2050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출신의 남성결혼이민자는 2009~2050년 간 2.9배 증가하고, 나머지 지역 출신의 경우에는 각 3.1배 증가하여 그 폭이 다소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결혼이민자 중 출신지역별 남성결혼이민자의 비중도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별로는 남성결혼이민자와 달리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순으로 크며, 이러한 순위는 2050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는 2009년 101천명에서 2050년 493천명으로 4.9배 증가할 전망이다. 기타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는 더욱 빠르게 증가하여 2009~2050년 기간 동안 8.4배 증가할 전망이다. 비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도 빠르게 증가하여 동기간 6.8배로 많아질 것이나, 그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을 전망이다. 전체 결혼이민자 중 동북아시아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으나, 그 비중은

2009년 58.9%에서 2050년 50.2%로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반면, 기타아시아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비중은 2009년 29.6%에서 2050년 43.0%로 급격하게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4-9〉 결혼이민1세(결혼이민자) 변동 전망

(단위: 명, %)

	2009	2010	2020	2030	2040	2050
규모(명)						
결혼이민자 전체	170,874	191,814	399,889	604,440	801,628	982,732
남성결혼이민자	17,326	18,294	27,737	36,596	44,524	50,943
동북아시아	11,703	12,334	18,475	24,197	29,277	33,361
기타아시아	2,304	2,445	3,837	5,155	6,328	7,237
비아시아	3,320	3,515	5,426	7,244	8,919	10,345
여성결혼이민자	153,548	173,519	372,152	567,844	757,105	931,789
동북아시아	100,643	111,055	214,340	315,217	410,547	493,311
기타아시아	50,550	59,765	151,690	243,126	333,751	422,501
비아시아	2,356	2,700	6,122	9,501	12,807	15,977
구성비(%)						
결혼이민자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결혼이민자	10.1	9.5	6.9	6.1	5.6	5.2
동북아시아	6.8	6.4	4.6	4.0	3.7	3.4
기타아시아	1.3	1.3	1.0	0.9	0.8	0.7
비아시아	1.9	1.8	1.4	1.2	1.1	1.1
여성결혼이민자	89.9	90.5	93.1	93.9	94.4	94.8
동북아시아	58.9	57.9	53.6	52.2	51.2	50.2
기타아시아	29.6	31.2	37.9	40.2	41.6	43.0
비아시아	1.4	1.4	1.5	1.6	1.6	1.6

결혼이민자의 증가에 따라 이들의 자녀(결혼이민2세)는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2009년 101천명에 불과하였던 결혼이민2세는 2050년 986천명으로 9.7배나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부모세대가 5.7배 증가하는 것에 비해 약 2배 정도 높다. 결혼이민2세는 결혼이민자의 규모와 출산력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이 남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보다 훨씬 많으며, 그 비중도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으로 남성결혼이민자의 2세는 동 기간 6천명에서 35천명으로 5.9배 증가하는데 반해, 여

성결혼이민자의 2세는 95천명에서 10배인 951천명으로 증가할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규모와 출산력은 남녀별로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출신지역별로도 큰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남성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별 자녀수는 동북아시아, 비아시아, 기타아시아 순으로 많으며, 특히 기타아시아 출신의 결혼이민2세가 상대적으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남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유로,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별 자녀수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별 2세의 규모는 동북아시아의 경우 2009년 58천명에서 2050년 276천명으로 4.7배 증가하는 반면, 기타아시아 출신의 경우에는 35천명에서 665천명으로 무려 18.7배나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차이는 다문화가족 출현의 초창기에 동북아시아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이후 기타아시아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기타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이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산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비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출신지역별 결혼이민여성들의 출산력은 앞서 분석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성별 및 출신지역별 결혼이민2세의 증가 추이가 다르게 추정되어, 결과적으로 전체 결혼이민2세의 구성도 현재와 상이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으로 2009년 전체 결혼이민2세 중에서 남성결혼이민2세의 비중은 5.9%, 여성결혼이민2세의 비중은 94.1%이다. 향후 남성결혼이민2세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여성결혼이민2세의 비중은 높아질 전망이다. 2050년 남성결혼이민2세의 비중은 3.6%, 여성결혼이민2세의 비중은 94.6%로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출신지역별로는 전체 결혼이민2세 중 동북아시아 여성이민2세의 비중은 2009년 57.5%에서 2050년 28.0%로 급격하게 줄어들며, 대신 기타아시아 이민여성2세의 비중은 35.0%에서 67.4%로 높아질 전망이다. 나머지 출신지역 결혼이민2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으며, 변화도 크지 않을 전망이다.

〈표 4-10〉 결혼이민2세(결혼이민자의 자녀) 변동 전망

(단위: 명, %)

	2009	2010	2020	2030	2040	2050
규모(명)						
결혼이민2세 전체	101,477	117,487	339,029	591,237	810,155	985,881
남성결혼이민2세	5,994	6,639	14,543	22,858	29,744	35,339
동북아시아	3,194	3,463	7,462	12,105	16,093	19,259
기타아시아	1,169	1,274	2,301	3,143	3,780	4,352
비아시아	1,631	1,901	4,779	7,609	9,870	11,729
여성결혼이민2세	95,482	110,848	324,486	568,379	780,411	950,542
동북아시아	58,354	63,071	122,513	182,591	233,331	275,793
기타아시아	35,471	45,994	198,185	379,535	538,629	664,500
비아시아	1,658	1,783	3,788	6,254	8,452	10,249
구성비(%)						
결혼이민2세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결혼이민2세	5.9	5.7	4.3	3.9	3.7	3.6
동북아시아	3.1	2.9	2.2	2.0	2.0	2.0
기타아시아	1.2	1.1	0.7	0.5	0.5	0.4
비아시아	1.6	1.6	1.4	1.3	1.2	1.2
여성결혼이민2세	94.1	94.3	95.7	96.1	96.3	96.4
동북아시아	57.5	53.7	36.1	30.9	28.8	28.0
기타아시아	35.0	39.1	58.5	64.2	66.5	67.4
비아시아	1.6	1.5	1.1	1.1	1.0	1.0

결혼이민자의 손자녀들 즉, 결혼이민3세는 다문화가족의 규모와 출산력 뿐만 아니라 이주시기와도 연관성이 높다. 예컨대, 보다 오래전에 결혼이주해온 집단일수록 결혼이민3세의 규모도 클 것이다. 우선 결혼이민3세는 2009년 262명에 불과하나 2050년에는 176천명으로 특히, 2030년대 이후에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결혼이민2세의 특성과 맞물려, 남성결혼이민3세의 규모보다 여성결혼이민3세의 규모가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2050년 기준으로 남성결혼이민3세는 1만명 이하인 반면, 여성결혼이민3세는 188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여성결혼이민3세 중에서도 기타아시아 출신의 비중이 2009년 6.4%에서 2050년 58.8%로 급격하게 상승하고, 대신 기타아시아 출신의 비중은 동 기간에 76.7%에서 35.9%로 낮아질 전망이다.

〈표 4-11〉 결혼이민3세(결혼이민자 손자녀) 변동 전망

	(단위: 명, %)					
	2009	2010	2020	2030	2040	2050
규모(명)						
전체	262	541	4,498	19,479	75,327	196,273
남성결혼이민3세	37	74	459	1,307	3,824	8,235
동북아시아	31	63	365	832	1,959	4,170
기타아시아	1	3	43	234	724	1,324
비아시아	5	9	51	240	1,141	2,742
여성결혼이민3세	225	467	4,039	18,172	71,503	188,038
동북아시아	201	416	3,520	13,890	36,922	70,401
기타아시아	17	36	402	3,892	33,524	115,446
비아시아	7	15	117	390	1,056	2,191
구성비(%)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남성결혼이민3세	14.2	13.8	10.2	6.7	5.1	4.2
동북아시아	12.0	11.6	8.1	4.3	2.6	2.1
기타아시아	0.5	0.5	0.9	1.2	1.0	0.7
비아시아	1.7	1.7	1.1	1.2	1.5	1.4
여성결혼이민3세	85.8	86.2	89.8	93.3	94.9	95.8
동북아시아	76.7	76.9	78.3	71.3	49.0	35.9
기타아시아	6.4	6.6	8.9	20.0	44.5	58.8
비아시아	2.7	2.7	2.6	2.0	1.4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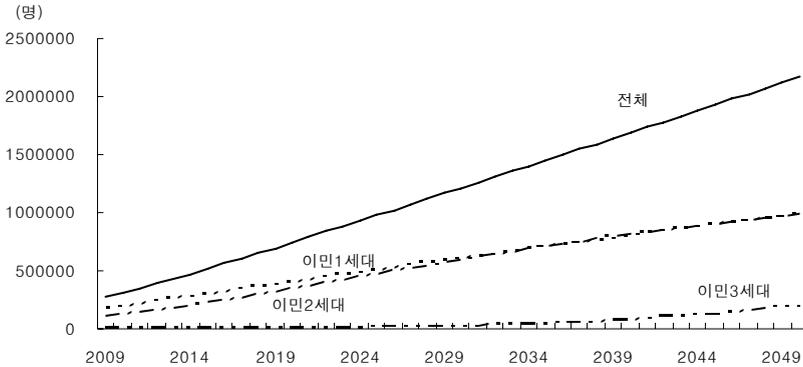
전체적으로 결혼이민자와 후손의 규모는 2009년(이하 연앙 기준) 273천 명에서 2050년 2,165천명으로 7.9배 증가할 전망이다. 결혼이민자보다 결혼이민2세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결혼이민3세의 규모는 결혼이민2세의 결혼연령층 진입에 따라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결혼이민3세의 증가율은 결혼이민자나 결혼이민2세보다 높으나, 결혼이민1세가 비교적 젊은 편으로 2세인 자녀의 결혼 및 출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2009년에 결혼이민자(1세)의 비중이 62.7%로 결혼이민2세 37.2%와 결혼이민3세 0.1%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나나, 2034년부터는 결혼이민2세가 결혼이민자의 규모를 초과할 전망이다. 2050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1세) 45.4%, 결혼이민2세 45.5%, 결혼이민3세 9.1%로 구성될 전망이다.

〈표 4-12〉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세대별 구성 전망

(단위: 명, %)

	결혼이민자 및 후손 규모				구성비(%)			
	계	이민1세	이민2세	이민3세	계	이민1세	이민2세	이민3세
2009	272,613	170,874	101,477	262	100.0	62.7	37.2	0.1
2010	309,841	191,814	117,487	541	100.0	61.9	37.9	0.2
2020	743,416	399,889	339,029	4,498	100.0	53.8	45.6	0.6
2030	1,215,156	604,440	591,237	19,479	100.0	49.7	48.7	1.6
2040	1,687,110	801,628	810,155	75,327	100.0	47.5	48.0	4.5
2050	2,164,886	982,732	985,881	196,273	100.0	45.4	45.5	9.1

[그림 4-3]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세대별 구성 전망



출신지역은 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가 위치한 지역을 의미하며, 결혼이민자의 후손도 결혼이민1세의 출신국가에 따라 지역을 배정하였다. 결혼이민자의 성별 구분없이 출신지역별 결혼이민인구(남녀 결혼이민자 모두와 그 후손)는 2009년 현재 동북아시아 출신이 174천명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기타아시아 출신 90천명, 아시아 이외지역 출신 10천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아시아 출신의 경우 결혼이민자(특히 여성)의 급격한 증가와 높은 출산력으로 인하여 2050년에 1,215명으로 증가하여 동북아시아 출신 896천명을 상회할 전망이다. 아시아 이외 지역 출신의 결혼이민인구는 2050년 53천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나, 그 규모는 기타아시아나 동북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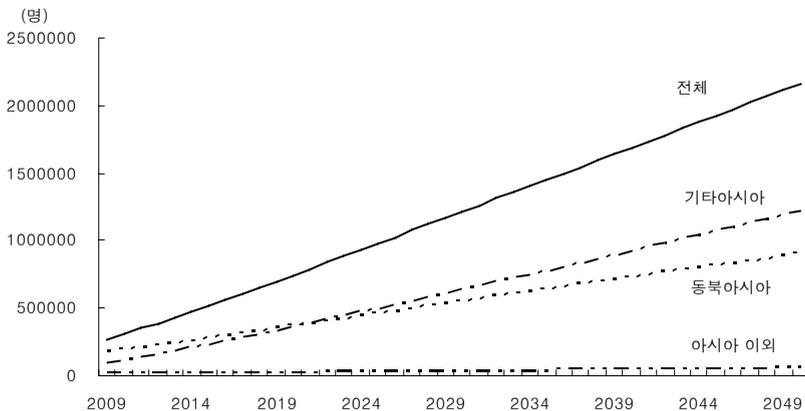
아 출신에 비해 아주 적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전체 결혼이민인구(남녀 결혼이민자 모두와 그 후손) 대비 출신지역별 결혼이민인구 비중은 2009년 동북아시아 63.9%, 기타아시아 32.8%, 아시아이외 지역 3.3%이나, 2050년에는 기타아시아 41.4%, 동북아시아 56.1%, 아시아이외 지역 2.5%로 다른 분포를 보일 전망이다.

〈표 4-13〉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출신지역별 구성 전망

(단위: 명, %)

구분	규모(명)				구성비(%)			
	전체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전체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비아시아
2009	272,613	174,126	89,511	8,976	100.0	63.9	32.8	3.3
2010	309,841	190,403	109,516	9,922	100.0	61.5	35.3	3.2
2015	516,246	276,480	224,823	14,943	100.0	53.6	43.5	2.9
2020	743,416	366,675	356,458	20,283	100.0	49.3	47.9	2.7
2025	978,174	457,614	494,802	25,758	100.0	46.8	50.6	2.6
2030	1,215,156	548,833	635,085	31,239	100.0	45.2	52.3	2.6
2035	1,451,003	639,399	774,882	36,722	100.0	44.1	53.4	2.5
2040	1,687,110	728,129	916,737	42,245	100.0	43.2	54.3	2.5
2045	1,926,182	814,279	1,064,130	47,773	100.0	42.3	55.2	2.5
2050	2,164,886	896,295	1,215,360	53,231	100.0	41.4	56.1	2.5

〔그림 4-4〕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출신지역별 구성 전망



세대 구분없이 결혼이민인구(후손 포함)의 규모는 여성결혼이민자 기준으로 2009년 249천명에서 2050년 2,070천명으로, 그리고 남성결혼이민자 기준으로는 동 기간 23천명에서 95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결혼이민인구(후손 포함) 중 여성결혼이민자 출신이 2009년 91.4%에서 2050년 95.6%로 더욱 높아지는 반면, 남성결혼이민자 출신은 8.6%에서 4.4%로 낮아질 전망이다.

결혼이민자의 성별 및 출신지역별로 결혼이민인구(후손 포함)를 살펴보면, 동북아시아 출신 남성결혼이민인구(후손 포함)는 2009년 15천명에서 2050년 57천명, 기타아시아 출신의 경우 동 기간 3천명에서 13천명, 그리고 아시아 이외 지역 출신의 경우 5천명에서 25천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남성결혼이민자 출신지역별로 결혼이민인구의 규모는 모두 증가하나 비중은 오히려 감소할 전망이다. 즉, 총 결혼이민인구(후손 포함) 중 동북아시아 남성결혼이민자 출신의 비율은 2009년 5.5%에서 2050년 2.6%로, 기타아시아 남성결혼이민자 출신의 경우 1.3%에서 0.6%로, 그리고 아시아 이외 남성결혼이민자 출신의 경우 1.8%에서 1.1%로 각각 낮아질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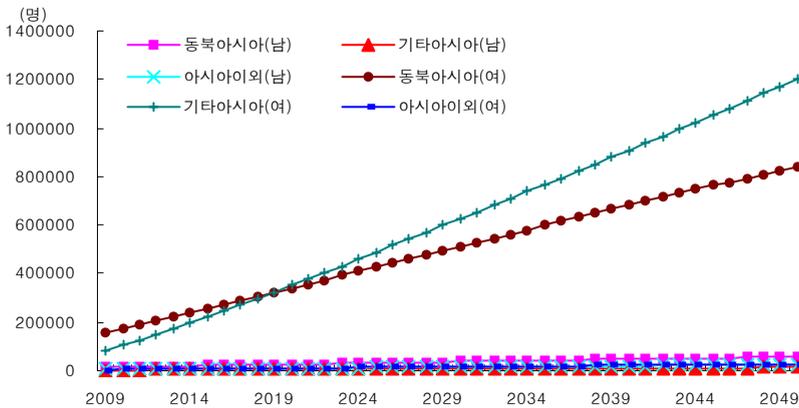
여성결혼이민자의 기준으로 결혼이민인구(후손 포함)는 동북아시아 출신의 경우 2009년 159천명에서 2050년 840천명으로, 기타아시아 출신의 경우 동 기간 86천명에서 1,202천명으로, 그리고 아시아이외 지역 출신의 경우 4천명에서 28천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기타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후손의 증가율이 더 높아, 출신지역의 분포는 2009년 동북아시아, 기타아시아, 아시아 이외 지역 순에서 2050년에는 기타아시아, 동북아시아, 아시아 이외 지역 순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전체 결혼이민인구(후손 포함) 중 여성 출신지역별 분포는 2009년 동북아시아 58.4%, 기타아시아 31.6%, 아시아 이외 지역 1.5%이나, 2050년에는 기타아시아 55.5%, 동북아시아 38.8%, 아시아 이외 지역 1.3%로 달라질 전망이다.

〈표 4-14〉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부모성별 및 출신지역별 구성 전망

(단위: 명, %)

	남성결혼이민자 출신지역 기준					여성결혼이민자 출신지역 기준			
	전체	소계	동북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소계	동북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규모									
2009	272,613	23,358	14,929	3,474	4,955	249,255	159,197	86,037	4,021
2010	309,841	25,008	15,860	3,722	5,425	284,834	174,542	105,794	4,497
2015	516,246	33,673	20,892	4,961	7,820	482,573	255,589	219,861	7,123
2020	743,416	42,739	26,302	6,181	10,256	700,677	340,374	350,277	10,027
2025	978,174	51,830	31,771	7,368	12,691	926,345	425,843	487,434	13,068
2030	1,215,156	60,761	37,135	8,533	15,094	1,154,396	511,698	626,552	16,145
2035	1,451,003	69,497	42,326	9,687	17,485	1,381,506	597,073	765,195	19,237
2040	1,687,110	78,092	47,329	10,833	19,930	1,609,019	680,800	905,904	22,315
2045	1,926,182	86,490	52,164	11,925	22,402	1,839,692	762,115	1,052,205	25,372
2050	2,164,886	94,518	56,790	12,913	24,815	2,070,368	839,505	1,202,447	28,416
구성비									
2009	100.0	8.6	5.5	1.3	1.8	91.4	58.4	31.6	1.5
2010	100.0	8.1	5.1	1.2	1.8	91.9	56.3	34.1	1.5
2015	100.0	6.5	4.0	1.0	1.5	93.5	49.5	42.6	1.4
2020	100.0	5.7	3.5	0.8	1.4	94.3	45.8	47.1	1.3
2025	100.0	5.3	3.2	0.8	1.3	94.7	43.5	49.8	1.3
2030	100.0	5.0	3.1	0.7	1.2	95.0	42.1	51.6	1.3
2035	100.0	4.8	2.9	0.7	1.2	95.2	41.1	52.7	1.3
2040	100.0	4.6	2.8	0.6	1.2	95.4	40.4	53.7	1.3
2045	100.0	4.5	2.7	0.6	1.2	95.5	39.6	54.6	1.3
2050	100.0	4.4	2.6	0.6	1.1	95.6	38.8	55.5	1.3

〔그림 4-5〕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부모성별 및 출신지역별 구성 전망



2) 결혼이민자와 후손의 총인구 기여도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 + 후손)가 총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해보기로 한다. 이러한 비율은 총인구 변동에 대한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와 후손)의 기여도로 간주할 수 있다. 즉, 연도별로 결혼이민인구가 총인구의 규모를 결정하는 데에 대한 기여 정도로, 결혼이민인구가 없다면 기여도(비율)만큼 총인구는 줄어들 것임을 의미한다.

$$\begin{aligned} \text{결혼이민기여도} &= \frac{\text{결혼이민포함총인구} - \text{결혼이민제외총인구}}{\text{결혼이민포함총인구}} \times 100(\%) \\ &= \frac{\text{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text{결혼이민포함총인구}} \times 100(\%) \end{aligned}$$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비율은 2009년 0.56%에서 2015년 1.05%, 2025년 1.99%, 2035년 3.04%, 2050년 5.11% 등으로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다. 즉, 2050년경에 우리나라 인구의 1/20 정도가 국제결혼이민자 혹은 그 후손으로 구성될 것이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8년 4,869만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50년 4,234만명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결혼이민자 및 그 후손들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기여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결혼이민 세대별로 총인구 대비 비율을 보면, 결혼이민1세의 경우 2009년 0.35%에서 2050년 2.32%로, 결혼이민2세의 경우 0.21%에서 2.33%, 결혼이민3세의 경우 0.00%에서 0.46%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출신지역별로 결혼이민자와 후손들이 총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동북아시아 출신의 경우 2009년 0.36%에서 2050년 2.12%로 높아질 전망이다. 기타아시아 출신의 경우 동 기간 0.18%에서 2.87%로 높아져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시아 이외 지역 출신의 총인구 대비 비율은 2009년 0.02%에서 2050년 0.13%로 높아져,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총인구 중 결혼이민자 및 후손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지리적 근접성 등을 이유로 아시아지역 출신의 결혼이민인구 비중이 특히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총인구 중 아시아 출신의 결혼이민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0.54%에 불과하나, 2050년에는 5.0%를 차지할 전망이다.

결혼이민자의 성별로 보면, 기타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및 후손들이 총 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09년 0.18%에서 2050년 2.84%로 높아지고,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후손의 비율은 동 기간 0.33%에서 1.98%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외 결혼이민자의 성별 및 출신지역별 규모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미세할 것이다. 즉, 출신지역별 기여도는 여성결혼이민자(기타아시아, 동북아시아)의 경우 높으며, 여성결혼이민자 중 비아시아권 출신과 남성결혼이민자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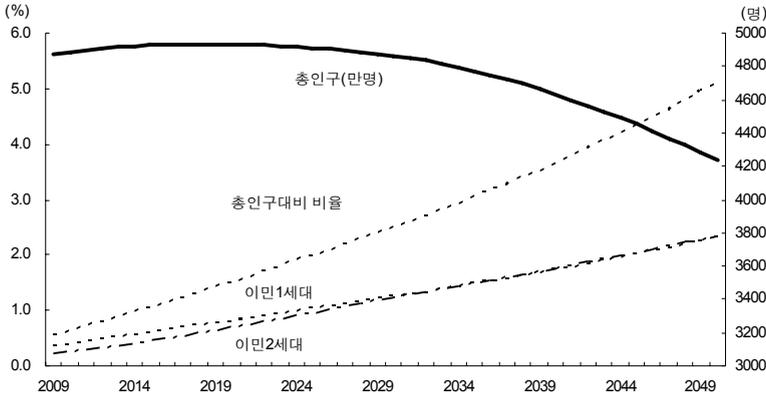
〈표 4-15〉 총인구대비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비율(총인구 규모 기여도) 전망

(단위: 만명, %)

	총 인구 (만명)	결혼 이민 인구 (후손 포함)	결혼이민 세대별			결혼이민자 출신지역			결혼이민자 성 및 출신지역					
			이민 1세	이민 2세	이민 3세	동북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남성결혼이민인구 (후손 포함)			여성결혼이민인구 (후손 포함)		
									동북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동북 아시아	기타 아시아	비 아시아
2009	4,875	0.56	0.35	0.21	0.00	0.36	0.18	0.02	0.03	0.01	0.01	0.33	0.18	0.01
2010	4,887	0.63	0.39	0.24	0.00	0.39	0.22	0.02	0.03	0.01	0.01	0.36	0.22	0.01
2015	4,928	1.05	0.60	0.44	0.00	0.56	0.46	0.03	0.04	0.01	0.02	0.52	0.45	0.01
2020	4,933	1.51	0.81	0.69	0.01	0.74	0.72	0.04	0.05	0.01	0.02	0.69	0.71	0.02
2025	4,911	1.99	1.02	0.95	0.02	0.93	1.01	0.05	0.06	0.02	0.03	0.87	0.99	0.03
2030	4,863	2.50	1.24	1.22	0.04	1.13	1.31	0.06	0.08	0.02	0.03	1.05	1.29	0.03
2035	4,773	3.04	1.48	1.48	0.08	1.34	1.62	0.08	0.09	0.02	0.04	1.25	1.60	0.04
2040	4,634	3.64	1.73	1.75	0.16	1.57	1.98	0.09	0.10	0.02	0.04	1.47	1.95	0.05
2045	4,452	4.33	2.01	2.03	0.29	1.83	2.39	0.11	0.12	0.03	0.05	1.71	2.36	0.06
2050	4,234	5.11	2.32	2.33	0.46	2.12	2.87	0.13	0.13	0.03	0.06	1.98	2.84	0.07

주: 결혼이민기여도 = (결혼이민인구 포함 총인구 - 결혼이민인구 제외 총인구) ÷ 결혼이민 포함 총인구 × 100(%)

[그림 4-6] 총인구대비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비율 전망



나. 다문화가족 성구조

결혼이민자의 성비(여자 100명당 남자수)는 2009년 11.3으로 아주 낮으며, 향후에는 더욱 낮아져 2030년 6.4 그리고 2050년 5.5가 될 전망이다. 결혼이민자의 연령별로도 성비가 아주 낮으며, 다만 고연령층일수록 다소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이민자의 성이 여성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며, 고연령층의 경우 오래 전부터 이민해온 집단의 성비가 다소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낮은 성비는 총인구의 성비를 낮출 것이다. 2009년 총인구의 성비는 100.9이며, 결혼이민자가 없는 경우 101.5에 비해 0.6정도 낮다. 결혼이민자의 성비가 총인구의 성비를 낮추는 기여도는 0.6%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성비 차이나 기여도는 오히려 저연령층일수록 상대적으로 높다. 이는 총인구의 성비가 고연령층일수록 남녀간 사망률 차이로 인하여 낮으며, 그 영향으로 결혼이민자 성비와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결혼이민자의 성비 기여도는 2009년 -0.6%에서 2030년 -2.2%, 2050년 -4.2%로 총인구 성비를 낮추는 효과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혼이민자의 성비가 여성에 더 집중되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연령별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난다.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성비가 총인구의 성비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해보기로 한다. 우선 결혼이민인구의 성비는 2009년 34.0으로 낮으며, 2030년 41.5, 2050년 45.5로 점차 상승할 것이나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일 전망이다. 결혼이민인구의 연령별 성비는 매우 특이한 구조를 보인다. 결혼이민자의 후손으로 구성된 저연령층에서의 성비는 아주 높아 총인구의 수준과 유사한 반면, 결혼이민자와 후손이 혼합된 15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아주 낮다. 시간 경과에 따라, 결혼이민인구의 연령별 성비는 저연령층의 경우 점차 높아지며, 고연령층일수록 더욱 낮아지는 패턴을 보일 전망이다.

결혼이민인구의 성비가 총인구의 성비에 미치는 영향은 낮은 수준이나마 점차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총인구의 성비와 결혼이민인구의 성비 간의 차이는 2009년 0.6이며 2030년에는 2.1, 2050년에는 3.7로 나타날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결혼이민인구의 성비는 총인구의 성비를 2009년에는 0.6%, 2030년에 2.1%, 2050년에는 3.9%를 낮추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연령별로 총인구의 성비와 결혼이민인구의 성비 간의 차이나 상대적인 기여도는 2009년에 20대 초반 그리고 2030년과 2050년에는 40대 초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전망이다.

〈표 4-16〉 총인구 성비에 대한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성비의 기여도

(단위: 만명, %)

총인구 성비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결혼이민자				
	결혼이민 인구성비	결혼이민 인구제외 총인구 성비	성비 차이 (A-C)	기여도 (D/A×100)	결혼이민 인구	결혼이민 인구제외 총인구 성비	성비 차이 (A-G)	기여도 (H/A×100)	
									A
2009									
계	100.9	34.0	101.5	-0.6	-0.6	11.3	101.5	-0.6	-0.6
0-4	107.7	103.7	107.8	-0.1	-0.1		107.7	0.0	0.0
5-9	109.0	104.8	109.0	0.0	0.0		109.0	0.0	0.0
10-14	111.0	103.0	111.0	0.0	0.0		111.0	0.0	0.0
15-19	113.5	38.9	113.7	-0.2	-0.2	4.9	113.7	-0.2	-0.2
20-24	109.9	5.4	111.9	-2.0	-1.8	1.4	111.9	-1.9	-1.8

〈표 4-16〉 계속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결혼이민자			
	총인구 성비	결혼이민 인구성비	결혼이민 인구제외 총인구 성비	성비 차이 (A-C)	기여도 (D/A×100)	결혼이민 인구	결혼이민 인구제외 총인구 성비	성비 차이 (A-G)	기여도 (H/A×100)
25-29	106.5	8.0	107.9	-1.4	-1.3	4.6	107.9	-1.4	-1.4
30-34	106.6	11.9	107.9	-1.3	-1.2	10.1	107.9	-1.3	-1.2
35-39	105.4	14.4	106.5	-1.1	-1.1	13.2	106.5	-1.1	-1.1
40-44	104.2	17.3	105.0	-0.8	-0.8	16.4	105.0	-0.8	-0.8
45-49	102.4	17.7	103.0	-0.6	-0.6	17.2	103.0	-0.6	-0.6
50-54	101.7	19.9	102.1	-0.4	-0.4	19.6	102.1	-0.4	-0.4
55-59	99.0	24.2	99.2	-0.2	-0.2	23.8	99.2	-0.2	-0.2
60-64	95.0	43.1	95.0	-0.1	-0.1	42.9	95.0	-0.1	-0.1
65세+	68.6	76.5	68.6	0.0	0.0	76.8	68.6	0.0	0.0
2030									
계	99.0	41.5	101.1	-2.1	-2.1	6.4	101.2	-2.2	-2.2
0-4	105.9	107.2	105.7	0.1	0.1		105.9	0.0	0.0
5-9	106.1	109.7	105.8	0.3	0.3		106.1	0.0	0.0
10-14	106.3	110.0	106.1	0.2	0.2		106.3	0.0	0.0
15-19	107.1	98.2	107.5	-0.5	-0.4	0.1	107.7	-0.6	-0.6
20-24	108.5	44.3	112.6	-4.0	-3.7	0.9	112.6	-4.0	-3.7
25-29	109.6	16.3	115.5	-6.0	-5.4	3.1	115.5	-5.9	-5.4
30-34	111.9	10.8	117.8	-5.9	-5.2	4.8	117.8	-5.9	-5.2
35-39	115.6	7.0	121.9	-6.3	-5.5	5.7	121.9	-6.3	-5.5
40-44	112.0	7.3	118.7	-6.7	-6.0	6.5	118.7	-6.7	-6.0
45-49	106.0	8.7	110.0	-3.9	-3.7	7.7	110.0	-3.9	-3.7
50-54	103.9	10.0	106.6	-2.7	-2.6	9.1	106.6	-2.7	-2.6
55-59	100.6	10.8	102.4	-1.9	-1.8	10.1	102.4	-1.9	-1.8
60-64	95.9	11.2	97.1	-1.2	-1.2	10.5	97.1	-1.2	-1.2
65세+	79.1	11.2	79.5	-0.4	-0.4	10.8	79.5	-0.4	-0.4
2050									
계	96.0	45.5	99.7	-3.7	-3.9	5.5	100.0	-4.1	-4.2
0-4	105.9	107.2	105.5	0.3	0.3		105.9	0.0	0.0
5-9	105.8	109.4	105.1	0.7	0.7		105.8	0.0	0.0
10-14	105.7	109.4	105.2	0.5	0.5		105.7	0.0	0.0
15-19	105.5	102.1	105.9	-0.4	-0.4	0.1	106.3	-0.8	-0.8
20-24	106.8	71.6	111.4	-4.6	-4.3	0.9	111.6	-4.8	-4.5
25-29	107.2	51.9	115.0	-7.8	-7.3	3.1	115.1	-8.0	-7.5
30-34	108.2	40.4	117.8	-9.6	-8.9	4.8	118.0	-9.8	-9.0
35-39	109.4	31.6	119.7	-10.3	-9.4	5.5	119.9	-10.6	-9.7
40-44	109.4	20.8	120.1	-10.8	-9.8	5.9	120.2	-10.9	-9.9
45-49	109.4	12.5	119.2	-9.8	-8.9	5.9	119.2	-9.8	-8.9
50-54	109.8	9.9	117.5	-7.6	-7.0	5.8	117.5	-7.7	-7.0
55-59	111.5	6.7	118.7	-7.2	-6.4	5.6	118.7	-7.2	-6.4
60-64	105.4	6.4	112.2	-6.8	-6.5	5.6	112.2	-6.8	-6.4
65세+	79.0	7.5	80.6	-1.6	-2.0	6.8	80.6	-1.6	-2.0

다. 다문화가족 연령구조

결혼이민1세(결혼이민자)는 혼인을 목적으로 입국한 인구로서 15세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현재 결혼이민1세 중 생산가능층(15~64세)은 98.6%로 압도적이며, 1.4%만이 노년층(65세 이상)로 나타난다. 향후에도 결혼이민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나, 기존에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고령화에 따라 점차적으로 노년층 비중이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1세 중 생산가능층 비중은 2050년 79.3%로 나아지는 반면, 노년층 비중은 20.7%로 높아질 전망이다. 즉, 결혼이민1세도 2050년에는 초고령사회(노인 인구 비중 20%)로 진입할 예정이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6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50년에 거의 40%에 육박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결혼이민1세의 고령화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하게 후술할 것이다.

결혼이민2세(결혼이민자의 자녀)의 연령구조는 아주 젊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 이유로는 우리나라에서 결혼이민의 역사가 짧아, 결혼이민1세의 자녀들이 고연령층으로 이동하는데 일정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2009년 현재 결혼이민2세 중 유소년층(0~14세) 비중은 90.7%로 압도적이며, 생산가능층 비중은 9.3%에 불과하며 노년층은 전무한 실정이다. 결혼이민2세도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생산가능층 비중이 높아질 것이며, 초장기적으로는 노년기로의 이행도 진행될 전망이다. 2050년을 기준으로 유소년층 비중은 46.3%까지 낮아지며, 생산가능층 비중은 53.4%로 높아질 전망이다. 노년층 비중은 0.3%에 불과할 것으로 추계된다.

결혼이민3세(결혼이민자의 손자녀)의 경우 2020년까지 거의 태어나지 않아 유소년층만이 다소 존재할 것이다. 이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결혼이민3세 중 생산가능층 비중이 점차로 높아져 2050년에는 15.8%에 이를 전망이다. 노년층은 2050년까지 전무할 것이다.

〈표 4-17〉 결혼이민자 및 후손의 연령구조 전망

(단위: 천명, %)

	결혼이민1세				결혼이민2세				결혼이민3세			
	계	유소년 인구 (0~14)	생산가 능인구 (15~64)	노인 인구 (65+)	계	유소년 인구 (0~14)	생산가 능인구 (15~64)	노인 인구 (65+)	계	유소년 인구 (0~14)	생산가 능인구 (15~64)	노인 인구 (65+)
규모												
2009	171	0	168	2	101	92	9	0	0	0	0	0
2010	192	0	189	3	117	107	10	0	1	1	0	0
2015	296	0	292	4	218	194	24	0	2	2	0	0
2020	400	0	391	9	339	294	45	0	4	4	0	0
2025	503	0	483	20	466	374	92	0	9	9	0	0
2030	604	0	567	38	591	420	171	0	19	18	2	0
2035	704	0	641	64	707	443	264	1	40	36	4	0
2040	802	0	700	102	810	453	357	1	75	68	7	0
2045	895	0	749	146	902	456	444	2	129	114	15	0
2050	983	0	779	203	986	457	526	3	196	165	31	0
구성비												
2009	100.0	-	98.6	1.4	100.0	90.7	9.3	0.0	100.0	100.0	0.0	-
2010	100.0	-	98.7	1.3	100.0	91.2	8.8	0.0	100.0	100.0	0.0	-
2015	100.0	-	98.5	1.5	100.0	89.1	10.9	0.0	100.0	100.0	0.0	-
2020	100.0	-	97.8	2.2	100.0	86.7	13.3	0.0	100.0	100.0	0.0	-
2025	100.0	-	96.1	3.9	100.0	80.2	19.8	0.0	100.0	95.4	4.6	-
2030	100.0	-	93.8	6.2	100.0	71.0	29.0	0.0	100.0	90.9	9.1	-
2035	100.0	-	91.0	9.0	100.0	62.6	37.3	0.1	100.0	90.9	9.1	-
2040	100.0	-	87.3	12.7	100.0	55.9	44.0	0.1	100.0	90.4	9.6	-
2045	100.0	-	83.7	16.3	100.0	50.6	49.3	0.2	100.0	88.2	11.8	-
2050	100.0	-	79.3	20.7	100.0	46.3	53.4	0.3	100.0	84.2	15.8	-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전체의 연령구조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연령구조와 비교 관점에서 분석될 필요가 있다. 추계기간 초기에 저연령층인 유소년층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자녀세대(결혼이민2세)들로 구성되며, 생산가능층과 노년층은 결혼이민자(결혼이민1세)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 경과에 따라서 결혼이민2세도 점차 생산가능층으로 이동할 것이며, 결혼이민3세들이 태어나 유소년층을 구성할 것이다. 즉, 이러한 조합에 따라 결혼이민인구의 연령구조가 변화할 것이다.

2009년 현재 결혼이민인구 중 유소년층 비중은 33.8%, 생산가능층 비중은 65.3%, 노년층 비중은 0.9%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인구의 연령구조는 우리나라 총인구(유소년층 16.8%, 생산가능층 72.6%, 노년층 10.7%)에

비해 유소년층 비중이 아주 높고 노년층 비중이 아주 낮아 고령화수준이 아주 낮다고 볼 수 있다. 향후 결혼이민2세대들이 유소년층에서 생산가능층으로 이동하고, 결혼이민1세대들이 생산가능층에서 노년층으로 진입할 것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인구 중 생산가능층 비중은 2009년 65.3%에서 2050년 61.7%로 다소 낮아질 것이다. 노년층 비중이 동 기간 0.9%에서 9.5%로 높아짐에 따라, 유소년층 비중은 33.8%에서 28.7%로 낮아질 전망이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의 연령구조는 점차 고령화되어 갈 것이다. 우리나라 총인구의 고령화 이행 속도에 비해서는 아주 더디게 진행할 전망이다. 결혼이민인구 중 노인인구의 비중은 2043년에 7.0%(고령화사회)가 되며, 2050년에 약 10%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나라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이 7%에 도달한 시기가 2000년이며, 10%에 도달한 시기가 2008년이다. 그리고 2050년에 우리나라 총인구 중 노인인구 비중은 38.2%에 이를 전망이다.

이러한 비교를 통해 결혼이민인구는 우리나라 총인구의 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결혼이민인구의 생산가능층 비중은 우리나라 총인구의 생산가능층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노동력 공급원으로서도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혼이민인구의 규모는 총인구에 비해 아주 작아, 전체 총인구 중 고령화 수준이나 생산가능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노인인구비율 차이나 생산가능인구 비율 차이로 측정할 수 없다. 이와 관련, 실질적인 기여도를 측정하는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표 4-18〉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 및 후손)의 연령구조 전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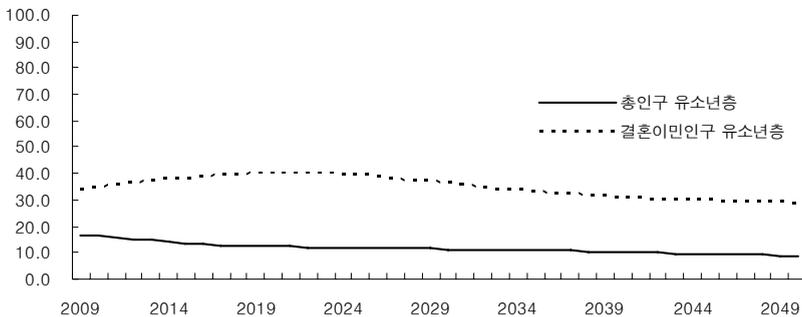
	결혼이민인구(이민자+후손)				총인구			
	전체	0-14세	15-64세	65세이상	전체	0-14세	15-64세	65세이상
규모								
2009	272,613	92,263	177,941	2,409	48,746,693	8,180,366	35,373,617	5,192,710
2010	309,841	107,634	199,594	2,614	48,874,539	7,906,908	35,610,778	5,356,853
2015	516,246	196,318	315,456	4,472	49,277,094	6,732,801	36,163,474	6,380,819

〈표 4-18〉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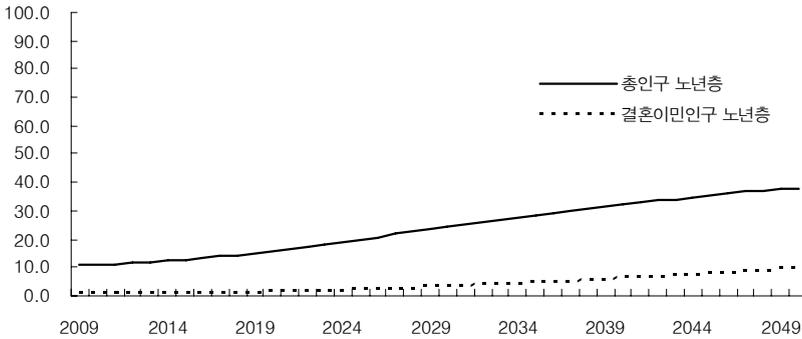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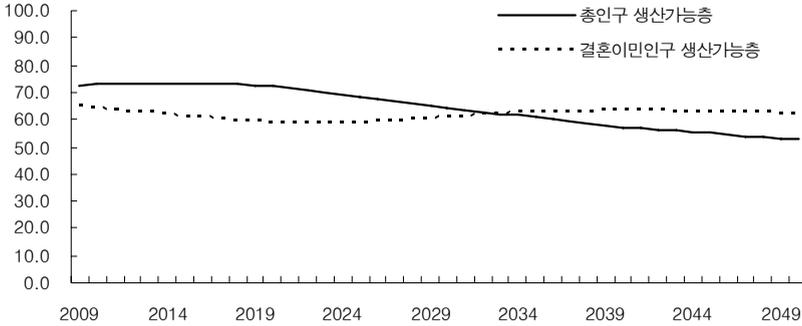
(단위: 명, %)

	결혼이민인구(이민자+후손)				총인구			
	전체	0~14세	15~64세	65세이상	전체	0~14세	15~64세	65세이상
2015	516,246	196,318	315,456	4,472	49,277,094	6,732,801	36,163,474	6,380,819
2020	743,416	298,523	435,824	9,069	49,325,689	6,118,161	35,506,403	7,701,125
2025	978,174	382,470	575,954	19,750	49,107,949	5,777,665	33,562,491	9,767,793
2030	1,215,156	437,433	739,829	37,894	48,634,571	5,525,336	31,298,528	11,810,707
2035	1,451,003	478,664	908,272	64,067	47,734,323	5,231,456	28,953,538	13,549,329
2040	1,687,110	520,622	1,063,779	102,709	46,343,017	4,777,229	26,524,881	15,040,907
2045	1,926,182	569,933	1,208,604	147,646	44,520,935	4,220,129	24,503,243	15,797,563
2050	2,164,886	622,071	1,336,804	206,011	42,342,769	3,763,081	22,423,931	16,155,757
구성비								
2009	100.0	33.8	65.3	0.9	100.0	16.8	72.6	10.7
2010	100.0	34.7	64.4	0.8	100.0	16.2	72.9	11.0
2015	100.0	38.0	61.1	0.9	100.0	13.7	73.4	12.9
2020	100.0	40.2	58.6	1.2	100.0	12.4	72.0	15.6
2025	100.0	39.1	58.9	2.0	100.0	11.8	68.3	19.9
2030	100.0	36.0	60.9	3.1	100.0	11.4	64.4	24.3
2035	100.0	33.0	62.6	4.4	100.0	11.0	60.7	28.4
2040	100.0	30.9	63.1	6.1	100.0	10.3	57.2	32.5
2045	100.0	29.6	62.7	7.7	100.0	9.5	55.0	35.5
2050	100.0	28.7	61.7	9.5	100.0	8.9	53.0	38.2

[그림 4-7]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와 총인구의 연령구조 비교



[그림 4-7]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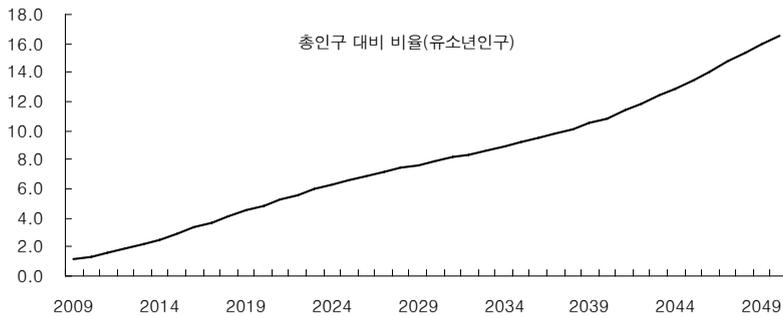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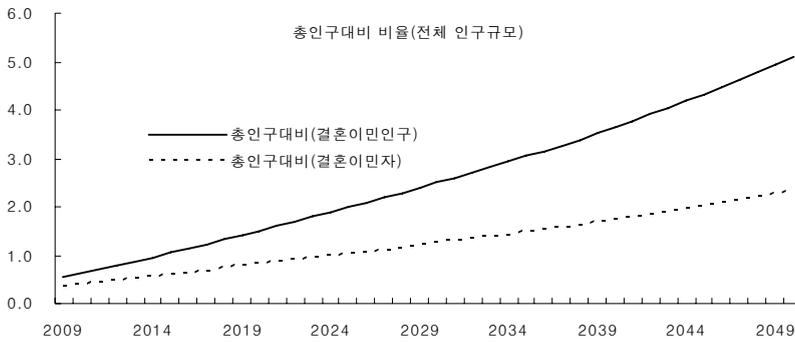
이상 결과를 종합하면, 총인구 중 결혼이민인구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경우 2009년 0.56%에서 2050년 5.11%로, 유소년인구의 경우 1.13%에서 16.53%로,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0.50%에서 5.96%로 높아질 전망이다. 2050년에 결혼이민자의 유소년들이 전체 유소년인구의 20%에 근접할 것이라는 점은 사회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혼이민자만을 총인구와 비교해보면, 전체 인구의 경우 2009년 0.35%에서 2050년 2.32%로, 생산가능인구의 경우 0.48%에서 3.48%로, 그리고 노인인구의 경우 0.05%에서 1.26%로 점차 높아질 것이다. 한편, 결혼이민자의 속성에 따라 유소년인구의 비중은 무의미하다.

〈표 4-19〉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인구 및 결혼이민자의 비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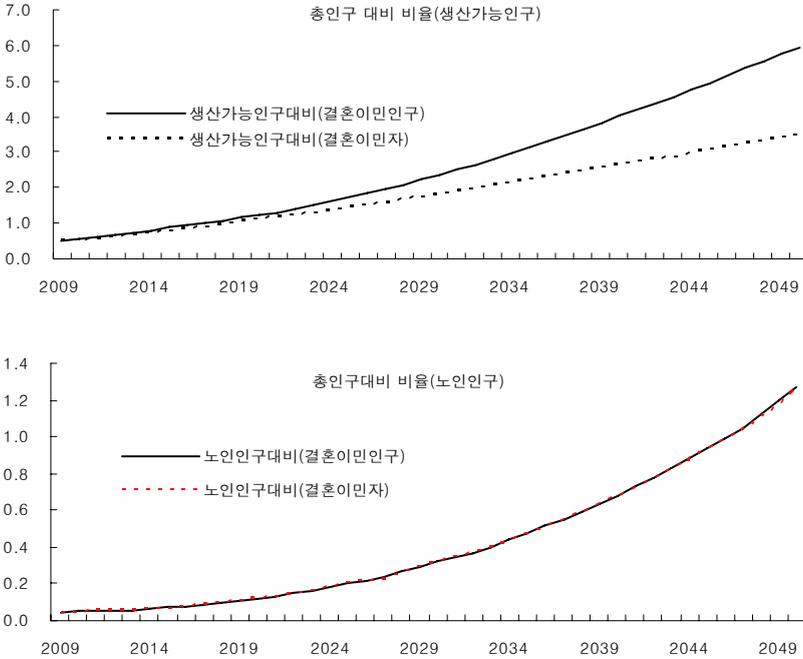
(단위: 명, %)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후손)				결혼이민자		
	총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대비	생산가능 인구대비	노인인구 대비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 인구대비	노인인구 대비
2009	0.56	1.13	0.50	0.05	0.35	0.48	0.05
2010	0.63	1.36	0.56	0.05	0.39	0.53	0.05
2015	1.05	2.92	0.87	0.07	0.60	0.81	0.07
2020	1.51	4.88	1.23	0.12	0.81	1.10	0.12
2025	1.99	6.62	1.72	0.20	1.02	1.44	0.20
2030	2.50	7.92	2.36	0.32	1.24	1.81	0.32
2035	3.04	9.15	3.14	0.47	1.48	2.21	0.47
2040	3.64	10.90	4.01	0.68	1.73	2.64	0.68
2045	4.33	13.51	4.93	0.93	2.01	3.06	0.92
2050	5.11	16.53	5.96	1.28	2.32	3.48	1.26

〈그림 4-8〉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인구 및 결혼이민자의 비율 전망



[그림 4-8] 계속



결혼이민인구(후손 포함)를 아동의 성장과정을 기준으로 보육유아교육기(0~5세), 초등학교학령기(6~11세), 중학교학령기(12~14세), 고등학교학령기(15~17세), 대학교학령기 및 취업준비기(18~24세)로 구분하여 변동 추이와 총인구 대비 비율을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결혼이민 증가 및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력에 따라 모든 성장단계에서 아동수가 증가할 전망이다. 보육유아교육기의 경우 2009년 62천명에서 2050년 288천명으로, 초등학교학령기의 경우 동 기간 25천명에서 234천명으로, 중학교학령기의 경우 5천명에서 100천명으로, 고등학교학령기의 경우 2천명에서 92천명으로, 그리고 대학교학령기 등의 경우 4천명에서 187천명으로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장기간 초저출산현상으로 인하여 총인구 중 영유아 및 각급 학령기 아동수는 급격하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육 및 유아교육 대상 영유아나 각급 학령기 아동들 중 결혼이민가정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빠른 속도로 높아질 전망이다. 보육교육기의 경우 결혼이민가정 아동의 비중은 2009년 2.7%에서 2050년 무려 24.7%(약 1/4)로 높아질 전망이다. 초등학교 대상 아동들 중 결혼이민가정 자녀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동 기간 0.7%에서 15.3% 그리고 중학교 대상 아동의 경우 0.3%에서 12.0%로 증가할 전망이다. 고등학교 학령기와 대학교 학령기의 경우, 현재에는 거의 무시할 수준이나 점차 증가하여 2050년에는 전체 대상 인구 중 10.1%와 7.9%를 각각 차지할 전망이다.

〈표 4-20〉 아동 성장과정별 결혼이민가정 자녀의 규모 및 총인구 대비 비율 전망

(단위: 천명, %)

	보육유아교육령			초등학교령 (6~11세)	중학교령 (12~14세)	고등학교령 (15~17세)	대학교령 (18~24세)
	계 (0~5세)	영아 (0~2세)	유아 (3~5세)				
결혼이민인구							
2009	62	41	21	25	5	2	4
2010	73	47	26	27	8	3	4
2015	129	73	55	55	13	10	8
2020	165	90	76	105	28	15	22
2025	188	100	88	142	52	37	38
2030	204	108	97	165	68	58	81
2035	220	117	104	180	78	71	126
2040	242	129	113	194	85	79	155
2045	267	142	125	212	92	85	173
2050	288	152	136	234	100	92	187
총인구							
2009	2,247	887	1,360	3,464	2,025	2,067	4,429
2010	2,206	878	1,328	3,297	1,962	2,069	4,446
2015	2,090	811	1,279	2,656	1,573	1,823	4,688
2020	1,935	761	1,175	2,510	1,291	1,364	4,187
2025	1,861	747	1,114	2,316	1,231	1,265	3,270
2030	1,821	715	1,106	2,209	1,131	1,175	2,911
2035	1,648	623	1,026	2,176	1,082	1,095	2,722
2040	1,423	539	883	2,001	1,075	1,071	2,540
2045	1,266	490	776	1,728	977	1,035	2,478
2050	1,168	457	711	1,525	838	909	2,3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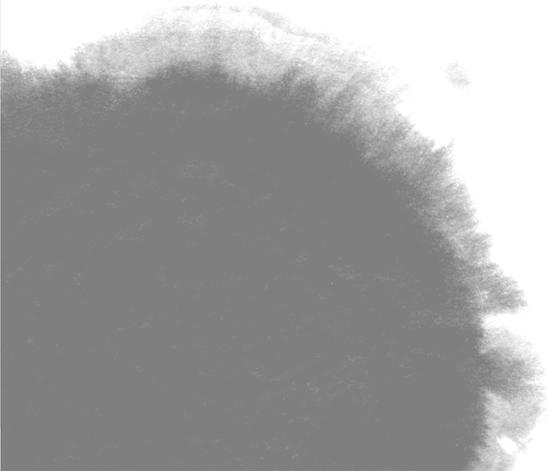
〈표 4-20〉 계속

(단위: 천명, %)

	보육유아교육령			초등학교령 (6~11세)	중학교령 (12~14세)	고등학교령 (15~17세)	대학교령 (18~24세)
	계 (0~5세)	영아 (0~2세)	유아 (3~5세)				
총인구 대비							
2009	2.7	4.6	1.5	0.7	0.3	0.1	0.1
2010	3.3	5.3	2.0	0.8	0.4	0.1	0.1
2015	6.1	9.0	4.3	2.1	0.8	0.6	0.2
2020	8.5	11.8	6.4	4.2	2.2	1.1	0.5
2025	10.1	13.4	7.9	6.1	4.2	2.9	1.1
2030	11.2	15.1	8.7	7.5	6.0	4.9	2.8
2035	13.4	18.7	10.1	8.3	7.2	6.5	4.6
2040	17.0	23.8	12.8	9.7	7.9	7.4	6.1
2045	21.1	28.9	16.1	12.2	9.4	8.2	7.0
2050	24.7	33.2	19.2	15.3	12.0	10.1	7.9

05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 및 질적 영향



V.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 및 질적 영향

1.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인 영향

향후에도 다문화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남성결혼이민자에 비해 여성결혼이민자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커데다가 출산율마저 높아 그 후손(자녀와 손자녀)들도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혼이민자의 출신지역별로는 초기에는 동북아시아 출신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후손들이 가장 빠르게 증가하나,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시아 이외의 아시아 지역 출신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더 빠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후손을 포함한 전체 결혼이민인구의 비중은 동북아시아 이외 아시아 지역, 동북아시아, 아시아 이외 지역의 순으로 높게 나타날 전망이다.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들(결혼이민인구)의 증가는 총인구에 영향을 미친다. 2028년까지 기간 동안에는 총인구 증가세를 지속시키는 그리고 그 후에는 총인구 감소세를 억제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결혼이민인구가 총인구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커질 것이다. 총인구 중 결혼이민자 비중은 2009년 0.35%에서 2050년에 2.32%로 높아질 것이다. 결혼이민2세와 결혼이민3세의 비중도 동 기간 0.21%에서 2.79%로 높아질 것이다. 결혼이민자와 후손들을 포함한 결혼이민인구는 2050년 총인구의 5%를 상회할 전망이다.¹⁷⁾

17) 영국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개방적인 이민정책을 실시하여, 영국 인구 중 7.5%에 해당하는 이민자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총인구는 2009년 4.875만명에서 2050년 4,234만명으로 641만명이 감소할 것이다. 결혼이민인구 216만명이 없다고 가정하면 총인구는 857만명(641만명+216만명=857만명)이 감소할 것이다. 즉, 결혼이민인구는 총인구의 감소 폭을 25.2%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결혼이민1세만은 2050년 98만명으로 총인구의 감소폭(641만명+98만명=739만명)의 13.2%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우선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와 후손)는 노동력 공급원으로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중이 높아,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 결혼이민인구의 연령구조가 전체(총인구) 생산가능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는 결혼이민인구가 없다면 그만큼 총인구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text{생산가능인구기여도} = \frac{\text{결혼이민제의 생산가능인구} - \text{결혼이민포함 생산가능인구}}{\text{결혼이민포함생산가능인구}} \times 100(\%)$$

결혼이민인구 유입으로 총인구 중 생산가능인구 규모는 2009년 178천명이 증가하였다. 향후 결혼이민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순증규모는 점차 커져 2040년에는 1,000천명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며, 2050년에는 1,337천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러한 결혼이민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순증규모가 총인구의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기여도는 2009년 0.50%에 불과하였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급속하게 증가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결혼이민인구의 생산가능인구 증가에 대한 기여도는 2020년경 1% 수준을 상회하기 시작하며, 2035년경에는 3%대, 2040년에는 4%대 그리고 2050년에는 5.96%로 거의 6%에 육박할 것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3,537만명으로 2016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여 2050년에는 2,242만명이 될 전망이다. 동 기간에 생산가능인구는 1,295만명이 줄어들 것이다. 결혼이민자 중 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17만

명에서 2050년 78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결혼이민1세인 생산가능인구 규모만 해도 2050년까지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1,295만명+78만명=1,373만명)의 5.7%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결혼이민인구(후손 포함) 중 생산가능인구는 2009년 18만명에서 2050년 134만명으로 증가하여,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1,295만명+134만명=1,429만명)의 9.4%를 줄이는 효과를 보일 것이다.

〈표 5-1〉 다문화가족 증가가 전체 생산가능인구 규모에 미치는 영향

(단위: 천명, %)

	결혼이민인구 포함 생산가능인구(A)- 결혼이민인구 제외 생산가능인구(B)	상대적 기여도 (A-B)/B×100(%)
2009	178	0.50
2010	200	0.56
2015	315	0.87
2020	436	1.23
2025	576	1.72
2030	740	2.36
2035	908	3.14
2040	1,064	4.01
2045	1,209	4.93
2050	1,337	5.96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고령화 수준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 결혼이민인구의 연령구조가 총인구의 고령화수준을 낮추는 기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산식을 적용하도록 한다. 산식에 의한 기여도는 결혼이민인구가 없었다면 그만큼 고령화 수준이 높아질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text{고령화기여도} = \frac{\text{결혼이민제외 노인비율} - \text{결혼이민포함 노인비율}}{\text{결혼이민포함 노인비율}} \times 100(\%)$$

결혼이민인구는 2009년 고령화 수준을 0.05%p 줄이는 역할을 한 것으로 측정된다. 즉, 결혼이민인구가 없다면, 고령화 수준(총인구 중 65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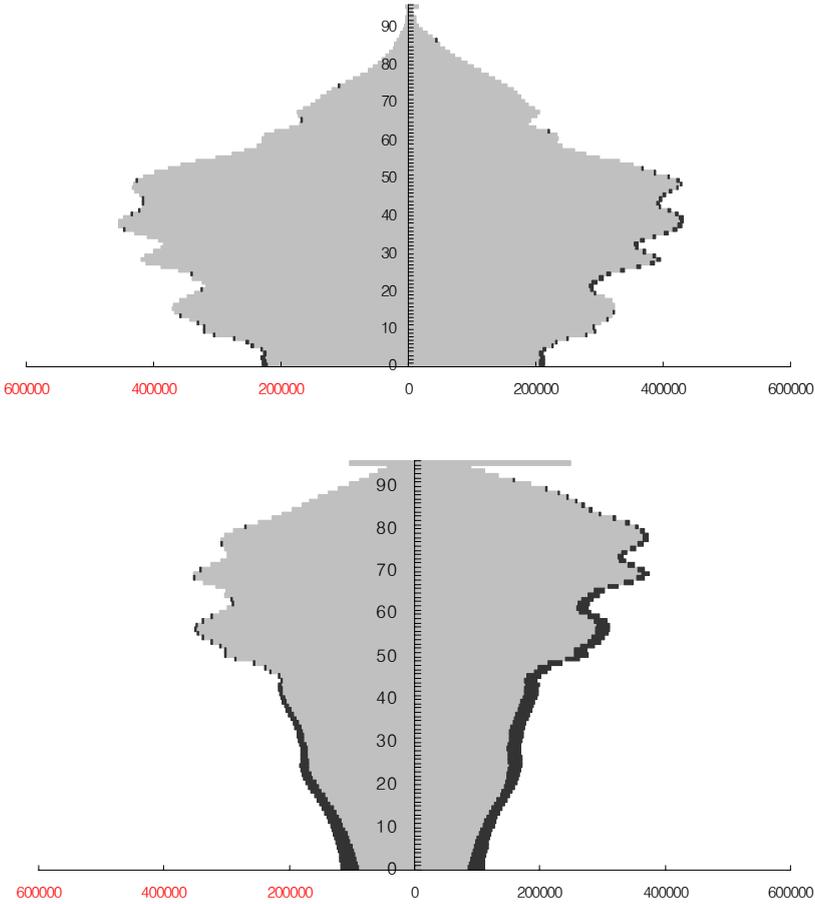
상 노인인구 비율)은 현재보다 0.05%포인트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총인구의 고령화 수준을 0.52% 줄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는 결혼이민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총인구는 감소할 전망이다. 그로 인하여 결혼이민인구가 총인구의 고령화 수준을 낮추는 기여도는 점차 커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총인구 고령화 수준의 절대적 감소분은 2009년 0.05%포인트에서 2050년 1.54%포인트까지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결혼이민인구가 없다면 2050년 우리나라 고령화 수준은 38.2%가 아닌 39.7%로 더 높아질 것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결혼이민인구의 총인구 고령화 수준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도도 2020년 -1.41%, 2030년 -2.23%, 2040년 -3.07%, 2050년 -4.04% 등으로 커질 전망이다. 2050년 기준으로 결혼이민인구(결혼이민자와 후손)는 전체 고령화 수준을 4.0%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마이너스(-) 부호는 그만큼 총인구의 고령화 수준을 줄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2〉 다문화가족 증가가 총인구의 고령화에 미치는 영향

(단위: %)

	결혼이민인구 포함 노인비율(A) - 결혼이민인구 제외 노인비율(B)(%포인트)	상대적 기여도 (A-B)/B×100(%)
2009	-0.05	-0.52
2010	-0.06	-0.59
2015	-0.13	-0.99
2020	-0.22	-1.41
2025	-0.36	-1.83
2030	-0.54	-2.23
2035	-0.75	-2.65
2040	-1.00	-3.07
2045	-1.26	-3.55
2050	-1.54	-4.04

[그림 5-1] 인구구조에 대한 다문화가족의 영향 도식도, 2009년과 2050년



2. 다문화가족의 인구 질적인 영향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규모와 구조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질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앞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의 주된 특성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을 형성하는 결혼이민자는 주로 아시아의 개발도상국

출신으로 상당 비율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한국 내 생활이 불안정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결혼이민자의 불안정한 법적 지위는 결혼이민자들로 하여금 한국 내 취업활동을 어렵게 하며, 남편 및 시댁과의 가족관계 및 자녀 교육에 있어서 소극적 혹은 열등한 위치에 있게 할 것이다.

둘째, 결혼이민자의 대부분은 저연령층 여성으로 한국인남편과의 연령 차이가 크며, 한국인남편이 재혼인 비율이 높다. 젊은 결혼이민자의 유입은 가임력이나 노동력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고령화 수준을 낮추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그러나 지나치게 젊은 연령층이 유입할 경우 노동의 비숙련도가 높고 한국생활에의 적응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예로,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젊은 아시아여성들로 가부장적인 결혼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여 자칫 이혼 등의 가족해체를 겪고 있다. 결혼생활 부적응이 지속되면 결혼이민자들은 우울증 등 병리적인 상황을 겪게 되며, 사회생활에도 쉽게 적응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다시 자녀 양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부 간의 연령 차이가 크다는 점도 결혼생활의 불안정성을 높이며, 특히 한국남성이 노동시장에서 은퇴할 경우 자녀의 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교육수준은 한국인 평균수준에 비해 낮은 편이다. 결혼이민자(특히 여성)의 낮은 학력수준은 사회적응력을 낮출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자녀 양육 및 교육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쳐 사회비통합성의 문제를 자녀에게까지 세습화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결혼이민자(특히 여성) 대부분 취업경험이 없고,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질과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직 및 단순노무직 경력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이 결혼이민자의 낮은 직업능력은 언어소통 곤란, 문화 차이, 자녀양육 부담 등의 문제와 결합하여 한국사회 내에서 노동시장 참여 자체를 어렵게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결혼이민자들은 빈곤 탈피, 한국사회 내 역할 증가 및 성취 등을 이룰 수 없으며, 이는 자녀 교육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다섯째,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은 열악한 편이다. 다문화가족의 빈곤은 결혼이민자의 낮은 학력수준과 직업능력과 맞물리면서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대물림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인구자질 측면에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결혼이민자 가족의 계층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사회통합성에 위협이 될 가능성도 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가족들로부터 적절한 보육·교육을 받지 못한 편이며, 정보부재, 비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낮은 편이다. 게다가 이들 자녀는 학교생활 등에서 소외되어 정서적인 발달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결혼이민자의 자녀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주된 구성원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성장과정에서 적절한 보육교육 기회를 갖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인구자질은 물론 사회통합성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의 주된 특징들을 종합하면, 결혼이민자는 물론 그 후손들도 인구 자질 측면에서 한국인 평균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 영향과 질적 영향의 교차

앞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인구규모와 인구구조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한 바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향후 총인구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를 완화시키며, 인구고령화 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물론, 결혼이민인구 중 생산가능인구의 질적 수준이 전체 생산가능인구의 질적 수준과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 기여도가 질적 기여도와 반드시 일치한다고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이들 두 측면을 동시에 고려한 논의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의 질적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주요 특성들 각각에 대해 인구 양적인 차원에서의 해석을 내릴 필요가 있다.

앞선 분석에서 나타난 결혼이민자의 “저연령 편향성”은 우리나라 생산가

능인구의 증가와 고령화수준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와 총인구는 2018년과 2016년을 정점으로 각각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질 것이다. 이는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중 다문화가족의 특성이 점차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중 결혼이민자의 상대적으로 낮은 학력수준과 직업능력은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의 학력과 직업능력 평균을 낮추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가 20~30대에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동 연령층을 대상으로 최근 총인구 학력과 결혼이민자 학력을 비교하여 향후 총인구의 학력수준을 산출하도록 한다. 결혼이민자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인구 학력에서 결혼이민자의 학력을 제외한 비결혼이민자의 학력을 도출한다. 최근의 비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학력 분포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30년과 2050년 비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 비중에 남녀별 및 학력별로 적용하여 총인구의 학력수준을 예측한다. 한편, 총인구와 결혼이민자의 남녀별 학력수준은 제3장에서 분석한 바 있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족 증가가 남성 학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남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작으니까 이들의 학력수준이 한국인 평균치에 근접하기 때문이다. 반면, 다문화가족 증가는 여성 학력에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증가는 총인구의 중졸 이하와 고졸 학력의 비율을 높이며, 대학 이상의 고학력 비율은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장기적일 수록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2050년의 경우 중졸 이하와 고졸학력 비율은 다문화가족 증가로 1.5%포인트와 0.5%포인트 증가하는데 비해, 대학 이상 고학력의 비율은 오히려 2.1%포인트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결혼이민자 대부분이 여성인데다가 이들의 학력수준이 상당히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자 규모가 작은 관계로 학력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은 아주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표 5-3〉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증가가 총인구 학력수준에 미치는 영향(20~30대 기준)

(단위: %)

학력	2009 기준 학력수준			향후 총인구 학력수준		2009년 대비 차이		2009년 대비 기여도	
	전체	비결혼이민	결혼이민	2030	2050	2030	2050	2030	20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졸이하	2.6	2.5	26.2	3.1	3.4	0.4	0.7	16.1	27.7
고졸	36.4	36.3	47.9	36.5	36.7	0.1	0.2	0.2	0.7
대학이상	60.9	61.2	25.9	60.4	60.0	-0.5	-1.0	-0.8	-1.6
남성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졸이하	2.6	2.6	6.1	2.6	2.6	0.0	0.0	0.1	0.2
고졸	32.8	32.8	31.3	32.8	32.8	0.0	0.0	0.0	0.0
대학이상	64.6	64.6	62.6	64.6	64.6	0.0	0.0	0.0	0.0
여성	100.0	100.0	100.0	100.0	100.0				
중졸이하	2.7	2.3	27.6	3.6	4.2	0.9	1.5	33.5	56.2
고졸	40.3	40.2	49.1	40.6	40.8	0.3	0.5	0.8	1.3
대학이상	57.0	57.5	23.2	55.8	54.9	-1.2	-2.1	-2.1	-3.6

주: 전체 인구의 학력수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인구동태조사 혼인자료(원자료, 2004~2008)를 이용하여 산출함.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와 인구동태조사 혼인자료(2004~2008)를 이용하여 최근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분포를 적용한다. 교육수준에 대한 분석과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인구에서 결혼이민자를 제외한 비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분포를 도출한다. 최근의 비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분포가 향후에도 계속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2030년과 2050년 비결혼이민자와 결혼이민자 비중에 남녀별 및 경제활동상태와 직업별로 적용하여 총인구의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분포를 예측한다. 한편, 총인구와 결혼이민자의 남녀별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분포는 제3장에서 분석한 바 있다.

우선 남성결혼이민자의 증가가 전체 남성의 경제활동상태와 직업 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와 2030년 및 2050년 간의 비교에서 경제활동상태와 직업분포는 거의 변화가 없으며, 상대적인 기여도도 0.1% 내외로 측정된다. 이는 남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아주 작은데다가 이들의 취업률은 비결혼이민자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반면,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전체 여성인구의 경제활동상태와 직업분포에 다소나마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전체 여성의 비취업 비율은 현재에 비해 2030년에는 1.2%포인트, 2050년에는 2.0%포인트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는 2009년 수준에 비해 2030년에 2.2% 그리고 2050년에 3.7% 정도 증가함을 의미한다. 전체 여성의 관리전문직, 사무직, 기타 등 모든 직종의 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규모가 비교적 큰데다가 이들의 비취업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85.8%)이기 때문이다. 직종 간 비교에서는 고위관리직·전문직과 기타 직종의 비율 감소가 상대적으로 높고, 사무직의 경우에 다소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러한 결과는 최근의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가정한 것으로, 향후 경제사회 변화나 정책적 노력에 따라 다른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요약하면,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은 학력과 마찬가지로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다문화가족의 규모가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여전히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4〉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 증가가 총인구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20~30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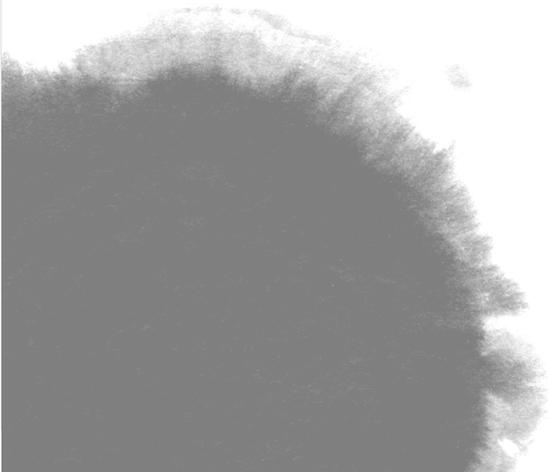
	(단위: %)								
	2009 기준 경제활동			향후 총인구 경제활동		2009년 대비 차이		2009년 대비 기여도	
	전체	비결혼이민	결혼이민	2030	2050	2030	2050	2030	2050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취업	41.1	40.8	81.1	41.4	42.0	0.3	0.9	0.7	2.1
관리전문직	16.8	16.9	4.5	16.6	16.5	-0.2	-0.3	-1.0	-2.1
사무직	14.0	14.0	8.1	13.8	13.8	-0.1	-0.2	-0.8	-1.4
기타	28.1	28.3	6.3	28.1	27.8	0.0	-0.3	0.0	-1.2
남성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취업	29.5	29.5	16.7	29.5	29.5	0.0	0.0	0.0	-0.1
관리전문직	18.3	18.3	28.8	18.3	18.3	0.0	0.0	0.1	0.1
사무직	14.2	14.2	29.2	14.2	14.2	0.0	0.0	0.1	0.2
기타	38.0	38.0	25.3	38.0	38.0	0.0	0.0	0.0	-0.1
여성	100.0	100.0	100.0	100.0	100.0				
비취업	53.5	53.0	85.8	54.7	55.5	1.2	2.0	2.2	3.7
관리전문직	15.2	15.4	2.8	14.7	14.4	-0.5	-0.8	-3.0	-5.0
사무직	13.7	13.8	6.5	13.4	13.3	-0.3	-0.4	-1.9	-3.2
기타	17.6	17.8	4.9	17.1	16.8	-0.5	-0.8	-2.6	-4.4

주: 전체 인구의 학력수준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이며, 결혼이민자의 학력은 인구동태조사 혼인자료(원자료, 2004~2008)를 이용하여 산출함.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교육수준이나 직업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와 볼 수 있듯이, 전체 인구의 빈곤수준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문제는 저학력, 무직 혹은 질 낮고 안정성이 보장되지 못한 직업, 저소득 등의 특성이 다문화가족에 집중되는 계층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저학력, 저위신직업 혹은 실업, 빈곤이 대물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은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부적절한 가정보육·교육, 낮은 공공보육·교육서비스 접근성, 학교생활에서의 소외 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저출산현상으로 유소년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다문화가족의 자녀는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아동 중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2050년 보육유아 교육기 아동 중 24.7%, 초등학교 아동 중 15.3%, 중학교 아동 중 12.0%, 고등학교 아동 중 10.1%가 다문화가정 자녀들로 구성될 것이다. 요컨대, 전체 인구의 자질은 결혼이민자보다 이들의 자녀에 의해 좌우될 것이다.

06

결론 및 정책적 제언



VI.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우리나라는 향후 출산을 회복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는 인구대치수준으로의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저출산현상의 장기적인 지속은 노동력 부족과 인구고령화를 촉진시킬 것이다. 선진국들은 고령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체이민을 채택하여 왔다. 대부분의 이민자는 젊고 바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국,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일부 이민자의 경우 이민 이전에 속해 있었던 사회의 출산행태를 따르면서 내국인보다 출산율이 높기 때문에 인구증가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민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이민은 노동력에 미치는 단기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인구고령화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자들의 증가는 일인당 GDP 감소, 실업률 상승 등의 원인이 되며, 장기적으로 이민자나 이들의 가족 역시 고령화하면서 재정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인구 양적인 측면과 인구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고찰, 사례 조사, 기존 조사자료(인구동태조사, 기존연구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등) 분석 등을 실시하며, 조성법을 적용하여 2009~2050년간 다문화가족(결혼이민자와 그 후손)을 추계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문화가족의 인구 양적인 측면과 인구 질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다문화가족 증가가 전체 인구의 양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전체 인구규모와 생산가능인구 규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리나라 인구는 저출산현상으로 인하여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생산가능인구는 그보다 빠른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다문화가족은 특히 젊은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총인구뿐만 아니라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민자와 그 후손들이 총인구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0년 5%를 상회하며, 생산가능인구 중에서는 6%에 육박할 것이다. 이는 2050년까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폭을 9%정도 그리고 총인구의 감소폭을 13%정도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로 우리나라 전체인구 고령화는 2050년 기준으로 1.54%포인트 혹은 4%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의 질적인 측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이다. 우선 인구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다문화가족의 주요 특징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가 취약하게 나타난다. 둘째, 결혼이민자들 상당 부분이 재혼인 한국인배우자와 결혼하고 부부 간 연령 차이가 크다. 셋째, 결혼이민자의 학력과 직업력이 한국인 평균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넷째, 다문화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아 빈곤층을 형성하고 있다. 끝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가족의 보육·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비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제약되어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학교 등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 자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몇몇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전체 인구의 학력수준을 다소 낮추는 작용을 할 것이다. 그러한 영향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학력수준이 낮은 여성결혼이민자에게서 나타난다. 즉, 여성결혼이민자

의 증가가 전체 인구(특히 여성) 중 고졸 이하의 비율을 높이며, 대학이상
 의 비율은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총인구 대비 결혼이
 민자의 비중이 낮아, 전체적인 학력저하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둘째, 다
 문화가족의 증가는 전체 인구의 직업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비취업 비율이 높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증가는 전
 체 인구(특히 여성) 중 비취업비율을 높이는 반면, 전문직과 사무직 등의
 비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킬 것이다. 총인구 대비 결혼이민자의 비중
 이 낮아 전체적인 직업력 저하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다. 셋째, 결혼이민자
 의 열악한 법적 지위, 높은 재혼율(한국인배우자)과 부부간 큰 연령 차이,
 낮은 소득수준 등은 결혼(가족)생활과 사회생활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본
 인의 사회부적응성과 자녀양육의 부적절성을 높이는 작용을 할 것이다. 이
 러한 특성을 가진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전체 인구의 자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끝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열악한 보육·교육환경은 이들의
 인구자질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결혼이민자의 영향력보다 더 중요하
 다. 향후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
 각성은 더 크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성장하여서도 저학력, 높은 실업률,
 빈곤층으로의 전락,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사회통합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전체 인구 자질에
 미치는 영향력은 결혼이민자보다 이들의 자녀에 의해 더 좌우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서 도출된 다문화가족 증가의 긍정적 영향(인구 양적
 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인구 질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는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특히, 자녀)에 대한 정책적 노력이 중요하다.

인구자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결혼 이주에 대해 보다 엄격해질 필요가
 있으나, 이민의 목적이 노동보다는 한국사회 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결
 혼이라는 점에서 통제에 한계성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필연적으로 발생하
 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전적 및 사후적인 정책적 배려는 매우 중요한 의
 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언들은 인구의 양적 및 질적 변화가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는 점에서 지금부터 모든 관련 정책들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

첫째, 다문화가족의 증가는 노동력 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낮은 직업능력, 일자리 정보 접근성 제약, 노동시장에서의 외국인 차별, 한국어 미숙, 자녀양육 부담 등으로 인하여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성을 제고하고 저출산고령사회에서의 노동력 부족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의 고용활성화는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 결혼이민자의 유입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배제보다는 선제적 투자를 통해 예견되는 사회문제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결혼이민자의 정착과 사회적응을 돕고 더 나아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고용문제에 대한 사회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의 탈출하고 한국 사회에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저학력·저직업력의 특성을 가진 결혼이주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취업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국내 입국 시부터 언어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알선,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결혼이민자 입국시 일정한 교육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연결망(social network)이 낮은 결혼이주여성의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을 통한 직업알선이 시급하다. 장기적인 방안으로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사회교육 내지 평생교육 시스템의 적용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에 법적 지위가 중요하다. 결혼이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로 장기체류 시에는 신분이 불안정하여, 가족생활(부부관계, 자녀양육 등)과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에 크게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인과 결혼하면 취업이 가능한 거주비자를 받을 수 있지만 이혼할 경우 방문동거 비자로 전환되고 방문동거비자는 취업이 허락되지 않는다. 특히 남성 결혼이민자의 경우 친지방문자격이 주어지는 방문비자를 발급받는데, 이 비

자 역시 취업이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엄격한 비자관리체계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취득 여부는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세대의 자질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보다 단기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조건을 개선하며, 동시에 한국국적 취득 이전에도 자녀양육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 제약이 없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셋째, 높은 재혼률, 큰 부부간 연령차이 등 다문화가족의 불안정성을 완화시키기 위해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나 프로그램 대신 한국인배우자와 그 가족, 자녀까지를 포괄하는 접근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결혼을 원하는 한국남성들에게 결혼의 의미와 가정의 소중함 등 가치 교육, 외국여성의 특성 및 다문화의 예절에 관한 교육 등을 필수적인 이수조건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한다. 이주여성 부부에게 부부의 상호이해 증진과 갈등상황 해결을 위한 의사소통훈련프로그램, 가부장적 의식의 완화와 양성평등실천프로그램과 배우자의 가족문화에 대한 이해증진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제공하도록 한다.

넷째,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초기과정으로 ‘국제결혼’을 중심으로 하는 이민정책이 성공을 거두려면,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사회동화 내지 통합이 아주 큰 관건이 될 수 있다. 이들이 성장과정에서 학교나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거나 배척되거나 보편적인 보육·교육·노동시장참여 등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받지 못할 경우, 우리사회의 앞날은 매우 어두울 수 있다. 이민의 역사가 100년 이상이 되는 유럽 국가들에게서도 그 전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는 인구의 양적 및 구조적 측면에서의 긍정적인 효과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 결국, 국가와 사회가 다문화가족 자녀들에 대한 보육·유아교육, 학교교육 등 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족 자녀세대의 보육, 교육 및 양육에 대한 정책적 노력은 전체 인구 자질과 노동력의 질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이 안정적인 교육을 받아 노동시장으로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의 건강성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지 않고 학교생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한국어교육, 방과 후 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다양한 국가 출신의 그리고 여성 중심인 결혼이민자에 대한 문화적 및 성 인지적 접근도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다문화가족 더 나아가서 전체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민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정도가 높아져야 할 것이다. 이민자의 사회적 수용성은 사회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향후 한국사회에서 결혼이민이 지속될 것이며, 저출산·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다른 형태의 이민도 증가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속주주의를 고수해온 만큼 결혼이민으로부터 태어난 자녀들은 엄연히 한국인이다. 출신국가나 인종을 불문하고 이민자와 그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와 배려가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사회에서 결혼이민자의 높은 실업률(취업을 원함에도 아예 노동시장에 접근도할 수 없는 비자발적 비경제 활동인구 비율),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공공보육·교육서비스에 대한 접근 곤란, 학교생활에서의 따돌림, 정보에 대한 접근성 미흡 등 다양한 차별이 존재한다. 어떠한 유형의 차별이라도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 특히 자녀세대의 인구자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비용은 우리사회에 환원될 것이다. 어떠한 방식의 이민정책을 도입하더라도 보육, 교육, 노동(고용), 복지 등 사회 제 분야에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주의는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고은영(2008).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 및 고용확대방안』, 『2008 제4차 대
전기족공동체포럼』. 대전발전연구원.
- 교육과학기술부(2008). 『200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계획』.
- 교육과학기술부(2008). 『다문화가정(국제결혼가정) 학생 학업 중단율 현황』.
- 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
청소년) 연구』. 국가청소년위원회·한국청소년상담원.
- 김두섭·차승은·Harris Kim(2008). 『혼인이주 여성의 사회연결망과 적응
』. 한양대학교 인구및고령사회연구소
- 김영혜(2009). 『경기도 결혼이민자 현황 및 취업지원을 위한 정책적 과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조찬토론회(Ⅱ): 여성결혼이민자 취업지원정책
의 현황과 과제』. 국회미래도시포럼·(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김유경(2009).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정책방안』. 『보건복지포럼(2009. 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숙·김승희(2007). 『강원도 여성결혼이민자 실태 및 지역사회적응 지원
방안』. 『정책브리프 제8호』. 강원발전연구원.
- 김정원·이혜영·배은주·허창수(2005). 『외국인근로자 자녀 교육복지 실태
분석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모선희·이인희·이선행·김성운(2008). 『다문화가정의 문제점과 정책적 지
원방안 연구』. 충남발전연구원.

- 방하남·신동균·김동현·신현구(2004). 『인구고령화와 노동시장』.
- 서혁(2007). 『열린문화공동체를 지향하는 다문화시대의 한국어교육 지원방안』. 2007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초등국어연구소 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pp.89~115
- 설동훈·김윤태·김현미·윤홍식·이혜경·임경택·정기선·주영수·한건수(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 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설동훈·이혜경·조성남(2006). 『결혼이민자 가족실태조사 및 중장기 지원 정책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설동훈·서문희·이삼식·김명아(2009). 『다문화가족의 중장기 전망 및 대책연구. 다문화가족의 장래인구추계 및 사회·경제적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보건복지가족부.
- 심인선·서한나(2008). 『경남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정착지원 방안』. 경남발전연구원.
- 양옥경(2007). 『서울거주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응 지원방안』. 『서울정책 포커스 제27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여성부(2008). 『2007년 전국 가정폭력 실태조사』.
- 오성배(2005). 『코시안(Kosian)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 연구』. 『한국교육(V.32, N.3)』.
- 유길상·이규용·설동훈·박성재(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대통령자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 이삼식 외(2007). 『국민연금재정추계를 위한 인구전망 및 모형구축』. 국민연금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박종서·김필숙·김형석(2007).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출산 형태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분·현주·류덕엽(2002). 『초중학생의 지적·정의적 발달수준분석연구(Ⅲ)』. 한국교육개발원.
- 이중섭(2009).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이주민 사회통합정책에 관한 연구』.

부산대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외국인정책위원회(2008). 『2008~2012 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
- 정기선·김영혜·박경은·이은아·박지혜·이승애·이지혜(2007). 『경기도 내 국제경혼 이민자가족 실태조사 및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재)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정하성·우룡(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조영달(2006). 『다문화 가정교육 지원을 위한 자료 개발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조혜영·이창호·권순희·서덕희·이은하(2007).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 생활실태와 교사·학생의 수용성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 통계청(2008a). 『사회조사보고서』.
- 통계청(2008b). 『한국의 사회지표』.
- 통계청(2009). 『2008년 이혼통계 결과』.
- 한국노동연구원(2008). 『2008 KLI 노동통계』.
-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09). 『농촌다문화 후계세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결과』.
-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행정자치부(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실태조사 결과』.

Beaujot, R. (2002). Projecting the future of Canada's population: assumptions, implications, and policy. Presidential Address Canadian Population Society Meetings of the Canadian Population Society. Toronto, 30 May - 1 June 2002, Population Studies Centre, University of Western Ontario, London.

Borjas, G. J. (1999). *Heaven's Door: Immigration Policy and the American Economy*. Princeton, NJ:Princeton University Press.

- Coleman, D., Ediev, D. and Scherbov, S. (2008). *Migration as a factor of population reproduction*. European Population Conference.
- Collado M.D., Iturbe-Ormaetxe I. and Vera, G. (2004). Quantify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Spanish Welfare State.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1:335-353.
- Espenshade, T.J. (1978). Zero Population Growth and the Economies of Developed Nat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4): 645-680.
- Espenshade, T.J. (1987). Population dynamics with immigration and low fertility. in K.Davis, M.Bernstam, and R.Ricardo-Campbell (eds.).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Industrial Societies : Causes, Consuquences, Policies*. Supplement to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 New York: Population Council, pp. 248-261.
- Haug, W., Compton, P. and Courbage, Y. (Eds). (2003).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immigrant populations. *Population Studies*, No. 38. 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Howe, N. and Jackson, R. (2006). *Long-Term Immigration Projection Methods: Current Practice and How to Improve It*. CSIS Global Ageing Initiative.
- Hyrnius, H. (1951). Reproduction and Replacement, *Population Studies*, Vol.4, No. 4(March):421-431.
- Johnson, P. (1999). *Ageing in the 21st century: implications for public policy*. Paper presented to the Conference on Policy Implications of the Ageing of Australia's Population organised by the Productivity Commission and the Melbourne Institute of Applied Economic and Social Research, Melbourne, 18-19

- March, 1999.
- Keyfitz, N. (1968). *Introduction to the Mathematics of Population*, Reading, MA: Addison Wesley.
- Lesthaghe, R. and Surkyn, J. (1988).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1-46.
- Li, N. and Wu, Z. (2001). *Migration and aging of Canada*.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the Canadian Population Society. Quebec, May, 2001.
- Loh, S. and George, M.V. (2001). *Projected population size and age structure of Canada's population with and without international immigration*.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s of Canadian Population Society. Laval University.
- McDonald, P. and Kippen, R. (1999).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Ageing of Australia's Population*. Commonwealth of Austria.
- McDonald, P. and Kippen, R. (1999). Labor supply prospects in 16 developed countries : 2000-2050.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1) : 1-32.
- McIntosh, C.A. (1986). Recent pronatalist policies in Western. *Europ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2 Supp:218-34.
- Palmer, D.L. (1996). Determinants of Canadian attitudes toward immigration : More than just racism?, *Canadian Journal of Behavioural Science*, 28(3):180-192.
- Shryock H.S. and Siegel, J.S. (1976). *The Methods and Materials of Demography*. Edited by Edward G. Stockwell, Academic Press.
- Sivamurthy, M. (1982). *Growth and Structure of Human population in the Presence of Migration*. London: Academic Press.
- Smith, J.P. and Edmonston B. (1997). *The New Americans:*

Economic, demographic and fiscal effects of immigration.

Washington, D.C.:National Academy Press.

Storesletten, K. (2000). Sustaining Fiscal Policy through Immigr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8:300-3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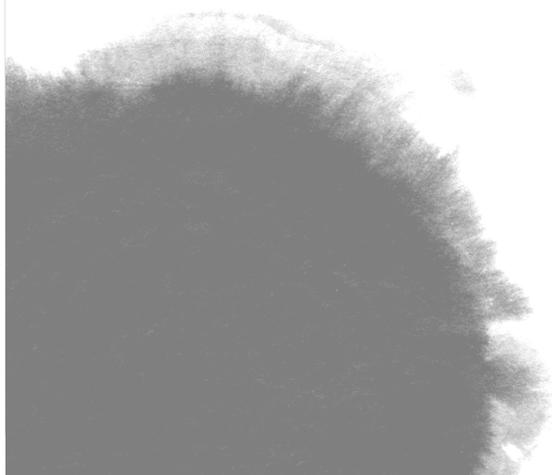
Toulemon, L. (1998). *Demographic Trends and Family Policy in France*.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Challenges of changing age struct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7-12 May, 1998.

Ulrich, R.E. (1998). Grau oder bunt? Zuwanderungen und Deutschlands Bevolkerung im Jahre 2030 [Grey or colourful? Immigration and Germany's population in 2030]." in M. David, T. Borde and H. Kentenich (eds) *Migration und Gesundheit: Zustandsbeschreibung und Zukunftsmodelle*, pp. 17-32. Frankfurt-am-Main: Mabuse.

UN. (1956). Methods of Population Projections by Age and Sex, Manual III(Manuals on methods of estimating population), ST/SOA/Series A, *Population Studies*, No. 25.

UN. (2000). *Replacement migration: Is it a solution to declining and ageing popul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Geneva and New York: United Nations.

부록



[부록 1] 결혼이민자 및 후손 규모

(단위 : 명)

	결혼이민자와 후손				결혼이민자(이민1세)		
	전체	이민1세대	이민2세대	이민3세대	전체	남성이민자	여성이민자
2009	272,613	170,874	101,477	262	170,874	17,326	153,548
2010	309,841	191,814	117,487	541	191,814	18,294	173,519
2011	348,591	212,732	135,022	837	212,732	19,258	193,473
2012	388,732	233,629	153,953	1,150	233,629	20,219	213,410
2013	430,142	254,501	174,164	1,477	254,501	21,175	233,326
2014	472,699	275,351	195,529	1,819	275,351	22,127	253,224
2015	516,246	296,176	217,892	2,178	296,176	23,075	273,101
2016	560,607	316,976	241,069	2,562	316,976	24,018	292,958
2017	605,596	337,748	264,870	2,978	337,748	24,955	312,793
2018	651,107	358,491	289,183	3,433	358,491	25,888	332,603
2019	697,075	379,206	313,934	3,936	379,206	26,815	352,390
2020	743,416	399,889	339,029	4,498	399,889	27,737	372,152
2021	790,035	420,538	364,345	5,152	420,538	28,653	391,885
2022	836,817	441,153	389,732	5,932	441,153	29,563	411,590
2023	883,773	461,728	415,185	6,860	461,728	30,467	431,261
2024	930,904	482,265	440,692	7,947	482,265	31,365	450,900
2025	978,174	502,758	466,199	9,218	502,758	32,256	470,502
2026	1,025,548	523,203	491,639	10,706	523,203	33,139	490,064
2027	1,072,961	543,600	516,913	12,447	543,600	34,016	509,585
2028	1,120,378	563,941	541,967	14,470	563,941	34,884	529,057
2029	1,167,764	584,223	566,740	16,801	584,223	35,744	548,478
2030	1,215,156	604,440	591,237	19,479	604,440	36,596	567,844
2031	1,262,481	624,589	615,351	22,542	624,589	37,439	587,150
2032	1,309,730	644,663	639,022	26,045	644,663	38,272	606,391
2033	1,356,881	664,653	662,215	30,013	664,653	39,094	625,559
2034	1,403,954	684,555	684,908	34,490	684,555	39,906	644,649
2035	1,451,003	704,359	707,097	39,547	704,359	40,707	663,651
2036	1,498,052	724,058	728,751	45,243	724,058	41,497	682,561
2037	1,545,150	743,644	749,858	51,648	743,644	42,274	701,371
2038	1,592,331	763,106	770,444	58,781	763,106	43,036	720,070
2039	1,639,649	782,441	790,544	66,664	782,441	43,787	738,654
2040	1,687,110	801,628	810,155	75,327	801,628	44,524	757,105
2041	1,734,723	820,662	829,315	84,746	820,662	45,245	775,417
2042	1,782,446	839,530	848,043	94,873	839,530	45,953	793,577
2043	1,830,279	858,213	866,373	105,693	858,213	46,643	811,570
2044	1,878,217	876,703	884,340	117,174	876,703	47,314	829,389
2045	1,926,182	894,971	901,961	129,250	894,971	47,965	847,006
2046	1,974,140	913,016	919,268	141,855	913,016	48,598	864,418
2047	2,022,046	930,842	936,290	154,913	930,842	49,216	881,626
2048	2,069,844	948,419	953,051	168,374	948,419	49,814	898,605
2049	2,117,475	965,717	969,575	182,184	965,717	50,388	915,328
2050	2,164,886	982,732	985,881	196,273	982,732	50,943	931,789

[부록 2] 결혼이민자 및 후손 연령구조

(단위 : %)

	결혼이민자와 후손				이민1세대			
	전체	0-14세	15-64세	65세이상	전체	0-14세	15-64세	65세이상
2009	100.0	33.8	65.3	0.9	100.0	0.0	98.6	1.4
2010	100.0	34.7	64.4	0.8	100.0	0.0	98.7	1.3
2011	100.0	35.6	63.6	0.8	100.0	0.0	98.7	1.3
2012	100.0	36.3	62.9	0.8	100.0	0.0	98.7	1.3
2013	100.0	36.9	62.3	0.8	100.0	0.0	98.7	1.3
2014	100.0	37.4	61.7	0.8	100.0	0.0	98.6	1.4
2015	100.0	38.0	61.1	0.9	100.0	0.0	98.5	1.5
2016	100.0	38.5	60.6	0.9	100.0	0.0	98.4	1.6
2017	100.0	39.0	60.0	0.9	100.0	0.0	98.3	1.7
2018	100.0	39.5	59.5	1.0	100.0	0.0	98.2	1.8
2019	100.0	39.9	59.0	1.1	100.0	0.0	98.0	2.0
2020	100.0	40.2	58.6	1.2	100.0	0.0	97.8	2.2
2021	100.0	40.3	58.4	1.3	100.0	0.0	97.5	2.5
2022	100.0	40.2	58.3	1.5	100.0	0.0	97.2	2.8
2023	100.0	39.9	58.5	1.6	100.0	0.0	96.9	3.1
2024	100.0	39.6	58.6	1.8	100.0	0.0	96.5	3.5
2025	100.0	39.1	58.9	2.0	100.0	0.0	96.1	3.9
2026	100.0	38.5	59.3	2.2	100.0	0.0	95.8	4.2
2027	100.0	37.9	59.7	2.3	100.0	0.0	95.5	4.5
2028	100.0	37.3	60.1	2.6	100.0	0.0	94.8	5.2
2029	100.0	36.7	60.5	2.9	100.0	0.0	94.3	5.7
2030	100.0	36.0	60.9	3.1	100.0	0.0	93.8	6.2
2031	100.0	35.3	61.3	3.3	100.0	0.0	93.3	6.7
2032	100.0	34.7	61.7	3.5	100.0	0.0	92.9	7.1
2033	100.0	34.1	62.1	3.8	100.0	0.0	92.3	7.7
2034	100.0	33.5	62.4	4.1	100.0	0.0	91.6	8.4
2035	100.0	33.0	62.6	4.4	100.0	0.0	91.0	9.0
2036	100.0	32.5	62.8	4.8	100.0	0.0	90.2	9.8
2037	100.0	32.0	62.9	5.1	100.0	0.0	89.5	10.5
2038	100.0	31.6	62.9	5.5	100.0	0.0	88.7	11.3
2039	100.0	31.2	63.0	5.8	100.0	0.0	88.0	12.0
2040	100.0	30.9	63.1	6.1	100.0	0.0	87.3	12.7
2041	100.0	30.5	63.1	6.4	100.0	0.0	86.6	13.4
2042	100.0	30.3	63.0	6.7	100.0	0.0	85.9	14.1
2043	100.0	30.0	63.0	7.0	100.0	0.0	85.2	14.8
2044	100.0	29.8	62.9	7.3	100.0	0.0	84.5	15.5
2045	100.0	29.6	62.7	7.7	100.0	0.0	83.7	16.3
2046	100.0	29.4	62.6	8.0	100.0	0.0	82.9	17.1
2047	100.0	29.2	62.4	8.4	100.0	0.0	82.1	17.9
2048	100.0	29.1	62.2	8.7	100.0	0.0	81.2	18.8
2049	100.0	28.9	62.0	9.1	100.0	0.0	80.3	19.7
2050	100.0	28.7	61.7	9.5	100.0	0.0	79.3	20.7

[부록 3] 연령별 결혼이민자

(단위 : 명)

	2009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계	170,874	191,814	296,176	399,889	502,758	604,440	704,359	801,628	894,971	982,732
0 - 4	0	0	0	0	0	0	0	0	0	0
5 - 9	0	0	0	0	0	0	0	0	0	0
10 - 14	0	0	0	0	0	0	0	0	0	0
15 - 19	2,649	4,075	5,795	5,795	5,795	5,795	5,795	5,795	5,795	5,795
20 - 24	26,746	29,080	34,946	36,666	36,668	36,671	36,673	36,674	36,676	36,677
25 - 29	27,372	32,152	54,901	60,765	62,490	62,500	62,508	62,516	62,523	62,529
30 - 34	26,857	29,739	48,743	71,456	77,322	79,056	79,077	79,096	79,113	79,128
35 - 39	29,265	31,412	41,503	60,473	83,150	89,025	90,775	90,812	90,846	90,876
40 - 44	21,738	24,217	39,472	49,549	68,484	91,125	97,016	98,789	98,850	98,904
45 - 49	17,173	18,834	28,501	43,693	53,754	72,647	95,244	101,157	102,962	103,056
50 - 54	10,165	11,926	20,410	30,025	45,140	55,187	74,030	96,575	102,520	104,368
55 - 59	4,604	5,451	12,144	20,552	30,101	45,120	55,151	73,935	96,419	102,405
60 - 64	1,927	2,346	5,339	11,923	20,226	29,681	44,563	54,568	73,267	95,660
65+	2,379	2,583	4,422	8,994	19,628	37,634	63,528	101,711	146,001	203,335
남성	17,326	18,294	23,075	27,737	32,256	36,596	40,707	44,524	47,965	50,943
0 - 4										
5 - 9										
10 - 14										
15 - 19	125	98	8	8	8	8	8	8	8	8
20 - 24	376	421	420	330	330	330	330	330	330	330
25 - 29	1,215	1,352	1,945	1,945	1,855	1,855	1,856	1,856	1,856	1,856
30 - 34	2,472	2,581	3,101	3,692	3,693	3,605	3,606	3,607	3,608	3,609
35 - 39	3,401	3,519	3,700	4,219	4,810	4,813	4,727	4,730	4,732	4,734
40 - 44	3,060	3,179	4,247	4,431	4,951	5,542	5,549	5,467	5,472	5,477
45 - 49	2,517	2,676	3,432	4,492	4,680	5,201	5,793	5,805	5,728	5,738
50 - 54	1,664	1,867	2,637	3,385	4,432	4,626	5,148	5,740	5,760	5,691
55 - 59	884	919	1,620	2,372	3,105	4,130	4,330	4,849	5,438	5,466
60 - 64	578	610	721	1,392	2,116	2,825	3,816	4,019	4,532	5,111
65+	1,033	1,073	1,243	1,471	2,275	3,659	5,544	8,112	10,501	12,923
여성	153,548	173,519	273,101	372,152	470,502	567,844	663,651	757,105	847,006	931,789
0 - 4										
5 - 9										
10 - 14										
15 - 19	2,524	3,977	5,787	5,787	5,787	5,787	5,787	5,787	5,787	5,787
20 - 24	26,371	28,659	34,526	36,335	36,338	36,340	36,342	36,344	36,346	36,347
25 - 29	26,157	30,800	52,956	58,821	60,635	60,644	60,653	60,660	60,667	60,673
30 - 34	24,384	27,157	45,643	67,763	73,629	75,451	75,471	75,489	75,505	75,519
35 - 39	25,864	27,893	37,803	56,254	78,340	84,212	86,047	86,082	86,114	86,141
40 - 44	18,679	21,038	35,225	45,118	63,533	85,583	91,467	93,322	93,378	93,427
45 - 49	14,656	16,158	25,068	39,201	49,075	67,446	89,451	95,352	97,234	97,318
50 - 54	8,501	10,059	17,773	26,639	40,708	50,561	68,881	90,834	96,760	98,676
55 - 59	3,720	4,532	10,524	18,180	26,996	40,990	50,821	69,085	90,981	96,939
60 - 64	1,348	1,736	4,618	10,531	18,110	26,856	40,747	50,549	68,735	90,549
65+	1,346	1,510	3,179	7,523	17,353	33,975	57,984	93,599	135,501	190,412

[부록 4] 연령별 결혼이민자의 후손

(단위 : 명)

	2009	2010	2015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전체	272,613	309,841	516,246	743,416	978,174	1,215,156	1,451,003	1,687,110	1,926,182	2,164,886
0 - 4	55,743	66,064	112,201	141,780	160,075	173,525	187,145	205,441	226,738	244,211
5 - 9	23,904	26,378	59,620	101,398	128,195	144,773	156,955	169,281	185,831	205,112
10 - 14	12,615	15,192	24,497	55,345	94,199	119,136	134,565	145,900	157,363	172,748
15 - 19	6,010	7,947	20,282	29,199	58,613	95,857	119,777	134,578	145,443	156,418
20 - 24	29,140	31,577	38,544	50,154	58,324	85,799	119,974	141,859	155,419	165,414
25 - 29	29,114	33,940	56,945	63,721	73,580	80,285	102,911	130,967	148,924	160,061
30 - 34	27,660	30,688	50,245	73,169	79,786	88,311	93,987	112,872	136,606	151,827
35 - 39	29,863	32,019	42,378	61,859	84,729	91,293	99,302	104,579	122,006	144,042
40 - 44	22,037	24,570	40,055	50,388	69,816	92,644	99,196	106,993	112,110	128,912
45 - 49	17,318	19,008	28,845	44,264	54,577	73,956	96,737	103,300	111,027	116,109
50 - 54	10,219	11,990	20,582	30,365	45,705	56,002	75,328	98,059	104,651	112,395
55 - 59	4,640	5,485	12,207	20,720	30,435	45,676	55,954	75,218	97,889	104,517
60 - 64	1,939	2,370	5,372	11,984	20,389	30,007	45,107	55,356	74,529	97,110
65+	2,396	2,600	4,440	9,018	19,658	37,704	63,743	101,990	145,803	201,643
남성계	69,129	78,676	137,059	206,531	280,346	356,123	432,533	510,559	592,255	676,656
0 - 4	28,382	33,887	58,370	73,524	82,900	89,771	96,815	106,278	117,297	126,341
5 - 9	12,231	13,431	30,908	53,289	67,151	75,730	82,015	88,457	97,104	107,180
10 - 14	6,401	7,787	12,473	28,699	49,506	62,399	70,379	76,227	82,216	90,256
15 - 19	1,684	1,977	7,449	11,962	27,460	47,495	59,925	67,619	73,249	79,005
20 - 24	1,494	1,578	2,205	7,390	11,594	26,330	45,017	56,588	63,761	69,034
25 - 29	2,158	2,273	2,907	3,433	7,745	11,241	23,549	39,092	48,718	54,691
30 - 34	2,931	3,137	3,889	4,513	4,952	8,591	11,596	22,009	35,363	43,654
35 - 39	3,760	3,873	4,221	4,961	5,581	5,994	9,406	12,243	22,023	34,625
40 - 44	3,247	3,399	4,589	4,933	5,667	6,287	6,689	9,990	12,742	22,211
45 - 49	2,607	2,782	3,646	4,826	5,170	5,902	6,523	6,922	10,164	12,880
50 - 54	1,699	1,905	2,741	3,595	4,760	5,109	5,840	6,462	6,867	10,090
55 - 59	905	941	1,656	2,472	3,309	4,450	4,801	5,525	6,144	6,551
60 - 64	585	621	743	1,427	2,212	3,022	4,124	4,477	5,188	5,799
65+	1,039	1,080	1,254	1,495	2,312	3,751	5,786	8,597	11,312	14,082
여성계	203,484	231,165	379,187	536,885	697,828	859,034	1,018,470	1,176,551	1,333,927	1,488,230
0 - 4	27,361	32,177	53,831	68,256	77,176	83,754	90,329	99,163	109,441	117,871
5 - 9	11,673	12,947	28,712	48,109	61,044	69,043	74,939	80,824	88,727	97,932
10 - 14	6,213	7,405	12,024	26,646	44,693	56,737	64,186	69,674	75,147	82,492
15 - 19	4,327	5,969	12,833	17,237	31,153	48,362	59,851	66,959	72,194	77,412
20 - 24	27,646	29,999	36,340	42,765	46,730	59,468	74,957	85,270	91,658	96,380
25 - 29	26,955	31,667	54,038	60,287	65,835	69,044	79,362	91,874	100,206	105,371
30 - 34	24,729	27,551	46,356	68,656	74,834	79,721	82,391	90,863	101,243	108,172
35 - 39	26,104	28,146	38,157	56,898	79,148	85,299	89,896	92,336	99,983	109,418
40 - 44	18,790	21,171	35,466	45,456	64,149	86,356	92,507	97,003	99,368	106,701
45 - 49	14,711	16,227	25,199	39,438	49,407	68,054	90,214	96,377	100,863	103,229
50 - 54	8,519	10,086	17,841	26,769	40,945	50,892	69,488	91,597	97,784	102,305
55 - 59	3,736	4,544	10,551	18,249	27,125	41,226	51,153	69,693	91,745	97,965
60 - 64	1,355	1,748	4,629	10,557	18,177	26,985	40,982	50,880	69,340	91,311
65+	1,356	1,520	3,186	7,523	17,345	33,953	57,957	93,393	134,491	187,561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식관리센터
간행물 담당자 (Tel : 02-380-8234)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of Health & Social Affairs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2	고가의료장비의 적정공급과 효율적 활용방안	오영호	미정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턴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제도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실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1)	정영호	미정
연구 2009-05	미 증충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입	미정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 방안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미정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미정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황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신현웅	미정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미정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연구	여유진	미정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미정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17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미정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김유경	미정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미정
연구 2009-20	사회자본과 민간 복지자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미정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미정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자립증진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산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미정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미정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정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미정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미정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실태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미정
연구 2009-28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오영호	6,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미정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2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제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정부 새출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효과성 분석	최성은	미정
연구 2009-31-5	지활사업의 평가 및 과제	고경환	미정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미정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미정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미정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육아지원 인프라의 양·질적 수급 적정화 방안	신윤정	미정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외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미정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미정
연구 2009-34-5	고령친화용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미정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미정
연구 2009-3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미정
연구 2008-01	건강수명의 사회계층간 형평성과 정책과제	강은정	6,000
연구 2008-02	여성 흡연과 음주의 요인 및 정책대안	서미경	9,000
연구 2008-03	공공보건조직의 효율성 분석 및 운영 합리화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8-04	건강한 미래세대를 위한 영양 관련 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모유수유 및 아동·청소년 영양문제를 중심으로	김혜련	7,000
연구 2008-05	남북한간 보건의료 교류·협력의 효율적 수행체계 구축방안 연구	이상영	6,000
연구 2008-06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정책의 개선방안 연구	강신욱	7,000
연구 2008-07	건강보험 지불제도과 의료공급자의 진료행태: 의료공급자의 유인 수요와의 연관성 파악	허순임	7,000
연구 2008-08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연구: 재정적·정치적 지속 가능성 중심으로	윤석명	7,000
연구 2008-09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 평가	원종욱	7,000
연구 2008-10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사회적 배제의 역동성 및 다차원성 분석을 중심으로	김안나	9,000
연구 2008-11	사회제정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8-12	한국복지모형에 대한 연구: 그 보편성과 특수성	노대명	6,000
연구 2008-13	한국인의 행복결정요인과 행복지수에 관한 연구	김승권	10,000
연구 2008-14	다문화시대를 대비한 복지정책방안 연구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	김유경	15,000
연구 2008-15	아동·청소년복지 수요 추계 연구 I	김미숙	8,000
연구 2008-16	지역복지 활성화를 위한 사회자본형성의 실태와 과제	박세경	6,000
연구 2008-17	노년기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이소정	8,000
연구 2008-18-1	2008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연구-조건부 수 급자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08-18-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 법, 조직, 정보 인프라를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8-18-3	2008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8-18-4	의료급여 사례관리 효과분석 II	신영석	6,000

보고서 번호	서 명	저자	가격
연구 2008-18-5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도 모니터링에 관한 연구	신현용	5,000
연구 2008-18-6	서구 근로빈곤문제의 현황과 쟁점	노대명	6,000
연구 2008-19-1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행사 기준개선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원종욱	6,000
연구 2008-19-2	한국의 복지 GNP	홍석표	5,000
연구 2008-20-1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실태와 효율화 방안 연구	오영희	10,000
연구 2008-20-2	저출산·고령사회관련 주요 현안 및 대응방안 연구	오영희	9,000
연구 2008-20-3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삼식	7,000
연구 2008-20-4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한 여성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8-20-5	노인 장기요양보장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선우덕	9,000
연구 2008-20-6	농촌지역 고령자의 생활기능 지립을 위한 보건복지 지원체계 모형 개발	선우덕	5,000
연구 2008-20-7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인적 및 물적 자산 활용방안	김수봉	미정
연구 2008-20-8	국제적 관점에서 본 고령화에 대한 정책적 대응현황과 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08-21-1	2008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김미곤	15,000
연구 2008-21-2	2007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여유진	9,000
연구 2008-22-1	한국의료패널 예비조사 결과 보고서	정영호	9,000
연구 2008-22-2	2008년 한국의료패널 조사 진행 보고서	정영호	8,000
연구 2008-23-1-1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1-2	사회재정사업의 평가 -가족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평가: 상담서비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8-23-2	사회재정평가지침-사례와 분류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3	조세 및 사회보장 부담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남상호	5,000
연구 2008-23-4	의료급여 재정모형과 재정지출 전망	최성은	6,000
연구 2008-23-5	복지제도의 발전방향 모색-가족부문 투자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3-6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2차년도)	고경환	5,000
연구 2008-23-7	2008 사회예산 분석과 정책과제	최성은	7,000
연구 2008-24-1	국립소록도병원의 만성병 관리체계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5,000
연구 2008-24-2	드림스타트의 건강영향평가	강은정	7,000
연구 2008-24-3	KTX의 건강영향평가 -의료이용을 중심으로	김진현	6,000
연구 2008-24-4	기후변화에 따른 전염병 감시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6,000
연구 2008-25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1년차)	오영호	5,000
연구 2008-26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8,000
연구 2008-27-1	능동적 복지의 개념정립과 정책과제	김승권	8,000
연구 2008-27-2	보건복지재정 적정화 및 정책과제	유근춘	미정
연구 2008-27-3	능동적 복지개념에 부합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체계개편 방안	신영석	6,000
연구 2008-27-4	능동적 복지와 사회복지서비스 실천방안	김승권	7,000
연구 2008-27-5	능동적 복지 구현을 위한 건강투자 전략	최은진	6,000